心身障碍者福祉政策研究

—雇傭促進制度를 中心으로—

1984年度

研 究 資 料

이 資料는 研究委員 個別的인 研究結果이며 保建社會部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委員 金 國 道

श्री हरि
पब्लिशर्स
[illegible]
[illegible]

保健社會部長官　貴下

이　報告論文을　1984年度　社會保障審議委員會　基本研究計劃에 의하여　작성한　最終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84.　12.　27.

研究委員　**金　國　道**

目　　次

第一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目的 …… 5

第2節　研究의　範圍 …… 6

第3節　研究의　方法 …… 7

第二章　現　　況

第1節　心身障碍者　福祉施設現況 …… 8

第2節　心身障碍者　福祉制度現況 …… 12

第3節　職業再活施設의　現況 …… 17

§1. 國立釜山再活院 …… 17

§2. 仁川産業再活院 …… 18

§3. 水原職業再活院 …… 18

§4. 其他　再活院 …… 19

第4節　職業再活의　現況 …… 22

§1. 再活의　意義 …… 22

§2. 障碍者　推定人口 …… 22

§3. 障碍者　雇傭促進施策 …… 27

第三章　心身障碍者　福祉政策方向

第1節　外國의　福祉政策 …… 30

§ 1. 美國의 障碍者 福祉制度 ····· 30
§ 2. 日本의 障碍者 福祉制度 ····· 33
§ 3. 英國과 西獨의 福祉制度 ····· 34
第 2 節 韓國의 障碍者福祉政策 ····· 37
§ 1. 障碍者福祉政策의 基本傾向 ····· 37
§ 2. 心身障碍者의 基本權保障 ····· 38
§ 3. 心身障碍者家族을 위한 社會福祉 ····· 40
§ 4. 心身障碍者福祉를 爲한 地域社會의 役割 ····· 41
§ 5. 國家的 次元의 社會福祉 確立條件 ····· 43
第 3 節 障碍者職業 再活對策 ····· 45
§ 1. 80 年代의 福祉課題 ····· 45
§ 2. 社會福祉施設 長短期別 改善對策 ····· 47
§ 3. 職業再活의 問題와 그對策 ····· 48

第四章 障碍의 定義와 再活理論等

第 1 節 心身障碍者의 定義 ····· 55
§ 1. 精神障碍者 ····· 55
§ 2. 肢體障碍者 ····· 62
§ 3. 視聽覺 및 言語障碍者 ····· 64
第 2 節 再活의 理論 ····· 70
§ 1. 醫療的 再活 ····· 70
§ 2. 教育的 再活 ····· 72

§ 3. 意識的 再活 …… 73
§ 4. 社會的 再活 …… 74
第 3 節 再活事業의 展望 …… 75
§ 1. 展望의 概要 …… 75
§ 2. 雇傭促進을 爲한 立法趣旨 …… 76
§ 3. 各國의 雇傭促進制度 …… 82
§ 4. 國際 障碍者 憲章 …… 98

第五章 結 論

第 1 節 豫想되는 問題點 …… 121
§ 1. 收容保護施設의 不足問題 …… 121
§ 2. 職業再活施設의 不足問題 …… 121
§ 3. 雇傭促進對策에 關한 問題 …… 122
§ 4. 無認可施設과 患者에 關한 問題 …… 122
§ 5. 精神患者와 障碍者에 關한 問題 …… 122
§ 6. 制度改善에 關한 問題 …… 123
§ 7. 障碍者福祉行政에 關한 問題 …… 123
第 2 節 要是正改善方案 …… 123
§ 1. 障碍者 登錄制度實施 …… 123
§ 2. 法人의 財產代替活用 …… 124
§ 3. 雇傭促進과 弘報活動 …… 124
§ 4. 無認可施設 양성화 …… 124
§ 5. 障碍者와 患者의 分類 …… 124

§ 6. 障碍者福祉制度 改善 ····· 125

§ 7. 社會福祉行政의 專門化 ····· 125

第 3 節 建議 및 要望事項 ····· 125

§ 1. 建議事項 ····· 125

§ 2. 要望事項 ····· 126

◎ 參 考 文 獻 ····· 127

附 錄 ····· 129

心身障碍者 福祉關係法令總收錄

§ 1. 心身障碍者福祉法 ····· 131

§ 2. 心身障碍者福祉法 施行令 ····· 141

§ 3. 心身障碍者福祉法 施行規則 ····· 150

〈別表 1〉 心身障碍者 障碍等級表 ····· 158

〈別表 2〉 心身障碍者福祉施設基準 ····· 168

〈別表 3〉 裝具製造修理業의 許可基準 ····· 193

第一章　序　論

第 1 節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는 其間 經濟發展에만 置重하여 왔으므로 社會福祉分野는 相對的으로 遲延되어 왔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그러나 이러한 事實은 國家의 段階的인 發展 過程에 따르는 必然的인 趨勢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 나라의 經濟發展은 結局 모든 國民이 人間다운 生活을 營爲할수 있도록 하는 社會開發로 誘導되어 福祉社會建設과 直結되어야 한다. 人間다운 生活이란 社會的인 可用能力을 自身과 國家社會를 위하여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社會保障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社會保障中에는 心身에 缺陷이 있는 者에 대한 保護와 保障問題는 人間으로서 生命의 尊嚴과 國家와 社會的인 機能의 總和라는 兩面性에서 于先的으로 다루어 져야할 當面課題인 것이다.

最近 우리나라는 急成長한 高度產業化와 都市化의 擴大 等으로 因하여 부수적으로 各種 安全事故가 急增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各種 公害發生 等으로 先天的 또는 後天的 要因으로 心身의 障碍者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障碍機能別 職業輔導 施設과 雇傭의 促進對策이 미흡한 實情에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는 心身障碍者들에 대한 福祉對策이 아직도 施設保護와 居住救護 그리고 醫療保護等 公的扶助 事業을 通하여 最低生計費 정도로 解決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本 硏究는 當初 心身障碍者들에게 적합한 職種을 各 產業體別로 調査하고 障碍類型別 職業輔導

施設等을 全數 調査하여 心身障碍者들의 障碍類型別 雇傭促進對策을 國家政策的인 次元에서 樹立할 計劃이였으나 實際 調査를 위한 豫算이 確保되지 않아 本 硏究者가 임의로 選定한 心身障碍者福祉施設과 全國的인 규모의 協會 等을 우송조사 또는 방문조사를 하여 心身障碍者 雇傭促進對策을 樹立하는 政策 資料에 기여할 目的으로 硏究한다.

第 2 節 硏究의 範圍

心身障碍者雇傭 促進對策에 關한 硏究는 理論的 硏究도 重要하지만 實證的 考察이 더욱 重要한 것이다.

最近 우리나라 學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心身障碍者 福祉問題는 大部分이 先進諸國의 心身障碍者 福祉制度를 紹介하고 우리나라도 그와같은 制度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主張한데 불과하다. 그러나 實質的으로 우리나라의 現實에 適合한 心身障碍者 福祉對策 또는 雇傭促進 對策을 爲한 事例硏究는 거이 찾아 볼수 없는 實情이다.

그러므로 本 硏究는 制限된 紙面 관계상 理論的인 面은 지양하고 實證的 考察을 中心으로 하는 硏究를 試圖해 보았다. 그러나 그 硏究對象을 우리나라 心身障碍者 全體를 對象으로 障碍類型別 職業分布와 意識構造 等을 調査한다는 것은 豫算과 人力의 不足으로 不可能할 뿐만 아니라 硏究의 焦點이 흐려질 憂慮가 있어 우리나라 社會福祉施設에 收容保護中에 있는 心身障碍者만을 調査硏究하여 障碍類型別 福祉對策과 各 職種別 雇傭促進 試案을 마련하고저 그 範圍를 縮小하였다.

第 3 節 研究의 方法

本 研究에서 採擇한 研究의 方法은 文獻資料分析에 依한 比較研究方法과 全國 心身障碍者 福祉施設의 設置者 또는 종사자 및 管理者 等을 對象으로 하여 現地 訪問調査와 郵送調査를 併行하여 이를 集計處理할 計劃이였으나, 政府豫算과 時間의 制約關係로 全數 調査는 省略하고 몇 個 施設만 임의 조사에 의하여 實證的 考察을 꾀하였다. 따라서 文獻研究는 國內外 專門書籍이 不充分하여 이를 省略하고 韓國心身障碍者 再活協會 心身障碍者 福祉施設協會 및 成人福祉施設協會 等 全國的인 규모의 協會를 訪問하여 全體的인 現況을 파악하는 한편 三育兒童再活院, 농아복지회, 視覺障碍者福祉會 等의 雇傭促進 現況을 分析하여 問題點을 圖出하였다.

따라서 本 研究는 第二章에서 現況 파악을 하고 第三章은 第二章에서 얻어진 問題點을 中心으로 心身障碍者 福祉政策 方向을 設定하는 方法으로 研究를 試圖해 보았다. 따라서 職業輔導施設의 擴充과 雇傭促進 對策方案 等을 마련하였으며 第四章에서는 再活의 理論과 各國의 雇傭促進制度에 關하여 살펴보고, 第五章에서 問題點과 改善方案을 提示하고 建議 및 要望事項 等을 要約한 後 끝을 맺고져 한다.

第二章　現　　況

第 1 節　福祉施設의　現況

우리나라 心身障碍者의 總數는 1981年末 調査統計에 의하면 〈表 1 〉에서 보는 바와같이 1,086,823名으로서 全體人口의 2.9 %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收容保護할 수 있는 施設은 全國에 50個 肢體 및 精神障碍者 施設로서 總 9,885名만을 收容保護 할 수 있으므로 그 비율은 心身障碍者 總數의 0.9% 정도에 不過하다.

그러므로 約99%의 障碍者들이 各家庭이나 無認可施設 또는 山中기도원 등에서 保護되고 있는 實情이다. 그리고 合法的으로 設置運營되고 있는 旣存 心身障碍者 福祉施設들도 大部分 就業斡 을 전제로 한 職業輔導施設을 갖추지 못하고 收容保護만 하고 있으므로 財政的 自立度가 貧弱하여 國費와 地方費로 支援하는 主·副食費 및 其他 補助金에 依存하고 있어 그 機能을 제대로 發揮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實情은 先進祖國의 福祉國家 建設과 經濟大國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오늘의 現實과는 너무나 많은 거리감을 보여주고 있다.

以上과 같은 障碍者를 (A)로 하고 社會福祉施設에 收容中인 障碍者를 (B)로 하여 이를 비교하면 〈表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A) 對 (B)의 比率은 0.91%에 해당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 政府의 影響이 미치지 못하는 全國의 無認可施設의 現況은 〈表 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總 96個 施設에 무려 8,000餘名이 政府 보조없이 個人 또는 종교단체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表 1〉 心身障碍者現況

성별 / 종별	계		남	여	비 고
	인 원	구성비			
계	1,086,823 명	100 %	789,067	297,756	※중복장애
지체장애	561,574	51.67	416,370	145,204	76,989명 총
시각장애	107,733	9.91	75,250	32,483	장애자중의
청각장애	123,296	11.34	84,969	38,327	7.08 %
언어장애	129,636	11.93	92,296	37,340	
정신장애	164,584	15.15	120,182	44,402	

資料 : 韓國法人問題硏究所 1981年 現在.

그 이외에도 家庭에 은익보호되고 있는 心身障碍者들도 상당수에 달할 것이 예상됨으로 障碍者 登錄制度의 實施를 위한 계몽지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現實을 勘案할때 오늘날 心身障碍者의 問題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全人類가 다함께 解決해 나가야 할 重大한 공통과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전통적인 농경사회가 都市産業化 社會로 전환됨에 따라 先天的 또는 後天的 要因으로 心身의 障碍를 받은 者의 數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世界的인 추세임으로 UN은 1981年을 世界障碍者의 해로 정하고 完全한 參與와 平等이라는 主題를 선정하였다.

여기서 參與라 함은 社會生活 그 自體의 發展過程에 心身障碍者가 기여 해야 할 뿐만 아니라 政策決定 段階에 이르기 까지 參與해야 한

다는 뜻이다. 또한 平等이란 健康人과 同等한 生活權을 保障받는 것이며 國家와 社會發展에 따른 利益配分을 平等하게 부여받는다는 뜻이라고 볼 수 있다.

〈表 2 〉 收容障碍者와의 對比 (지체 15 , 정신 35)

구 분 / 시·도별	총시설수	총장애자수 (A)	수용장애자수 (B)	$\frac{B}{A}$ %
계	50	1,086,823	9,885	0.91 %
서 울	6	217,414	1,269	0.58
부 산	7	83,461	2,411	2.89
경 기	6	132,247	846	0.64
강 원	0	54,226	-	-
충 북	4	43,144	656	1.52
충 남	5	85,446	1,134	1.33
전 북	4	73,620	378	0.51
전 남	6	130,328	1,051	0.81
경 북	5	142,959	1,586	1.11
경 남	7	107,091	554	0.52
제 주	0	16,887	-	-

資料 : 韓國成人福祉施設協會 , 1981 年 現在 .

이같은 國際的인 움직임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心身障碍者들에 대한 社會的인 關心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퍽 다행한 일이라 하겠다.

政府에서는 1981 年 世界障碍者의 해를 맞이하여 心身障碍者 福祉法을 制定 公布하였고 이들을 保護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等 多樣한 綜合對策을 마련하고 施行中에 있다.

〈表 3〉 無認可施設의 現況

區分 / 市·道	施設數	%	人員數	%	備考
계	96		8,074		
서울	4		456		총장애자중
부산	2		293		無認可施設의
대구	7		728		比率과 그施
인천	2		245		設에 被收容
경기	9		786		者의 比率
강원	10		969		
충북	7		747		$\frac{96}{1,086,823}$
충남	23		982		
경북	16		978		$\frac{8,074}{1,086,823}$
경남	4		476		
전북	6		682		
전남	5		564		
제주	1		156		

資料：韓國法人問題硏究所，1984年6月 現在.

그동안 心身障碍의 原因이 어디에 있었던 간에 이제 그것은 어느 個人의 問題가 아니라 公的인 問題로 認識하고 解決하려는 기틀이 잡히기 始作한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障碍者 問題는 等閑視되어 왔다는 것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이다.

지난날에는 心身障碍者의 保護는 고사하고 心身障碍者라는 理由로 教育의 機會마저 許容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就業의 길마저 拒否 당하는 等의 社會的 물의가 야기되었던 것도 숨길수 없는 事實이다.

第 2 節 福祉制度의 現況

우리나라 心身障碍者 福祉制度의 背景을 살펴보면, 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지며 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는 憲法 第32條의 規定을 制度的 背景으로 하여 心身障碍者들을 위한 여러가지 法令이 制定되었다. 이와같이 制定施行되고 있는 心身障碍者 等의 福祉對策과 관련되는 法律의 制定年度別 現況을 考察하고 參考로 관련 條文을 요약 발췌하였다.

憲法 第32條 ①모든 國民은 人間다운 生活을 할 權利를 가진다.

②國家는 社會保障·社會福祉의 增進에 努力할 義務를 가진다.

③生活能力이 없는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家의 保護를 받는다.

憲法 第33條 모든 國民은 깨끗한 環境에서 生活할 權利를 가지며 國家와 國民은 環境保全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1961.12.30 자로 法律 第912號로 制定公布된 兒童福利法과 같은 날 法律 第913號로 公布된 生活保護法 그리고 1963.11.5. 法律 第1437號로 制定公布된 社會保障에 關한 法律과 1967.3.30. 法律 第1952號

로 制定된 職業安定法 等이 主로 1960年代에 制定된 法律이다.

特히 이 中에 社會障碍에 關한 法律 第1條에 의하면 이 法은 國民의 人間다운 生活을 圖謀하기 위한 社會保障制度의 確立과 그 効率的인 發展을 期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生活保護法 第1條는 老令疾病 其他 勤勞 能力의 喪失로 因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는 者等에 대한 保護와 그 方法을 規定하여 社會福祉 向上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規定된 點 等을 미루어 볼때 모두다 우리나라 憲法第32條에 規定된 生活權的 基本權의 權利章典을 뒷받침한 法律이기도 하다.

生活保護法 第11條(自活保護) ①自活保護 對象者의 自活을 助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自活에 必要한 金品의 支給 또는 貸與
2. 自活에 必要한 技能習得의 支援
3. 就業 斡旋
4. 其他 大統領令이 정하는 自活助成을 위한 各種 支援

②第1項第2號 및 3號의 自活保護는 職業訓練이나 就業斡旋 等을 目的으로 하는 施設에 委託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에 그 소요되는 비용은 保護機關이 이를 負擔한다.

※ 保護機關은 市郡이며 그 責任은 市長郡守임(法第15條)

職業安定法 第17條의2(身體障碍者의 雇傭促進) ①모든 事業主는 身體障碍者에 대하여 雇傭機會를 擴大하도록 努力하여야 하며 身體障碍者라는 理由로 不當한 就業制限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勞動部長官은 身體障碍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때에는 特定事業의 一部 職種에 대하여 身體障碍者를 優先 雇傭하게 할 수 있다.

職業安定法 第17條의3(職種의 開發 및 就業支援) ①勞動部長官은 中高令者 또는 身體障碍者의 能力에 適合한 職種을 開發하고 該當 職種에 就業할 수 있도록 支援하여야 한다.

以上의 法律은 모두 1960년대의 法律로서 心身障碍者등의 生活保護基準과 節次를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될까하여 발췌하였다.

다음 1970年代의 心身障碍者 福祉와 關聯되는 法律의 現況은 1970.1.1. 法律 第2191號로 制定公布된 社會福祉事業法과 1977.12.31. 法律第3053號로 制定된 特殊教育振興法과 1984年도에 제정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法律 등이 있으나 健康人들의 無關心 속에서 障碍者들은 여전히 家庭과 社會의 냉대를 받고 그늘진 生活을 해왔던 것이다.

社會福祉事業法 第2條(定義) ①法에서 社會福祉라 함은 다음의 法律에 의한 保護善導 또는 福祉에 關한 事業과 社會福祉相談, 災害救護, 浮浪人 善導, 職業輔導, 隣保福祉, 無料宿泊, 地域社會福祉, 母子福祉醫療保護, 社會福祉館運營, 癩完治者 社會復歸에 關한 事業等 各種 福祉事業과 福祉施設의 運營 및 支援을 目的으로 하는 事業을 말한다.

1. 生活保護法
2. 兒童福祉法
3. 老人福祉法
4. 心身障碍者福祉法
5. 淪落行爲等 防止法

特殊教育振興法 第3條(特殊教育對象者) 特殊教育對象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로 한다.

1. 視覺障碍者
2. 聽覺障碍者
3. 精神薄弱者
4. 肢體不自由者
5. 情緖障碍者
6. 言語障碍者
7. 其他의 心身障碍者

以上과 같은 法的인 制度下에 그간 心身障碍者들도 國民의 한사람으로서 人間의 尊嚴性을 잃지 않는 最低生活을 保障받게 되었으나 극히 형식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1980年代에 접어들면서 政府가 福祉社會 具現을 國政指標로 삼고 社會開發 分野에도 많은 努力을 傾注하는 한편 1981年度는 汎世界的인 心身障碍者의 해로 정하게 되어 이때 心身障碍者를 위한 福祉法을 制定하기에 이르렀다.

이 法이 制定됨에 따라 그간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소극적인 心身障碍者福祉對策이 積極的인 方向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 새로운 心身障碍者 福祉法 第2條 規定에 의하면 이 法에서 心身障碍者라 함은 肢體不自由, 視覺障碍, 音聲言語機能障碍 또는 精神薄弱等 精神的 缺陷으로 因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말하다고 定義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精神的 缺陷으로 인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라함은 치료를 요하는 精神病患者 이외 발작없는 精神障碍者로서 長期間 요양을 必要로 하는 精神障碍者들을 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本 硏究에서는 이와같은 精神障碍者를 포함한 職業輔導 또는 雇傭促進 등에 關한 現況과 問題點을 圖出하고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저 한다.

心身障碍者福祉法 第11條(雇傭의 促進)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心身障碍者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實施하여야 한다.

1. 心身障碍者에게 적합한 職種의 開發普及

2. 心身障碍者에 대한 適性檢査 및 職指導

3. 作業環境 또는 技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訓練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스스로 경영하는 事業에 心身障碍者의 能力과 適性에 따라 이들을 雇傭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心身障碍者에게 적합한 職種의 事業을 經營하는 者에 대하여 心身障碍者의 能力과 適性에 따라 이들을 雇傭하도록 勸誘할 수 있다.

第3節 職業再活施設의 現況

§1. 釜山國立再活院

우리나라 心身障碍者들의 職業再活事業에 關한 歷史的 背景을 살펴보면 1952年에 6.25사변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 手足을 잃은 不具者들의 義手足 및 補裝具의 製作과 함께 職業再活事業을 實施한 國立再活院의 設置가 肢體障碍者를 위한 最初의 福祉事業이였다고 하겠다. 이 國立再活의 名稱은 처음 상이군인정양원에서 국립중앙재활으로 변경하면서 一般 영세 障碍者들을 全國的으로 모집하여 그 職種은 理容科 美容科, 洋裁科, 木工科, 版金科, 鐵工科, 機械科, 製圖科, 商美科, 라디오科

等 10個 職種에 各 障碍者들의 技能別로 職業教育을 實施하였다. 以上 各科程別로 선발된 障碍者들은 全員宿食과 教育資材가 無料로 제공되었고 卒業後 就業斡旋까지 하여 이들로 하여금 自立 갱생의 能力을 부여하였던 것이다.

§ 2. 仁川産業再活院

1969年度에 이르러 釜山의 國立再活院은 韓獨職訓練院으로 인계하고 그 機關은 勞動部로 이관하여 1970年度부터 仁川市 九山洞 所在 前 國立少年職業訓練所 건물 및 부지에서 再活事業을 實施하였다. 職業再活 대상은 釜山 東萊의 國立再活院 時節과는 달리 各 産業體에서 安全事故로 인하여 發生하는 産業災害補償 대상자들을 收容保護 및 職業再活 뿐만 아니라 治療까지 할 수 있는 産災病院을 兼하여 勞動部에서 運營해 왔던 것이다. 그후 1979年7月4日자로 政府의 制度改善對策에 의하여 이 産業再活은 勤勞福祉公社로 移管되어 工藝科, 時計科, 縫裁科, 圖藝科, 印章科, R.T.V科, 義肢科, 印刷科 等 8個 教育科程에서 1984年8月 末日 現在 200餘名의 肢體障碍者들이 各己 障碍類形別로 職業再活教育을 하고 있다.

§ 3. 水原職業再活院

國立職業再活은 원호대상자들의 직업 再活을 위하여 1963.9.27자로 개원하여 피복, 인쇄, 목공과 등에서 職業教育을 하였으나 그 당시는 障碍者들에 대한 社會的 인식이 부족하여 취업알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各 企業體에 임의로 배정된 이들 障

碍者들은 많은 차별 대우를 받으면서 지내왔으나 1981.11.2자로 이 國立職業再活은 폐쇄되고 그 기능만이 원호복지공단으로 이관되었으나, 現在 職業再活教育은 하지 못하고 있는 實情이다.

§ 4. 其他 再活院

그이외 社會福祉法人 또는 財團法人 等이 設置運營하는 再活院으로서 職業輔導施設을 갖추고 있다는 數가 1983년말 현재 保健社會部 統計에 의하면 總 51個 施設에 達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三育再活院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 51個 施設에 收容되고 있는 各種 障碍者의 數는 總 2,933名에 達하고 있으나 1982년도부터 1984년도까지 각 障碍類型別 就業現況을 보면 총 806名에 불과하다. 이를 다시 就業年度別로 區分하면 1982년도 79명, 1983년도 418명, 1984년 7월말 現在 39명으로서 82년도에 비하면 현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障碍類型別 就業現況은 〈表 3〉에서 보는 바와 같고 전체 장애자복지시설의 현황은 〈表 4〉와 같다.

〈表4〉 障碍類型別 就業現況

(1984.8.31. 現在)

장애별 / 년도별 / 직종별	총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기타장애		
	계	82	83	84	82	83	84	82	83	84	82	83	84	82	83	84
전문기술	25	1	20	4	1	12	4	0	0	0	0	6	0	0	2	0
사무직	36	9	12	15	9	12	14	0	0	0	0	0	1	0	0	0
판매직	24	0	14	10	0	11	9	0	1	1	0	0	0	0	2	0
서어비스	30	3	21	6	3	18	6	0	0	0	0	0	0	0	3	0
농수산업	6	0	5	1	0	2	0	0	0	0	0	2	1	0	1	0
제조공	333	30	192	111	28	141	27	0	2	1	2	31	10		18	3
기계기술	86	10	27	49	3	18	36	0		0	5	4	13	2	5	0
전자기술	86	13	46	27	13	33	22	0	1	0	0	9	3	0	3	2
가공처리	92	6	49	37	4	45	32	0		0	2	2	3	0	2	2
인쇄공	7	0	5	2	0	5	2	0		0	0	0	0	0	0	0
기타	81	8	26	47	4	16	42	0	1	0	3	3	3	0	8	2
총계	806	79	418	309	65	313	264	0	5	2	12	56	34	2	44	9

〈表5〉 시도별 총장애자 현황(통원자포함)

구분 / 시도	계		재활 및 보호설수					교육 및 수용인원				
	시설	인원	지체	정박	시각	청각	정신	지체	정박	시각	청각	정신
서 울	15	1,490	3	7	2	2	1	495	648	178	109	60
부 산	20	3,900	5	3	1	2	9	521	265	71	106	2,937
인 천	7	468	2	2	1	1	1	130	148	82	62	46
대 구	9	1,424	4	2	-	-	3	515	323	-	-	586
경 북	9	757	5	1	-	-	3	376	137	-	-	244
경 남	9	1,109	2	1	1	2	3	136	120	125	99	629
충 북	8	1,117	1	2	2	1	2	121	298	154	100	444
충 남	9	1,713	1	3	-	1	4	137	476	-	149	951
전 북	8	954	1	1	1	1	4	100	91	28	129	606
전 남	7	850	1	-	2	2	2	186	-	112	162	390
경 기	16	1,703	3	5	2	1	5	274	641	218	53	517
강 원												
제 주												
계	117	15,485	28	27	12	13	37	2,991	3,147	968	969	7,410

資料：身體障碍者福祉施設協會, 1984.8.31 現在.

第4節 職業再活의 現況

§1. 再活의 意義

心身障碍者의 職業再活은 心身의 缺陷을 지닌 障碍者들의 精神的 또는 身體的, 職業的, 經濟的인 가용 能力을 最大限으로 開發하고 所得이 있는 職業을 가질수 있게하여 일할 權利와 義務를 賦與함으로써 障碍者福祉의 窮極的 目標인 障碍者 個人의 尊嚴性을 높이고 나아가서 障碍者의 完全한 社會參與를 實現하는데 있다.

心身障碍者의 職業再活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장애유형별로 적합한 職業教育을 하여 事業場에 就業케 하거나 또는 自營業에 從事케하는 方法이 있으며 一般 就業이 어려운 重症 障碍者에게는 勤勞施設에서 保護를 받으며 職業에 從事하게 하는 것을 職業再活의 意義인 것이다. 〈註1〉

§2. 障碍者 推定人口

1980年度에 標本調査한 心身障碍者의 出現率은 保健社會部 再活課에서 1984年度 人口 증가율의 比例에 의하여 推定한 수치를 보면 〈表6〉에서 〈表13〉까지 보는 바와 같이 肢體障碍者 636,800名에 人口 1,000名당 15.7名 出現으로서 構成比率은 66.1%이고 精神薄弱者는 46,200名당 1.15名으로 構成比는 4.8%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視覺障碍者는 44,300名 出現率 1.09名으로 構成比가 4.6%이며 聽覺·言語

〈註1〉: 保社部 障碍者 職業再活對策 1984. P.3.

障碍者는 15,700名에 3.86名 構成比는 16.3%이고 其他 障碍者 等은 79,000名에 出現率은 1.96名이며 構成比率은 8.2%로 나타나고 있다.

〈表6〉 障碍者推定人口와 出現率

障碍別 \ 區分	障碍者數 (千名)	出現率 (人口千名當)	構成比 (%)
計	963.3	23.74	100
肢體障碍	636.8	15.70	66.1
精神薄弱	46.2	1.15	4.8
視覺障碍	44.3	1.09	4.6
聽覺·言語障碍	157.0	3.86	16.3
其他障碍	790.0	1.96	8.2

〈表7〉 障碍發生의 原因

原因 \ 障碍別	精神薄弱	全體障碍者
計	100 %	100 %
先天性 또는 出生前後	26.1	5.7
後天性	73.3	81.5
未詳	0.6	12.8

〈表8〉 産業災害 및 交通事故의 增加

區 分	産業災害		交通事故	
	災害者數	身體障碍者	災害者數	身體障碍者
1981	117,938	14,806	117,856	11,700
1982	137,816	15,882	130,946	13,000
增減率(%)	16.9	7.3	11.1	11.4

資料：83年 産業災害分析, 勞動部.

〈表9〉 經濟活動人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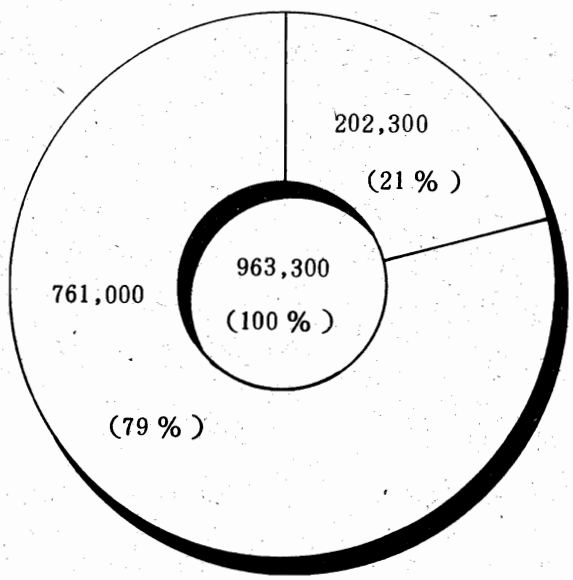

〈表 10 〉 就 業 可 能 人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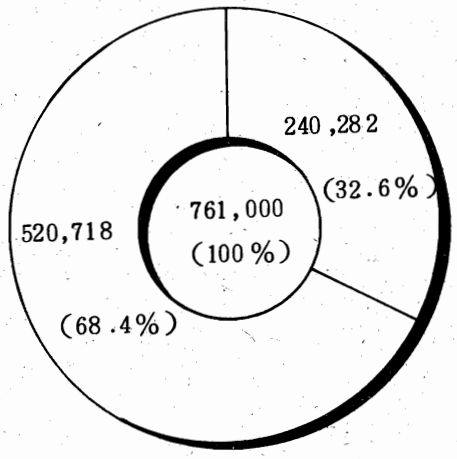

* 就業不可能 人口는 經濟活動 人口中 學生, 심한 障碍등으로 因하여 就業을 할 수 없는 人口를 말함.

〈表 11 〉 就 業 人 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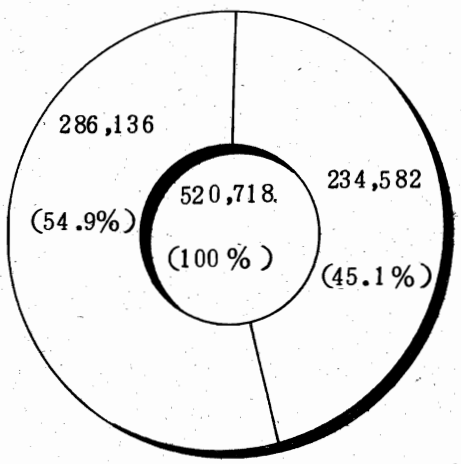

* 全體 障碍者 (963,300 名) 에 對한 就業人口 (286,136 名) 의 比率은 29.7 % 임.

〈表 12〉 就 業 現 況

職 業 別	就 業 人 口	構 成 比(%)
計	286,136	100
俸給・賃金生活者	109,584	38.3
自 營 業	57,057	19.9
農 林 水 産 業	111,867	39.1
其 他	7,628	2.7

〈表 13〉 就業可能者의 非就業原因

非 就 業 原 因	人 口	比 率 (%)
計	234,582	100
技術이 없어서	32,607	13.9
雇傭主가 거절해서	26,977	11.5
作業環境이 나빠서	22,285	9.5
社會生活의 自信이 없어서	6,568	2.8
法令上 制限을 받아서	2,815	1.2
家事에 助力	142,860	60.9

※ 以上 〈表 6～13〉까지는 保社部 再活課의 資料임.

§ 3. 障碍者 雇傭促進施策

우리나라의 心身障碍者의 雇傭促進을 위한 現行制度는 第2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生活保護法 및 心身障碍者福祉法 第12條와 職業安定法第 第17條의 2,3 그리고 同法 施行令 第11條 規定에 의한 52個 種目의 優先 就業職種 等은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障碍者의 保護 및 雇傭促進에 關한 義務規定으로 되어 있다. 이 規定에 따르면 당연히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心身障碍者의 職業訓練을 위한 莫大한 施設을 설치하고 이들 障碍者 들을 保護해야 할 것이다. 國家財政上 이를 先行하지 못하고 生活保護法 第15條 第2項 및 心身障碍者福祉法 第16條 規定에 의한 社會福祉法人으로 하여금 收容保護 및 職業訓練 等을 實施하고 있다.

이들 施設에서 實施하고 있는 主要訓練 種目은 大部分이 수공예, 목공예, 도자기, 樂器, 피아노조율, 電話交換, 時計修理, 通信電子, 機械 및 其他 生產職 等이고 이들 施設에서 實習品으로 生產되는 各種 手工藝品目을 社會福祉協議會의 主管으로 서울역, 구미 및 地下鐵驛등에서 상설 展示舘을 活用하여 展示 및 공동판매를 하고 있다. 이들 心身障碍者들을 위한 職業訓練의 實施現況을 보면 〈表14〉와 같이 1983年末 現在 約51個 施設에서 2,953名의 訓練을 實施하고 있다.

〈表 14 〉 職業訓練實施現況

(1983.12.31. 現在)

區分 / 施設	施設數 (個所)	1983年度 訓練人員(名)		
		計	入所者	通院者
計	51	2,953	2,842	115
職業訓練專門	5	317	292	25
其他 再活院	46	2,641	2,550	91

資料 : 保社部 1984年 障碍者雇傭 促進施策.

以上과 같은 障碍者들의 就業斡旋事業은 1982.7.1부터 保健社會部가 韓國障碍者 再活協會에 委囑하여 이 事業을 수행하고 있다. 協會에서는 1982 年 9月 社會指導級人士 25名으로 障碍者雇傭 促進委員會를 구성하고 10名의 專門社會事業家를 採用하여 雇傭促進을 위한 就業可能職種을 開發하는 등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다.

1982年 7月부터 1983年 6月 30日까지 1年間 就業希望을 한 971名中 30.5%인 297名을 就業시켰고 이 中에 肢體不自由者가 86.1%인 256名으로서 가장 많이 취업되었고 56.6%가 소아마비이고 4.2%의 뇌성마비장애자들이 취업되었다. 〈註 2 〉

이와같은 障碍者의 年度別 취업알선 實績은 〈表 15 〉와 같고 就業現況의 分析은 〈表 16 〉와 같으며 業體規謨別 現況은 〈表 17 〉에서 보

〈註2 : 再活硏究 第 9 號 1983年 三育再活院 p.15.

는 바와 같다.

〈表 15〉 年度別 就業實績

計	82 (7.1 以後)	83	84 (6.30 現在)
756 名	79	418	259

〈表 16〉 職種別 就業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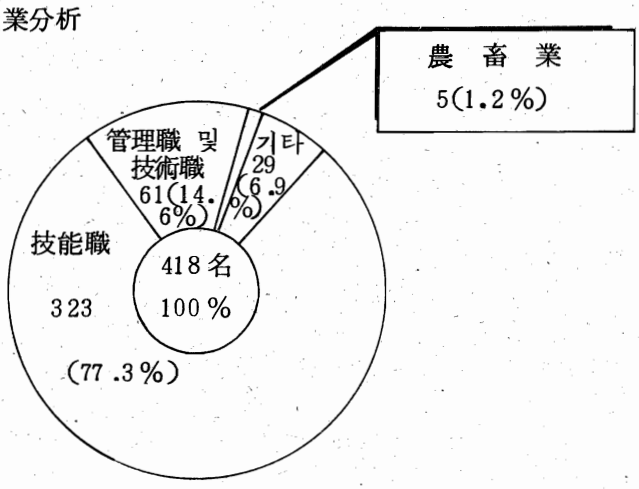

〈表 17〉 業體規模別 分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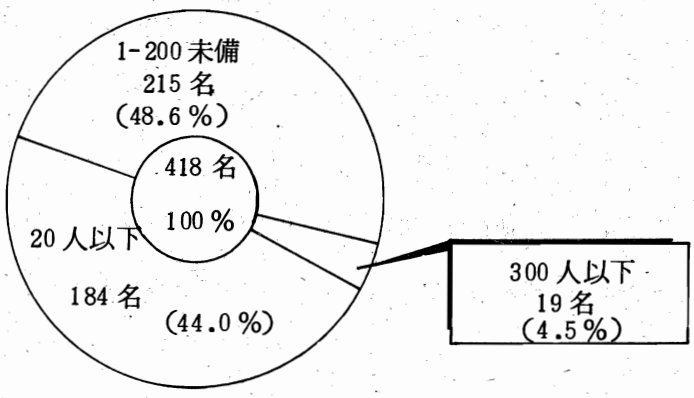

第三章 心身障碍者 福祉政策方向

第1節 外國의 福祉政策

§1. 美國의 障碍者福祉制度

1981年 世界障碍者의 해를 前後하여 先進 여러나라에서는 心身障碍者의 福祉問題를 國家政策的인 次元에서 깊은 관심을 표명하는 것은 그 나라의 先進化 정도를 가늠하는 바로미터(barometer)이기도 하다. 最近 美國에서는 지진아를 비롯한 心身障碍者들을 特殊學校 等 獨立된 制度的인 範圍內에 가두어 놓지 않고 一般 健康人들이 다니는 學校에 入學을 許用하는 等 地域社會正常人으로서 生活할 수 있도록 門戶를 開放하는 政策으로 施行하여 括目할 만한 成果를 거두고 있다고 최근 發行된 US. 뉴스앤드월드리포트지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전하고 있다. 〈註3〉

美國에는 智能 및 情緖發達이 지연된 지진아가 約600萬名 정도 있는 것으로 推算하고 있는데 現在 그 대부분이 수용시설 아닌 정상인들이 살고 있는 地域社會에서 生活하고 있으며 學校도 特殊學級아닌 一般學校에 다니고 있다고 한다.

지진아나 其他 障碍者가 一般學校에 다니면서 이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勿論 特殊學校나 特殊學級에 다니는 경우보다 더

〈註3〉 U.S. News and World reports 醫協, 해외의학전문, 1984. 第1784號.

많은 教育費의 投資가 必要할 것이다. 이것을 可能하게 했던 것이 1975년도에 제정된 障碍兒教育法으로 一般學校에서도 障碍者를 받아 들일수 있도록 하는 規定에 따라 現在 연방정부는 10億弗의 特殊教育 예산으로 쓰고 있고 各 洲別 地方單位에서도 이를 위한 教育投資는 年間 150億弗이 넘는다고 한다. 〈註3〉

이와같은 制度中에서도 全 美國內에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리건洲(Oregon)이다. 이곳에서는 心身의 결함이 심한 青少年中에서도 92%가 地方中學校에 다니고 있는데 이들이 所屬되어 있는 學級마다 同級生의 教師가 있어 學科 공부외에도 상점이나 百貨店에서 쇼핑(Spopping)하는 것등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도와주도록 하고 있다.

이와같은 모델學校 프로그램(model school program)을 開發한 오리건大學의 바버러윌곡스(Babra Willcoks)교수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을 이같은 지진아들이 한사람의 獨立된 社會人으로서 地域社會에서 生活할 수 있게 되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도와주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시인하면서도 이들 障碍者들이 自立할수 있게 하는 지름길은 될수 있는대로 地域社會 속에서 배우게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같은 교육프로그램(education program)에 뒤이어 學校卒業後의 就業問題에 있어서도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그럼으로 美國의 경우 이제 지진아등 障碍者의 就業問題는 종전에 企業의 자선에 기대하든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 즉 장애자들도 正常人과의 경쟁을 통하여 就業市場에 뛰어든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就業率이 낮아서 正常教育을 받고 學校를 卒業하는

年間 10萬餘名의 障碍學生中 10%만이 최적임금 이상의 수입을 벌어들이는 職業을 갖고 있으나 美國의 保健厚生部는 1984年의 경우 25% 수준인 (25,000명)으로 이를 끌어 올리려 하고 있다. 또한 지진학생들을 學校에서 일자리로 까지 이끌어 주는 모델프로그램(model program)을 위하여 議會에서는 1983年末 600萬弗의 예산을 확정하였고 연방정부 또한 障碍者의 就業을 위하여 年間 10億弗을 쓰고 있다.

關係調査硏究에 의하면 이들 障碍者들의 再活에 1弗을 쓰면 平均 11弗이 障碍者就業者들로부터 納稅를 통하여 國庫로 되돌아 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美國內에서 現在 이들 障碍者들이 종사하고 있는 職種은 多樣한데 특히 最近에는 전자회사 등 하이테크(Hitech)企業體들에서도 이들을 고용하고 있다. 시애틀(Seattle)의 醫療電慈會社인 피지오컨트롤社(Physic — Control Company)의 경우 일관작업 대열에 이들을 배치하고 있는데 적어도 10여개의 電慈會社들이 비슷한 일을 이들에게 시키고 있다. 〈註4〉

물론 美國社會에서도 아직은 障碍者에 대한 社會 一般의 편견과 냉대가 完全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障碍者들을 社會로부터 격리시키지 않고 社會속에서 教育을 시키고 일하게 하는 政策과 관련된 Program의 확산으로 앞으로는 많은 障碍者들이 希望찬 未來를 위하여 獨立된

〈註4〉: 醫協新報, 1984.6.14. 第 16 面.

삶을 찾게 될 것이다.

§ 2. 日本國의 障碍者福祉制度

日本國은 1960年度에 身體障碍者雇傭 促進法을 制定하여 身體障碍者들의 雇傭에 關한 事業主의 責務를 規定하여 身體障碍者가 그能力과 障碍類型에 따라 適合한 職場에 就業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職業과 生活의 安定을 圖謀하게 하였다. 따라서 各 企業體別 身體障碍者들의 雇傭 비율을 보면 法定人員이 一般企業體의 경우 1.5%이고 特殊法人은 1.8% 政府行政機關은 1.9%로서 역시 政府行政機關이 가장 많이 採用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註5〉

이와같은 법정비율이 未達할 경우 事業主에게 身體障碍者의 1人 결원 月2萬¥(韓貨로 約6萬원정도) 納付金을 갹출하고 徵收된 納付金은 身體障碍者를 法定比率 보다 더 많이 雇傭하고 있는 企業體에 초과 雇傭比率에 따라 現金支援을 하여 全體的인 障碍者들의 고용을 促進하고 企業體와 事業主의 經濟的 負擔을 均等하게 調整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制度의 施行은 身體障碍者가 就業될수 없는 企業體에서는매월 15~19%의 갹출금을 納付해야 하는 폐단이 생길것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追加雇傭이 可能한 企業體와 障碍者雇傭이 不可能한 企業體間의 절충식 調整制度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身體障碍者들의 就業促進을 위하여 實施하는 職業訓練의 期間은 6個月로 하되 重症障碍者는 1年으로 하였다. 그리고 訓練費用은 1人當

〈註5〉: 保健社會部 OPCIT, 1984. P. 18.

月 17,000엥이며 重症障碍者의 경우 18,000엥까지 雇傭主에게 支給하고 訓練生에게는 月 104,770엥을 지급한다.

以上과 같이 日本國障碍者들이 惠澤을 받고 있는 數는 全體障碍者들의 고용율이 約 32.3%이며 18세 以上 1,977,000名中 638名으로서 0.03%가 就業의 惠澤을 받고 있으며 이中 民間企業體에 雇傭된 장애자의 現況은 〈表 18〉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18〉 民間企業體의 障碍者雇傭 現況

區分 / 雇傭率	企業體數	雇傭實態			法定雇傭率未達企業體
		雇傭勤勞者	身體障碍者	實雇傭率	
民間企業體 法定 : 1.5%	業體 37,526	名 12,514,208	名 152,603	% 1.22	% 46.2
特殊法人體 法定 : 1.8%	〃 96	〃 75,234	〃 1,347	〃 1.79	〃 27.1

資料 : 保健社會部 再活課 1984.8.21.

§ 3. 英國과 西獨의 障碍者福祉制度

1) 英國은 1944年부터 障碍者雇傭法을 制定하여 登錄障碍者의 割當雇傭制를 實施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20人 以上 雇傭하고 있는 企業體는 3%以上 登錄障碍者를 雇傭하게 하였고 어떠한 事業體와도 障碍者의 雇傭을 拒否할 時는 50~100파운드의 罰金을 支拂하도록 하여 障碍者의 雇傭을 義務化시켰다. 그리고 重症障碍者를 위한 保護雇傭制를 實施하여 保護雇傭事業所 즉 데이센타(DAY—CENTER)를 運

營하고 있으며 障碍者 指定職種制度를 實施하여 駐車場 管理職 및 에레베이타案內職은 障碍者 職種으로 指定하고 있다. 또한 障碍者諮問協議會 및 雇傭擔當官制를 運營하여 障碍者雇傭 및 自營者의 訓練에 관한 勸告와 指導를 하는 等 政府나 社會團體 等이 心身障碍者들을 위하여 最大의 관심을 表現하고 있다.

2) 西獨은 1974年度에 重症障碍者法을 制定하여 義務雇傭制를 實施하고 있다. 즉 16人以上을 雇傭하는 全國의 事業主는 최소한 6% 以上의 障碍者를 義務的으로 雇傭하도록 하였다. 만약 義務雇傭 미만을 雇傭할 경우에는 1人當 月100마르크의 罰科金을 代償金으로 支拂하고 이 代償金은 障碍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使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障碍者들의 保護 工場도 專用으로 運營하여 重症障碍로 職業을 갖지 못하는 障碍者를 위하여 保護工場의 增設을 推進하고 있다. 또한 障碍者들이 就業中에 不當하게 解雇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不當解雇防止 對策으로 中央扶助事務所와 聯邦雇傭片에서 不當解雇監視員을 두어 수시로 點檢케 하고 解雇豫告制를 實施하여 解雇4週前에 本人 또는 關係當局에 解雇事由를 通告하도록 하였다.

以上 各國의 障碍者雇傭制度와 雇傭率 그리고 對象企業體 및 對象者의 現況을 要約하면 〈表19〉에서 보는 바와 같다.

〈表 19〉 各國의 障碍者雇傭對策

國別 / 區分	美國	英國	日本	西獨
制度改善	年間 10萬名의 障碍者中 10%의 就業率을 25%로 상승시키고져 10億弗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20人以上 業體는 3%以上 障碍者를 雇傭하고 이를 위반할시는 1인당 50~100파운드의 罰金支拂	法定雇傭率이 未達되는 事業主는 1人當 月2萬엥의 納付金을 徵收하여 초과되는 사업체에 지불한다.	16人이상의 종업원이있는 事業主는 6%이상의 중도장애자를 雇傭하고 이를 위반할시는 1人當 100마르크의 罰科金 支拂義務
雇傭率	10% 미만	3% 이상	15~19%	6% 이상
對象企業體	미 상	從業員 20名 以上	從業員 67名以上	從業員 16名以上
對象者	지진아등 심신장애자	勞動能力 감퇴된 障碍者로서 任意登錄을 畢한 者	身體障碍者 공용촉진법 적용대상자	所得能力이 50以上減退한 重症障碍者

資料：障碍者雇傭促進法 制定과 關聯資料, 1984.7. 現在.

第 2 節 韓國의 福祉政策

§ 1. 障碍者福祉政策의 基本傾向

特殊教育學者인 黃源泳教授의 心身障碍者를 爲한 社會福祉의 豫備的 考察에 의한 社會福祉의 基本傾向에 따르면

첫째, 心身障碍要因의 早期診斷, 早期治療, 早期教育의 機會構造가 社會制度的으로 擴大 保障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는 醫療的 教育的 機會均等이 前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心身障碍者를 위한 診斷治療教育計劃이 지속적으로 수행될수 있도록 社會福祉로서 制度的으로 組織되어야 한다.

셋째, 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制度는 障碍者를 社會로부터 격리수용하는 對社會閉鎖的 斷絶的 性格의 保護가 아니라 社會統合을 위한 豫備的 準備過程으로서 社會共同體 意識의 형성과 障碍者와 非障碍者와의 원만한 社會的 相互關係를 능동적으로 發展시킬수 있는 社會參與意識과 확고한 自我意識을 심어줄 수 있는 社會教育指向的인 것이어야 한다.〈註6〉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教育指向的인 社會福祉體制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註6〉: 心身障碍者와 福祉, 1980 (사회사업가협회)세미나資料 p.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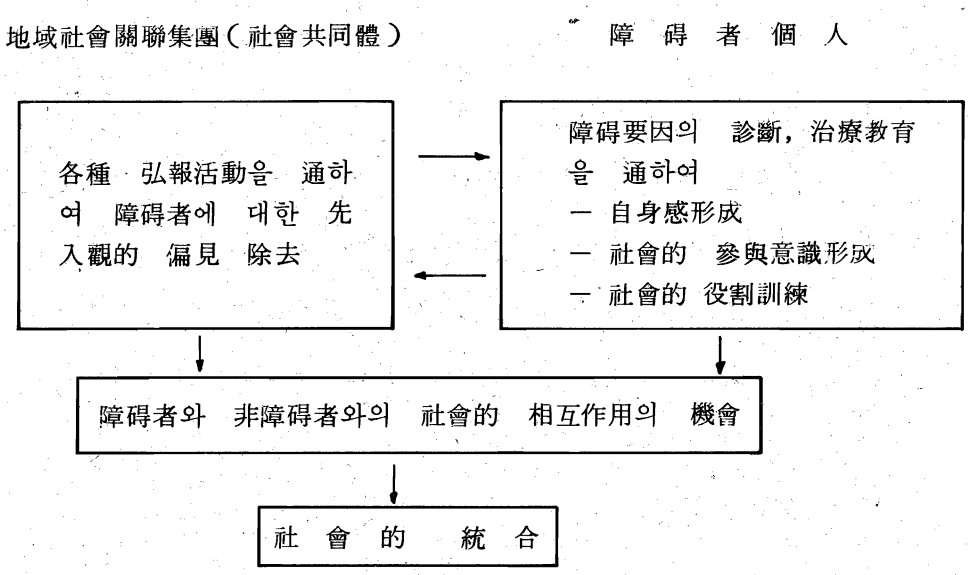

넷째, 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社會隔離的 施設收容」에 그 目的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社會共同體의 一員으로서 社會統合을 위한 豫備的 準備이어야 하므로 地域社會, 公共機關 및 企業體는 障碍者의 특성과 能力에 따라 일정기간 障碍者를 收容하여 心身障碍者福祉를 위한 再活院과 教育機關의 유기적인 相互協力을 하여 社會統合을 위한 社會的 役割 및 職業訓練을 실시할 수 있도록 制度的 組織이 되어야 한다.

§ 2. 心身障碍者 基本權 保障

첫째, 心身障碍者의 基本的 人權保障은 다음 두가지 側面에서 尊重되고 保障되어야 한다.

그 하나는 建築 施設的 側面이다. 지금까지의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

會福祉는 保護的 性格의 限界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保護外的 性格의 問題로서 公共施設의 비용과 建築에서 心身障碍者의 一般的 特性과 能力이 고려되지 아니하였으나 80年代의 도약을 지향하는 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에서는 이점이 고려되어 公共施設의 建築과 이용에서 障碍者의 一般的 特性과 能力이 制度的으로 尊重되어야 한다. 다른 하나는 社會的 相互關係에서 心身障碍者의 人格的 個性, 自己責任, 自己規制, 自己決定等의 協力은 선입관적 판단의 차별없이 尊重되어야 한다.

둘째, 生存의 權利와 生活에의 능동적 參與가 制度的으로 保障되어야 한다.

心身障碍者는 여러 生活領域에서 生活에의 能動的 參與와 生活規則의 준수를 제약함으로 心身障碍者의 生活에의 능동적 參與를 위하여 必要한 人力의 存在와 社會的 支援을 社會福祉的 側面에서 制度的으로 認定하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 對社會閉鎖的 격리적 性格의 生活樣式에서 탈피하여 社會統合으로의 生活樣式을 가질 수 있는 社會福祉를 體系化하는 것이 必要하다. 障碍의 程度와 能力에 따라 生活에의 能動的 參與와 生活樣式을 선택할 수 있는 權利의 保障은 障碍者에게 폭넓은 水平的 社會體驗의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어야 하며 이러한 機會構造의 擴大는 基本的人權의 保障과 尊重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980年代를 지향하는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는 厚生的 側面과 함께 人格的 側面도 包含하는 것이어야 하며 선택한 行爲나 生活樣式에 대하여 社會的 責任이 따라야 한다.

넷째, 生活을 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權利를 制度的으로 保障하는 것이 必要하다. 心身障碍者에게도 정도와 能力에 따라 多樣한 餘暇의 機會擴大와 社會的 支援이 制度的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心身障碍者를 위한 慈善的性格의 保存는 이러한 機會의 活用을 제약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心身障碍者와 그 保護者를 위한 相談指導가 社會福祉의 일환으로서 制度的으로 確立되고 政策的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心身障碍者들은 障碍者 自身이나 그 家族構成員들의 자문에 應하여 心身障碍者의 生活領域에 관련된 問題를 전담적으로 상담하여 온 것은 極少數 慈善團體의 相談機構에 불과하다.

心身障碍者나 그 家族構成員들의 問題를 形而上學的槪念의 方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며 心身障碍者가 生活에 能動的으로 參與하고 生活樣式을 질적으로 改善할 수 있도록 具體的이고 實際的인 方法의 상담지도 專門化가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行政의 일환으로 制度化 되어야 한다.

§ 3. 心身障碍者 家族을 위한 社會福祉

첫째, 心身障碍者의 親權確立

心身障碍者의 父母는 第1次的으로 子女에 대한 부양책임이 있으므로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는 障碍兒童의 教育問題 뿐만 아니라 父母의 任務遂行에 관한 問題領域에도 관계가 되어야 한다.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는 종래의 慈善的 性格의 保護範圍를 벗어나서 民間 및 官主導의 社會福祉機構가 心身障碍者의 父母를 위한 相

談的 教育的 指導를 積極的으로 强化하기 위하여 特殊教育機關이나 專門機關과 協力하여 教育計劃을 추진할 수 있도록 制度化되어야 한다.

둘째, 心身障碍者 家族支援計劃

心身障碍者의 家族支援은 두가지 側面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하나는 心身障碍者에 대한 財政的 支援이나 物理的 補助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心身障碍者 家族構成員들이 心身障碍者의 治療와 教育過程에서 수행하여야 할 부과된 任務規定을 社會教育學的 視角에서 教導하는 일이다. 心身障碍者에 대한 治療와 教育은 무엇보다도 家族構成員들의 유기적인 努力과 성의를 必要로 하기 때문이다.

셋째, 心身障碍者 家庭醫中心의 支援計劃

이미 診斷治療, 教育計劃이 설정되면 地域單位 家庭中心의 治療 및 教育計劃의 수행이 매우 効果的이다. 그 理由는 地域單位 家庭醫制度가 家族構成들의 病歷, 家庭環境, 父母의 教育的 役割의 擔當能力 障碍者家庭의 近隣關係등을 社會學的 視角에서 綜合的으로 評價하여 障碍者를 치료하고 教育計劃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는 地域單位 家庭醫中心으로 연결되는 社會醫療體系의 組織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것이다. 〈註 7〉

§ 4. 心身障碍者福祉를 위한 地域社會의 役割

첫째, 心身障碍者와 그 家族構成員 그리고 地域社會住民 및 各種 團體

〈註7〉: 黃源泳, 心身障碍者福祉를 위한 社會制度, pp.45 ~ 47, 1980.

에 대해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確立의 弘報活動이 積極的으로 强化되어야 한다. 相互間의 理解斷絶로서는 바람직한 社會福祉를 確立할 수 없다.

社會教育學的 側面에서나 社會醫學的 側面에서도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의 確立은 地域社會의 協力을 前提로 하기 때문이다. 弘報活動에서는 人間의 本質은 「相互依存的 社會的 存在」(나의 存在는 너의 存在의 前提가 되고 너의 存在는 나의 存在의 前提가 된다.)라는 社會的 意識과 人間中心主義의 思想이 뿌리깊게 강조되는 것이어야 한다(人間生命의 高貴함과 人格의 尊嚴性).

그러나 지금까지의 慈善的 性格의 保護였던 社會福祉는 地域社會의 協力을 구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둘째, 心身障碍者에게도 能力에 따라 능동적인 社會參與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心身障碍者가 社會로 부터 격리되어 社會的으로 疎外된 人間이 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註8〉

心身障碍者에게 社會的 參與의 機會를 擴大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問題들은 交通手段의 利用과 就業의 機會擴大 障碍者의 社會保險制度 確立, 地域社會住民의 理解와 協力인 것이다.

셋째, 地域社會 隣近集團은 心身障碍者와 健康人間에 先入觀的 偏見이 없는 相互關係를 유지하기 위하여 慈善團體, 民間有志, 公共團體등의 자

〈註8〉: Ibid,pp.48,53.

발적인 協力을 받아야 한다.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는 制度의 確立에 앞서 地域社會近隣集團의 자발적인 참여와 協力이 先行되므로서 可能하다. 그리고 지역사회 인근집단에 共同施設을 설치하여 近隣關係의 社會化 過程에서부터 統合의 豫備的인 體驗을 갖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 5. 國家的 次元의 社會福祉確立 條件

國家的인 次元에서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의 確立條件은

첫째, 國家는 心身障碍者에 대한 社會福祉의 分配에 있어서 機會均等의 原則을 制度的으로 確立하여야 한다. 特히 低所得 階層의 心身障碍者에 대한 醫療保障과 教育機會의 擴大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國家의 障碍者福祉施設 建築 또는 改造에 대한 投資財源의 確保는 教育税에 의한 獨立된 目的税가 바람직하다. 이것이 不可能 할 경우 西歐國家들과 같이 非定期的 間接税에 의한 財源確保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例:기념우표에 대한 부가세, 계절에 따른 유흥업소의 소비세 부가등).

셋째, 具體的이며 實際的인 行政指導를 통한 社會福祉의 實現인 것이다. 즉 國家는 心身障碍者를 위하여 社會的 여건 변동에 따른 關係法令의 改定 또는 新規制定을 할시 具體的이고 經驗的인 Program 에 의하여 實現可能한 行政指導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行政指導는 두가지 側面에서 體系化되어야 한다. 하나는 心身障碍者와 그 保護者에 대한 弘報活動이고 다른 하나는 地域社會 關係機關이나 團體에 대한 弘報活動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心身障碍者福祉法 또는 雇傭促進法 및 障碍者保護法 等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1) 心身障碍者를 위한 社會福祉 또는 保護의 目的과 그 對象에 관한 事項.

2) 障碍者의 收容保護와 職業訓練 就業斡旋 解雇 예방등에 관한 事項

3) 障碍者 및 그 保護者의 權利義務와 各種 保護施設 및 保護機關에 關한 事項.

4) 障碍者 再活의 定義와 社會安全制度의 組織 및 再活機關의 運營에 關한 事項.

5) 再活의 時期와 期間 및 機關의 案內, 社會保障의 範圍, 醫療保障, 就業 等에 관한 事項.

6) 障碍者의 社會生活統合 즉 勤勞, 職業, 社會關係 등을 위한 社會安全에 관한 事項

7) 障碍者의 交通手段利用과 社會年金, 職業教育, 身分保護 等에 關한 事項.

8) 障碍者에 대한 社會保障 즉 住宅 및 勤勞基準, 未成年者保護等에 關한 事項.

9) 障碍者의 就業을 위한 各 職種別 就業의 限界와 健康과의 就業比率에 關한 事項.

第 3 節 障碍者 職業再活對策

§ 1. 80 年代의 福祉課題

第 5 共和國의 國政指標中 福祉國家의 건설을 80 年代의 國家指導理念으로 설정하였다. 이것은 國民의 念願 이기도 하지만 南北對立에서 우리가 生存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러한 福祉國家는 무엇이며 왜 이러한 國家의 建設이 必要한가를 英美學者들의 見解를 中心으로 그 理念的 背景을 규명해 보면 福祉國家主義(Welfare Statism)이라는 말은 理念的으로 본다면 人間의 幸福을 추구하기 위하여 國家 개입에 의한 民主主義와 人道主義의 具現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理念의 배합이 必要하게 된 것은 역시 資本主義의 모순에서 비롯되고 있다. 資本主義의 모순은 주로 不平等과 연대성의 파괴에 있으며 自由主義는 오히려 自由資本主義가 不平等을 감소시키고 개인적 自由를 保護하며 이것은 平等에 기여한다고 한다. 그러나 修正自由主義와 社會主義者는 그러하지 않다.

修正自由主義는 資本主義가 自律規制的이지 못하고 浪費的이고 非効率的이며 資源을 잘못 배분한다. 그리고 資本主義는 스스로 不義와 貧困을 소멸시키지 못하고 國家利益과 일치된 지배적인 經濟的 관심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편 社會主義者의 見解는 個人의 利益을 증가시키려 하고 市場制는 非民主的이고 不當하며 自由市場制度는 自律規制的이지 못하고 政府가 規制하지 않으면 오히려 無能하고 그것은 貧困을 소멸하지 못하며 不平等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마르크스主義者는 資本主義가 非人間的이고 不道德한 것이기 때

문에, 이것은 改革보다는 전적으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福祉國家는 이러한 극단적 社會主義의 입장과는 달리 根本的으로 資本主義를 인정하고 그것의 모순을 해결하면 人間의 幸福을 追求할 수 있다는 것이다. 〈註 9〉

以上과 같은 理念的 背景을 토대로 하여 80年代에 우리나라 社會福祉制度의 가능한 改善方向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첫째, 비록 우리나라가 급속한 產業化를 經驗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잔여적 성격에 입각한 저소득 階層의 福祉를 無觀心해서는 않될 것이다. 20餘年의 歷史를 갖인 우리나라의 公的 扶助制度는 그 扶助의 內容面에서 또 순수면에서 1960年代에 비하여 괄목할만한 發展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生活保護對象者들에 대한 居宅救護와 施設救護등은 그들이 自活의 길을 걷게 하지 못하고 만성적인 의타심을 갖고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制度的인 側面에서의 社會保險制度를 확충해 가는 것은 公的扶助와 社會的 扶助를 받아야 할 취약성을 內包하고 있는 階層에 대하여 예방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現在 實施되고 있는 醫療保險制度는 所得階層間에 또 地域的으로 불균형 상태에 있어서 所得再分配 效果가 적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第2種의 地域醫療保險制度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社會福祉 서비스 전달체계는 行政 편의 위주로 되

〈註 9〉: 金泳謨, 福祉國家의 理念的 背景, 1980 社協, p.167.

어 있어서 社會福祉 서비스를 必要로 하는 대상층의 욕구를 充足시키는데 미흡한 상태에 있다.

現代의 社會福祉가 단순히 구호를 目的으로 하지 않고 대상자가 자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면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서비스의 종합성, 전문성 및 접근의 용이성을 재고시켜 주는 方向으로 개선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市, 郡, 區 單位에 "社會福祉事務所"가 설립되어야 하며 專門家들에 의하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만 한다.〈註 10〉

넷째, 福祉國家에 있어서 社會福祉의 책임은 國家에 있다는 것은 政府에 의하여 모든 社會福祉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 하지는 않는다. 社會福祉서비스의 專門化와 國家의 財政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民間社會福祉館과 施設을 계속 育成發展 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다섯째, 中央集權的이고 획일적인 社會福祉서비스를 地域的 특성에 맞게 多樣化시키고 地域住民이 스스로 參與할 수 있는 制度的 장치를 마련할 必要가 있다. 地域社會 中心으로 社會福祉協議會(Soci Welfare Council)를 設置하여 地域社會의 民間社會福祉活動에 必要한 모금 運動을 전개하고 서비스의 조정기능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80年代의 基本 課題라 하겠다.

§2. 社會福祉施設 長短期別 改善對策

以上과 같은 80年代의 課題中 社會福祉施設의 長短期對策 基

〈註 10〉: 崔日燮, 80年代의 國家發展課題, 現代社會, 83年 여름號, p.127.

本方向을 要約하면 短期對策은 〈表 20 〉과 같고 長期對策은 〈表 21 〉과 같으며 그 改善方案은 〈表 22 〉에서 보는 바와 같다.

§ 3. 職業再活의 問題와 그對策

1) 心身障碍者에 대한 職業再活의 問題는

첫째, 障碍類型別 職業訓練機關이 不足하여 많은 障碍者들이 社會福祉施設이나 家庭에서 무료한 時間을 보내고 있는 實情이다.

둘째, 職業訓練을 받을수 있는 機會가 不足하다. 우리나라에 唯一한 國立釜山再活院이 廢止되고 또한 水原의 원호재활원도 직제개편에 따라 그 문을 닫게 되었으니 障碍者들의 職業訓練의 機會는 더욱 不足한 것이다.

셋째, 障碍者들의 能力에 대한 社會的 認識이 不足할 뿐만 아니라, 一般的으로 健康人도 就業의 機會를 얻을 수 없는데 障碍者들의 就業能力을 認定할 수 없다는 것이다.

넷째, 障碍者의 專門職種에 대한 就業의 機會가 不足하다. 障碍者들이 自己能力에 따라 專門職種을 개발하여도 健康人들이 모두 그 자리를 찾이하고 있으므로 障碍者들이 就業할 수 있는 機會는 더욱 不足하다.

다섯째, 障碍者들에 대한 제약 요인의 상존

心身의 障碍者들이 갖고 있는 열등의식 즉 나는 障碍者이기 때문에 健康人과 같이 경쟁할수 없다는 心理的 制約 要因 때문에 自立意欲을 상실하고 一般事業體에서는 같은 資格의 技術者라면 障碍者보다는 健康人을 채용하는 것이 낳다는 客觀的인 제약요인 때문에 우리나라의 障碍者들에 대한 職業再活의 問題는 더욱 심각한 것이다.

〈表 20〉

短 期 對 策 方 案

〈基 本 方 向〉

- 短期對策
  - 法令整備
    - 法令改正
      - 社會福祉事業法・老人福祉法
      - 兒童福祉法・心身障碍者福祉法
      - 生活保護法・淪落行爲防止法
      - 租稅減免規制法
    - 法令制定
      - 婦女福祉法
      - 障碍者雇傭促進法
  - 職業訓練
    - 就業斡旋
  - 施設保護
    - 棄・迷兒保護施設
      - 有緣故兒—歸家措置
      - 無緣故兒—保育措置
    - 嬰兒및어린이託兒施設
      - 嬰兒—農村嬰兒委託 —時保護
      - 託兒—都市어린이委託 —時保護
      - (民間資本에 依한 有料 託兒施設)
    - 浮浪人 및 浮浪兒 保護施設
      - 有緣故者—居宅保護
      - 無緣故者—施設保護
    - 不遇女性善導施設
      - 保護 및 生活指導

〈表 21 〉

長 期 對 策 方 案

- 長 期 對 策
  - 心身健康者 —— 家庭保護
    - 老人과 兒童 — 緣故者에 依한 家庭保護
    - 母子別 世帶 — 獨立世帶에 依한 居宅保護
  - 有財產無緣故 —— 施設保護
    - 半額負擔施設提供
    - 全額負擔 〃
    - 高額負擔 〃
    - → 社會福祉法人,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運營
  - 心身障碍者 —— 收容保護
    - 老人, 兒童療養施設
    - 不具再活福祉施設
    - 不具廢疾者療養施設
    - 精神障碍者療養施設
    - → 肢體障碍 / 精神障碍 / 視覺障碍 / 聽覺障碍 / 言語障碍 / 內部障碍 → 其他 各種 疾患

〈表 21〉

改 善 對 策 方 案

〈改 善 方 案〉

가. 心身障碍者와 健康人을 分離收容 — 世帶別 家族單位 被收容者를 包含하여

나. 各種障碍別 分離收容 對策 —
- 肢體障碍
- 言語障碍
- 視聽障碍

} 身體再活 — 職業再活 — 就業保障

- 不具癈疾者
- 精神障碍者
- 內部障碍

} 治 療 — 健康回復 → 就業保障

다. 遊休兒童施設의 機能轉換 —
- 障碍者再活施設
- 職業輔導施設
- 成人福祉施設
- 老人休養施設

라. 遊休非收益性財產을 收益性財產으로 轉換誘導 —
- 財產代替
- 開墾促進

} — 收益事業場으로 轉換

마. 公共支援을 段階的으로 擴大 —
- 國 費
- 地 方 費
- 團體募金

} 社會福祉寄託金等

바. 社會福祉事業專門家確保誘導 —
- 教育訓練科目 現實化
- 實務社會事業家養成
- 專門社會事業家養成

} 教育訓練機關 擴充

2) 以上과 같은 障碍者들의 職業再活問題에 대하여 改善對策을 마련한 保健社會部 施策에 의하면 1985年度까지 國立再活院을 建立한다는 것이다. 現在 精神薄弱兒童만을 수용보호중에 있는 國立覺心學院을 擴大 改編하여 建坪 15,009㎡(4,642坪)規模에 66億을 투입하여 心身障碍者들의 職業訓練 및 再活事業의 示範運營을 할 計劃이다.

따라서 再活의 기법등의 民間普及과 再活專門家의 養成, 그리고 調査研究 等을 實施한다고 하였다. 向後 이와같은 再活施設等의 職業訓練技能은 〈表23〉과 같이 强化할 것이며 職業訓練센타 및 勤勞福祉施設은 〈表24〉와 같이 建立하여 一般事業體에 就業할 수 없는 重症障碍者들에게도 勤勞施設에서 일할 수 있는 機會를 提供하는 每年20餘職種에 대한 技能競技大會를 開催하여 障碍者들의 技術 向上을 도모하고 一位 입상자에게는 技能士2級 實技試驗과 技能士補 資格試驗을 免除할 것이며 1985年度 네델란드에서 開催豫定인 國際技能競技大會 參加를 對備하여 기존 職業再活院은 더욱 분발해야 할 것이다.

〈表23〉 職業再活施設技能强化

區分 / 施設 및 裝備	計	現在까지의 實績			向後計劃		
		82	83	84	85	86	87
職業再活施設擴充	93	5	8	10	34	26	10
職業再活裝備補强	108	5	5	5	35	35	23

〈表 24〉 職業訓練센타 및 勤勞施設의 建立

區 分 \ 年度別	計	84	85	86	87	비 고
職業訓練센타建立	3	-	1	1	1	
勤勞施設建立	8	1	5	2	-	

그리고 障碍者 能力에 대한 社會的 認識不足은 우선 社會에서 心身障碍者에 대한 편견의식을 제거한다. 즉 各種 技能競技를 통하여 障碍者의 能力을 社會에 널리 알리고 障碍者가 健康人보다 實力이 우수하다는 것을 各職種에 대한 認識을 제고시킨다. 즉 肢體障碍者들은 相互 보완작업을 시키고 視覺障碍者들은 피아노 조율 또는 電話交換訓練을 하고 聽覺障碍者들은 소음이 甚한 作業環境의 機械作動 訓練등을 시키고 精神薄弱者는 단순 反復勞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다.

그이외 行事로서는 障碍者들의 成功事例發表 再活大會開催 成功事例集發刊, 障碍者作品展示會 開催 等 多樣한 行事計劃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障碍者就業機會의 不足에 대하여는 持續的으로 障碍者就業 業體를 發掘하고 障碍者의 雇傭促進을 위한 大企業主招請 조찬회 등을 開催하여 300人以上의 企業體는 종전의 19名 就業에서 30名 以上 就業할 수 있도록 誘導한다.

그리고 政府機關의 障碍者採用 範圍를 擴大하고 可能하면 障碍者들이 自營業을 할 수 있는 직종을 開發指導한다. 즉 農水産業에 종사하는

障碍者들에 대한 教育指導, 담배, 우표판매 및 신문가두판매에 대한 우선권부여 重症障碍者에 대한 就業機會를 提供할 것이며 障碍者雇傭促進法을 制定하여 고용의무제를 도입한다. 그리고 障碍者 自身의 열등의식을 배제하고 自立 意欲을 고취하고 외부적 제약요인 등을 개선한다.

따라서 障碍者의 社會參與를 제약하는 各種 法令을 改正토록하여 편의시설을 擴大設置하고 障碍者의 雇傭이 可能하도록 事業場의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誘導한다는 등의 計劃은 모두 1984年度에 세운 保健社會部의 障碍者職業 再活의 對策인 것이다. 以上으로 障碍者 職業再活問題와 그 對策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第四章 障碍의 定義와 再活理論等

우리나라 障碍者에 대한 判別基準이나 定義을 내려둔 法的根據는 第二章 現況에서 밝힌바와 같이 特殊教育振興法 및 心身障碍者福祉法 等에 規定되어 있다.

心身障碍者 福祉法 第2條(定義) 이 法에서 心身障碍者라 함은 肢體不自由, 視覺障碍, 聽覺障碍, 音聲言語機能障碍 또는 精神薄弱등 精神的缺陷으로 因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분명히 心身障碍者란 精神障碍者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같은 法 시행령 제2조 및 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는 精神障碍者에 대한 판별기준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法律施行에 다소 차질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정신환자와 장애자의 구분이 어렵게 되어 있다.

第1節 心身障碍者의 定義

§1. 精神障碍者

우리나라는 精神障碍者만을 파악하고저 하는 調査硏究가 별로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있었다고 하여도 家庭에 비밀히 은익된 障碍者가 많으므로 그 數를 파악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本硏究에서는 筆者가 精神障碍者 收容保護施設을 직접방문하여 收容年度別障碍期間 等을 調査하여 나름대로 精神障碍者와 精神患者를 區分해 보

고자 한다.

精神障碍와 精神疾患의 原因이 多樣하고 그 程度는 輕微한 것으로 부터 아주 甚한 경우까지 隔差가 많아서 어디에서부터 精神病이라고 하여야 할지 實態 調査를 通하여 파악하기에는 專門가가 보아도 알 수 없는 實情에 있다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精神科領域 처럼 疾病發生의 原因이 多樣한 醫學分野도 드물 것이다.

遺傳的, 生理的, 心理的, 物理的 要因 等으로 因한 어려움과 精神疾患을 다루는 歷史的 社會的 背景이 다르기 때문에 ICD (國際疾病分類)가 制定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많은 나라에서는 臨床家에 의한 分類法을 活用하고 있다. 그러나 現在까지 알려진 바로는 全體國民 가운데 最小限 1%는 甚한 精神障碍라고 하며 平生을 지나는 過程에서 最少限 10%는 甚한 精神障碍에 罹患되는 것으로 推定되고 있다.〈註11〉

低開發國家 또는 開發途上國에서의 資料에 의하면 이들 甚한 精神障碍者 가운데 大部分 精神分裂症 및 조울증 등 主要機能的 精神症이라고 하며 그 다음이 頭蓋內 感染에 隨伴된 精神症 및 其他 腦性또는 身體的 病態에 隨伴된 精神症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外에도 점차 增加趨勢인 老年期 및 初老期痴呆(치태. Dementia)症도 平均壽命이 높아감에 따라서 問題가 될 것으로 내다 보이며 各種 事故로 誘發되는 腦性障碍 및 알콜 또는 藥物에 依存한 腦神經 및 精神障碍도 많지 않다고 看過해서는 않될 것이다.

〈註11〉: KHDI, 心身障碍者 實態調査. 1980, p.25.

또한 癎疾患者는 開發途上國에서 有病率이 더 높아서 0.9～2.1%정도인 것으로 世界保健機構에서 推定하고 있다.

이러한 精神科的 要求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이미 1980年度에 KHDI 가 調査硏究報告한바 있으므로 이를 省略하고 本 硏究에서는 20年以上 精神障碍者 收容保護施設을 運營하면서 많은 종류의 精神障碍者들을 직접 保護관찰한 분들과 精神科 醫師 等을 訪問相談 결과에 의하여 患者와 障碍者를 區分해 보고져 한다.

1) 30餘年間 精神障碍者들과 함께 살아온 臨床家 朴연용씨와 河천수씨의 말에 의하면 精神病이 發病한후 단기 3年, 장기 5年 이내에 치료되지 않으면 이는 患者로 볼 수 없다고 自身있게 말한다.

이분들은 醫師가 아니므로 醫學的인 臨床試驗 결과를 發表한 것은 아니지만 數十年間 精神障碍者들을 수용 保護하면서 오랜 세월을 두고 經驗한 臨床的 體驗에 대한 實驗的 眞理의 表現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날 醫學的으로도 精神患者와 精神障碍者를 區分하지 못하여 心身障碍者福祉法 第2條中 精神的 缺陷으로 因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心身障碍者라고 定義되어 있으나 이 基準을 定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心身障碍者福祉法上 精神障碍者와 患者를 區分하지 못한다면 이 法의 名稱은 身體障碍者福祉法 또는 障碍者福祉法이 되어야 맞당할 것이다.

이 法을 초안하고 行政立法 추진에 관여한 바 있는 本 硏究者의 立

法 취지는 精神障碍者와 身體障碍者를 포함한 基本法의 制定案을 기초하였으나 現在는 精神障碍者가 제외된 상태에서 이 法令을 施行하고 있다.

心身障碍者福祉法 第2條 및 同法 施行令 第2條第2項 同施行規則第2條, 心身障碍等級表(第2條)等 參照.

◎ 心身障碍者福祉法(1981.6.5 法律 第3452號)

第2條(定義) 이 法에서 心身障碍者라 함은 肢體不自由, 視覺障碍, 聽覺障碍, 音聲, 言語機能障碍 또는 精神薄弱등 精神的 缺陷(이하 心身障碍라 한다)으로 인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心身障碍者福祉法施行令(1982.2.17. 大統領令 第10730號)

第2條(心身障碍者의 基準) ②心身障碍者는 心身障碍의 程度에 따라 등급을 區分하되 그 등급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 心身障碍者福祉法 施行規則(1982.5.22. 保社部令 第704號)

第2條(心身障碍者의 等級) 令 第2條2項의 規定에 의한 心身障碍者의 등급은 別表1과 같다.

◎ 心身障碍者의 障碍等級表(第2條)〈別表1〉

精神的 缺陷이 있는 者에 대한 等級은 없음.

2) 두 臨床家의 證言에 의하면 精神科 專門醫이며 醫學博士인 全州 腦病院의 이만용선생과 群山 계정병원의 이영춘博士도 精神病患者에 대한 오랜 臨床的 實驗 結果에 따라 역시 일단 精神疾患을 앓고 있는 患者를 여러가지 醫學的 方法으로 3年以上 계속치료하여도 그 精神이 회복되지 않는 者에 대하여는 患者로 볼 수 없으니 귀 요양원에서 수용보호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반면에 귀 요양원에서도 發病3年以內의 者로서 治療를 要하는 患者가 있으면 病院으로 案內해 줄것을 要請한 것을 미루어 볼때 本 硏究者는 精神的障碍를 일으킨 者가 5年以上 치료하여도 그 效果가 없고 투약이 중단상태에 있는 患者등은 일단 精神障碍者로 보고 收容保護施設에서 요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유형의 정신장애자는 心身障碍者福祉法에 의한 精神再活事業이 병행될수 있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그 理由는 精神的 障碍者와 患者의 分類를 ICD (國際疾病分類)에서도 이를 明確히 區分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各己 自國의 환경과 처지에 따른 臨床家들의 實驗的 體驗에 의한 分類法을 活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筆者가 本 硏究를 위하여 여러명의 精神과 專門醫들과 相談을 해보았고 또한 30年以上 精神障碍者들을 收容 保護한바 있는 經驗者등을 만나서 토론한 결과 역시 精神患者와 障碍者는 區分管理가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와같은 結論을 얻기 위하여 20年 以上된 收容保護施設의 代表者 20餘名과 20年 以上 患者들을 治療해온 精神科 專門醫 5名과 공청회

를 갖어 보았으나 역시 한결같이 3年以上 治療의 효과가 없는 患者는 障碍者로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筆者가 20個 施設의 被收容者들을 대상으로 調査한 결과 總人員 4,929名에 대한 收容期間 別 比率을 보면 〈表 25〉 收容期間別 現況에서 보는 바와같이 1年 以上 5年미만의 數가 가장 많은 2,390명으로서 48.5%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적어도 5年까지는 회복될수 있는 希望을 버리지 말고 계속 치료하여야 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5年以上 者를 障碍者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總4,929名中 72.6%인 3,580名이 그래도 希望的이며 27.4%인 1,349名은 障碍者로서 心身障碍者福祉法의 適用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表25〉 精神疾患收容期間現況

※ 20개 시설 (1984.9.30. 現在)

기 간	인 원	비 율	비 고
총 계	4,929 명	100 %	
1년미만	1,190	24.1	72.6%
1년~5년미만	2,390	48.5	
5년~10 〃	911	18.5	27.4%
10년~15 〃	297	6.0	
15년~20 〃	103	2.1	
20년이상	38	0.8	

3) 만약 정신장애자와 患者를 區分하지 않고 모두 入院治療를 전제로 하는 患者로 본다면 精神患者의 數를 全國民의 1%로 추정한다면 머지 않아 40餘萬名에 달할 것이 예상된다. 이와같이 많은 精神患者들을 入院시킬수 있는 病院施設이 不足할 뿐만 아니라 病院施設이 充分하다고 해도 10年 20年의 長期 患者들 때문에 病院施設은 끝없이 늘어 나도 不足現狀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단 病院에서 3年 또는 5年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않는 精神疾患者는 障碍者로 판정하여 精神再活施設에 收容保護하면서 精神 요양조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精神病院에 入院되었던 精神疾患者가 3年 또는 5年 以內에 精神疾患이 完治되었다 할지라도 일단 그들이 社會에 나오게 되면 自己가 精神을 잃었던 그 時點에서 부터 精神病이 完治된 그날까지 3年 또는 5年 동안의 社會的 변화과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社會生活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로 인한 충격 때문에 정신병이 再發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精神病院에서 完治된 退院者들도 일정한 프로그램에 의한 精神再活訓練을 받을 수 있는 조치가 必要하다. 이러한 對策이 없이는 精神病院은 退院한 者가 一般健康人과 같이 社會生活을 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以上과 같이 心身障碍者의 定義中 精神患者와 精神障碍者를 區分하여 定義해 보았다. 이와같은 定義에 의하여 行政當局에서는 心身障碍者福

祉法 施行令과 施行規則에 精神障碍者의 판별기준이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 2. 肢體障碍者

肢體障碍者라 함은 先天的 또는 後天的인 要因으로 인하여 上肢와 下肢 및 體幹部에 痳痺 또는 關節의 機能障碍 等과 先天的인 各種 奇形이 있거나 四肢中 그 一部가 切斷되어 日常生活에 支障이 있는 者를 말한다.

1) 小兒痳痺와 腦性痳痺

① 小兒痳痺는 Virus 病源體의 感染으로 發病하는 것으로서 팔다리 또는 몸통에 弛緩性 痳痺가 있어 筋力이 消失 또는 感退되고 筋肉이 萎縮되어 팔·다리가 가늘어 지며 關節의 攣縮 等으로 各種 變形과 四肢의 길이가 짧아진다. 그 理由는 마비된 四肢가 活動機能이 정지된 상태에 있으므로 發育이 지연되기 때문에 四肢의 길이가 짧아질 뿐만 아니라 筋肉이 無力함으로 가늘어 진다고 한다.

② 腦性痳痺는 그 原因의 80%이상이 分娩週邊期에 일어 난다고 하며 姙娠中 要因으로서는 母體의 感染, 放射線照射胎兒의 無酸素病,胎兒의 腦出血 核黃疸母體 新陳代謝 異常中毒症胎兒의 未熟性 等을 들 수 있다고 한다.

特히 未熟兒에 있어서는 成熟兒 보다는 約 3 ~ 5 倍나 腦性痳痺發生의 危險度가 높다고 한다.

小兒痳痺의 경우와 달라서 硬直性 痳痺인 것이 特徵이며 그 범위에 따라 단마비, 편마비, 下半身痳痺, 三肢痳痺, 四肢痳痺 등으로 나눌수 있

다고 한다.〈註 12〉

2) 腦卒症으로 因한 片痲痺等

이 病은 成人에게 많이 發生되는 各種 腦血管障碍로 因하여 半身에 硬直性痲痺를 가져온다. 中風으로 因한 半身不隨 等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脊髓損傷 또는 疾患으로 因한 痲痺 까스中毒으로 因한 痲痺 四肢의 말초신경손상으로 因한 痲痺, 세균감염 즉 癩病으로 因한 痲痺 進行性"筋디스트로피" 등의 痲痺가 있다.

이러한 痲痺의 症狀은 小兒痲痺의 境遇와 흡사하나 痲痺가 左右對稱的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發生原因에 있어 遺傳的 要因이 많은 것의 特稱이다.

嚴密한 意味에서 神經에 起因되는 痲痺라기 보다는 筋肉自體에 依한 筋力減退와 筋萎縮을 招來한다고 하나 여기서는 便宜上 痲痺로 分類하며 要約하면 先天的인 奇形으로 因한 身體의 形態異常을 말하며 後天的 外傷이나 疾病으로 인하여 二次的으로 發生되는 肢體의 各種 形態異常, 卽 變形과는 區分되어야 한다.

3) 關節運動機能障碍

外傷 또는 各種疾病 즉 結核性 關節炎, 류마치스樣關節炎, 急性化膿性關節炎, 慢性骨關節炎 等 關節部位의 火傷으로 因한 關節運動이 制限되거나 關節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게 强直되는 수가 있다. 脊椎結核이 심하여 꼽추가 되거나 手術을 받았을 때에는 脊椎의 相當한 範圍

〈註 12〉: Ibid. p.27.

의 關節이 强直狀態에 이르게 되며 强直性脊椎炎일 경우도 이와 비슷한 狀態를 나타낸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痳痺 증세가 있을때 筋力의 減退 및 消失과 關節의 攣縮 또는 變形關節部의 奇形으로 因하여 運動障碍가 오는 境遇도 있다.

§ 3. 視聽覺 및 言語障碍者

1) 視覺障碍

視覺障碍란 눈 뿐만 아니라 눈거풀을 包含하여 눈에 附隨된 構造 및 機能과도 關聯된다. 視覺障碍의 程度는 視力機能에 關聯되는 障碍에 따라 定하여지며 이는 補助器具로서 減少될수 있으며 一般的으로 眼鏡이나 콘택트렌즈로서 完全히 矯正될 수 있는 障碍는 視覺障碍로 考慮되지 않는다.

視覺障碍의 分類는 弱視와 失明으로 大別할 수 있으며 弱視는 中等度와 重症으로 區分하고 失明은 眼盲으로 區分하여 兩眼과 片眼으로 각각 區分하기도 한다. 그리고 眼盲의 種類를 光覺判別도 할 수 없는 完全失明者는 社會, 經濟的인 面으로 볼때 視力障碍로 인하여 生計維持를 할 수 없는 經濟的 眼盲과 本來從事하고 있던 職業에 視覺障碍로 인하여 그 以上 從事할 수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職業眼盲, 그리고 普通 사람들이 받는 教育手段으로는 教育을 받을 수 없는 教育眼盲 等으로 社會經濟的인 面에서 區分할 수 있다.

따라서 眼盲의 範圍와 定義는 視力, 視野 社會經濟的 眼盲 等을 基準으로 하여 각 나라의 學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 현실이며 世界保健機構에서는 眼盲의 定義를 世界的으로 統一하려는 努力이 進行

中에 있다. 視力이나 視野를 基準으로 하여 몇個 나라에서 내린 眼盲의 定義는 〈表 26 〉과 같다.

〈表 26 〉 各國의 眼盲定義

국 명	근 거	시력기준(교정시력)	정 도
영 국	교 육 법	20/200 이 하	안맹(실명)
	맹 인 법	10/200 이 하	안맹(실명)
일 본		2/200 이 하	안맹(실명)
		2/200 ~ 4/200	준 안 맹
노르웨이	맹 인 보 호 법	1 m앞에서 손가락수 판별 불능	안 맹
독 일		8/200 이 상	안 맹
이 태 리	직 업 보 호 법	20/200 이 하	안 맹
화 란		3 m앞 손가락수 판별불능	안 맹
불 란 서		20/200 이 하	안 맹
미 국	U.S Model Reporting Area for Blindness Statistics	20/200 이 하 20/200 이상이나 시야 20 도이하	안 맹
세계보건	World Council for Welfare of the Blind	1. 10/200이하 2. 광각완전결여 3. 시야의 심한 용 (20 도이하)	안 맹

資料 : 1980. KHDI. p.31.

2) 聽覺障碍

聽覺喪失 또는 귀머거리 等 聽覺障碍者는 個人의 苦痛뿐만 아니라 家庭은 勿論 社會的으로 問題視되고 있다. 聽覺障碍者는 知識의 習得과 言語의 表現이 困難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意思疎通이 심각한 障碍를 받게 된다.

또한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精神的 社會的으로 점차 격리되어 知識水準의 差異와 社會活動의 制限, 就學 또는 職場의 就業機會등을 잃게 되어 正常的인 社會活動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社會團體나 政府에서는 이들 障碍者의 基本的 要求를 正確히 把握하고 精神的 社會的으로 體系的인 解決方案을 模索하여 汎國家的인 再活事業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聽力障碍의 類型은 一般的으로 傳音性 聽力喪失과 知覺神經性聽力喪失等이 있으며 이 두가지 要素가 함께 發生하였을때 傳音性 聽力喪失은 전도되는 전기에 손실이 있을때 外耳道나 中耳를 通한 音의 通過障碍와 등골(Staps)運動의 低下로 자주 전달에 저해를 받을때 發生하고 知覺神經性 聽力障碍疾病으로 인한 病原體의 感染과 姙娠의 풍진, 이하선염痲診 같은 Virus에 依한 感染 또는 뇌막염과 같은 細菌에 依한 感染도 知覺神經性 聽力損失을 일으키고 姙娠中에 귀에 해로운 藥物을 服用하면 Corti氏 기관에 손상을 가져 오는 것이다.

따라서 聽力障碍의 定義는 言語의 높고 낮은 소리 또는 소리가 일정하더라도 個人別 聽力이나 言語의 判別能力이 사람마다 差異가 있기 때문에 널리 活用되고 있는 定義는 없다.

그러나 最近 利用되고 있는 障碍測定方法은 聽力損失을 測定하는 身體評定 尺度가 있다.

이 身體評定尺度는 一定한 檢査場所에서 소리나 言語를 識別할 수 있는지 質問하고 그 結果를 分析하여 作成한 것으로 現在 面接調査에 의한 聽力損失을 測定하는데 利用되고 있다.

그리고 귀머거리(Deatess)의 測定은 一定한 場所에서 補聽器를 使用하지 않고 다른 사람과 소리나 言語로 意思疎通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으로 定義할 수 있다.

3) 言語障碍

言語의 正常的인 發達은 입술, 혀, 턱, 口蓋, 후두 그리고 呼吸筋의 運動調整 및 中樞神經組織에 障害가 없어야 한다. 中樞神經組織에 障害가 있으면 言語發達에 必要한 筋肉의 調整은 可能하나 高度의 機能損傷으로 言語가 遲延되거나 缺陷을 가져온다. 그리고 言語에 必要한 筋肉의 痳痺나 쇠약은 言語缺損을 가져오게 된다. 聽覺障碍가 있는 者는 音聲을 들을수 없거나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精神薄弱兒의 경우 들은 것을 記憶하는 期間이 짧기 때문에 말하는 모든 단어를 다알아 들을수 없게 된다.

以上은 疾病 또는 先天的 奇型에서 起因된 障碍가 生理的인 要因에 依한 言語障碍인 것이다. 또한 言語遲延은 말할 必要가 없을 경우 몸짓으로 그의 모든 欲求가 充足되고 滿足感을 얻을 수 있을 경우에 言語障碍가 일어나고 言語發達期間中 注意力이 不足하거나 恐怖感을 갖는 어린이는 甚한 情緖的 혼란으로 인하여 心理的 損傷을 받게 되어 言

語發達에 影響을 받는다.

위의 例와같은 境遇는 社會心理的 要因에 依한 言語障碍가 된다. 흔히 言語障碍는 發音障碍에 起因되며 發音障碍에는 子音을 省略하거나 틀린 子音을 쓰기 때문이다. 그와같은 現象은 그의 말을 理解할 수 없게 된다. 發音障碍는 크게 機能은 크게 機能的인 것과 器質的인 것으로 分類된다. 器質的發音障碍는 構音障碍 말더듬病과 先行症을 包含한 것을 말하고 構音障碍는 發音, 發聲, 呼吸에 關係된 筋肉과 器官을 움직이고 調節하고 調和시키기가 어려울때 나타나며 이것은 中樞神經等의 損傷이 原因이 될 수 있다.

이러한 患者는 對話를 느리게 하면서 조심하면 좀 덜나타날수 있다. 正常速度로 對話를 하면 自身의 말을 他人에게 理解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先行症은 正常的인 聽力을 갖고 있으면서도 正確하게 뚜렷한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며 所謂 神經系에 損傷이 있을때 나타난다.

機能的인 發音의 障碍는 音聲學的으로 소리를 잘못 내는 것인데 言語에 關係되는 器管의 狀態보다는 機能的인 狀況에 起因되고 普通 바른말의 形態를 배우지 못한 境遇에 나타난다. 正確한 말을 배우지 못한 것은 初期의 言語發達 過程에 잘못된 형태의 말을 하거나 남의 잘못된 發音을 模倣했거나 聽力損傷 때문에 올수 있다.

4) 精神薄弱

精神薄弱이란 用語는 日本에서 使用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兒童福祉法에도 이 용어를 이미 使用하고 있으므로 本 硏究에서도 精神薄弱이란 用語를 使用하였다. 精神薄弱의 定義는 역시 사람에 따라 多

小 差異가 있으나 大體로 그 內容이나 傾向은 비슷함으로 몇개 나라의 定義를 列擧하고 共通性을 찾아서 定義해 보았다.

① 美國精神薄弱協會는 精神薄弱이란 發達期에 惹起되고 適應行動에 缺陷을 갖는 一般的, 知的機能이 平均以下인 것을 定義하였고,

② 英國의 精神薄弱法은 18세 以前에 遺傳的 原因이나 疾病으로 因하여 일어나는 精神發達의 저지나 不完全한 發達狀態를 定義하였다.

③ 日本文部省의 定義는 여러가지 原因으로 精神發育이 恒久的으로 遲滯하고 이에 따라 知的能力이 劣等하고 自身의 일을 處理하는 것과 社會生活의 適應이 현저하게 곤란한 者라고 하였다.

④ 그리고 世界保健機構(WHO)의 定義는 精神薄弱이란 一般的 知的能力이 不充分하다든가 不完全한 것을 意味한다고 하였다.

以上과 같은 여러나라의 定義를 比較하여 實證的 考察을 해보면 역시 精神薄弱이란 18歲 以前에 여러가지 原因 즉 유전 또는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하여 恒久的으로 知的能力의 發達이 不充分 또는 不完全하고 社會生活의 適應行動에 缺陷을 갖고 있는 狀態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精神薄弱의 分類도 專門領域에 따라 여러가지로 分類되고 있다. 近來에 와서는 醫學, 心理學, 教育學 等이 自己들의 目的에 適合하게 分類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醫學에서는 아직도 精神薄弱의 原因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한 中心을 두고 새로운 原因을 糾明하고져 노력하고 있다.

心理學이나 社會學에서는 輕度 中度 重度 最重度로 分類하고 教育學에서는 兒童의 教育을 目的으로 教育可能級, 訓練可能級, 保護對象級으로

나누어서 使用하고 있다. 그러므로 精神薄弱의 分類는 그 目的이 어디에 있는가를 決定하여야만 可能하게 되어 있다.

第 2 節 再活의 理論

再活의 意味는 障碍者로 하여금 자기실현의 機會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그들의 身體的 및 社會的 障碍를 除去하거나 줄여주는데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醫學的, 教育的, 社會的 等 諸般서비스가 動員되어야 한다. 이는 勿論 生活保障을 위한 雇傭促進과 衣食住 等의 問題를 解決할 수 있는 여건을 가추는 것이 先行되어야 할 것이다.

§ 1. 醫療的 再活

醫療的 서어비스와 直接關聯되는 것은 再活醫學이다. 원래 이 用語는 美國의 뉴욕醫科 大學 再活 醫學科 H.A.Rusk 教授가 治療醫學과 豫防醫學 다음으로 第3의醫學이라고 發表하여 第2次 世界大戰以後에 많이 使用되어온 用語이다. 特히 障碍를 위한 物理治療와 作業治療는 再活醫學의 大部分을 찾이 하고 있다.

物理治療란 運動療法, 加熱療法, 電氣療法, 水治療法 等으로 身體的 機能을 開發하여 주거나 또 다른 변형을 豫防하는 治療活動이다.

作業治療란 作業을 治療의 媒介로 利用하여 障碍者에 대한 心理的支援은 勿論 身體的 또는 職業的 能力을 向上시키는 醫學的 活動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作業治療士를 養成하는 機關이 없기 때문에 物理治療士가 代行하고 있다.

再活을 効果的으로 成就하려면 看護員이나 補助器 및 義手足 製作技士, 心理學者, 物理 및 作業治療士, 社會事業家 및 醫療社會事業家, 宗教人等으로 조직된 팀웍도 再活醫學 서어비스를 위해 必要할 것이다. 〈註 13〉

再活醫學은 患者나 障碍者의 全人的 役割의 遂行을 주된 目標로 하기 때문에 一般醫學은 勿論 精神醫學的 心理的, 社會的 또는 職業的서어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再活醫學科를 두고 있는 곳은 延世大學校와 高麗大學校, 漢陽大學校 부속病院과 聖母病院, 釜山메듸슨病院 等이다.

最近 各大學看護學科教科課程에 再活科目을 두고 있고 實習도 시키고 있다는 것은 障碍者들의 앞날을 위하여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補助器와 義手足製作技士, 作業治療, 物理治療士, 言語교정사, 聽力檢査要員등 再活要員을 訓練시키는 專門教育機關이 不足하다.

특히 精神障碍者와 產業災害로 인한 障碍者의 再活을 위한 專門要員의 양성이 요청되고 있다. 물론 各種 障碍類型에 따라 醫療 再活의 方法도 多樣할 수 있었으나 점차 그수가 늘어나는 精神障碍者를 위해서는 有資格 專門要員이 많이 배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醫師와 心理學者 社會事業家 등이 Team Work 이 되어 임상적 診斷과 治療 또는 요양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뇌성마비환자를 위해서는 物理治療가 병행되어야 하고 복합적인 질병으로 고생하는 精神薄弱兒는 특수치료가 要請된다. 眼盲者를 위해서는

〈註 13〉 : 社保審硏究論文 1979. p.51.

안구적출등 視力回復을 위한 治療手術 및 人工眼球 供給等의 조치가 요청되며 小兒痲痺를 위해서는 手術이나 부레이스 等 補裝具가 무료 또는 저렴한 價格으로 補給되어야 할 것이다.

聾啞者를 위해서는 身體的 정밀검사를 통하여 聾啞者가된 原因을 除去하고 言語矯正 等 適切한 治療를 함으로써 오랫동안 障碍로 인한 苦痛을 겪지 않고 正常的인 社會生活을 할수 있게 努力할 것이며 聽力回復이 不可能한 者에 대하여는 그 失聽을 補充할수 있는 教育이 要請되고 聽力이 完全히 상실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補聽器의 供給이 必要하다.

§ 2. 教育的 再活

障碍者에 대한 教育的 再活을 論할때, 제일 먼저 대두되는 것은 特殊教育이라 하겠다. 心身의 障碍가 반드시 教育的 障碍를 수반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障碍의 정도와 상태에 따라 教育的 再活이 必要할 때가 있다.

즉, 障碍者가 가진 能力을 向上시키고 또는 잠재 能力의 可能性을 開發하여 障碍者 自身의 能力과 적성을 最大限으로 발휘할 수 있도록 育成하는 것이 再活教育의 目的인 것이다. 特殊教育은 心身의 障碍 때문에 獨特한 教育的 要求를 가진 者에게 그 要求를 충족시켜 주는 教育的 환경을 정비하여 可能性을 최대한으로 신장시키고 적응력을 몸에 익히고 창조성을 最大限으로 신장시키고 적응력을 몸에 익히고 創造性이 豊富한 人間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教育的 再活의 참뜻이라고볼 수 있다.

特殊教育의 例를 들면 앞을 못보는 장님에게 손으로 만져서 배울수 있는 點字나 귀로 들을수 있는 錄音施設이 必要하고 듣지 못하는 聾者에게는 手話教育이 必要한 것이다.〈註 14〉

즉 步行이나 感覺機管에 障碍가 있던가 知的, 情緖的 機能에 障碍가 있을때 正常兒童이 받을 教育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

이때에 特殊教育이 要請된다. 特殊教育이란 教育的 目的은 正常兒童과 同一하지만 그들의 特殊 狀態에 따르는 教育的 方法이 다른 것이다. 特殊教育이라하여 반드시 特定教育機關에 分離收容하여야 할 必要도 없다. 先進國에서는 障碍者를 特殊學校에 따로 보내지 않고 一般學校에 特殊班을 설치하여 教育課程中 때때로 一般兒童과 接觸을 할수 있는 機會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또한 一般學校이외 特殊學級을 利用할 수 없는 者를 위하여는 特殊學校를 利用하지만 특수학교도 기숙사를 두는 것 보다는 통학을 하도록하는 것이 더욱 인기가 있다고 한다. 그 理由는 成長期의 兒童에게 人格形成과 관계되기 때문에 家庭生活을 하게 하려는 때문이라고 한다.〈註 14〉

§ 3. 意識的 再活

意識的 再活은 障碍者 自身과 그 家庭 및 주위 사람들의 意識的인 問題를 再活의 과정중에 여러가지 心理的 要因에 대한 接近으

〈註 14〉: 우재현외 공저 장애자직업재활. 형설사. 1984.P.33.
〈註 15〉: 社保審硏究論文,1979,p.58.

로서 그들에 대한 心理的 向上과 協調를 도모하는 것이다.

그리고 再活의 과정중에 가지는 欲求, 情緖, 關心, 價値感 等은 빼놓을수 없는 영역이며 各 領域의 再活 과정에 중요한 共通的 分野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心理的 再活은 障碍者를 대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 아니고 障碍者와 함께 행하여지는 것이므로 障碍者 自身이 再活에의 意義와 欲求를 지니고 協助하지 않으면 再活의 成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

大部分의 障碍者들은 行動制限의 自覺이나 身體美관의 損傷, 人間關係의 緊張, 不安感, 劣等感, 欲求不滿, 內向性 自身의 狀態에 대하여 비관하고 결국 再活意欲을 잃게 되는데 이와같은 阻害要因을 제거하고 障碍者로 하여금 새로운 可能性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心理的 再活의 내용으로는 個別相談, 心理治療, 自己收容 等 動機를 유발시키는 여러가지 方法들이 포함되며 무엇보다도 임상심리 전문가 特殊教師 社會事業家들의 參與가 要請되고 있다. 〈註 16〉

§ 4. 社會的 再活

社會的 再活은 狹意로 障碍者가 社會生活이나 家庭生活에 적응하도록 하는 원조를 말한다고 볼 수 있다. 障碍者가 醫學的 또는 職業的으로 問題가 해결되어도 家庭이나 社會에 適應해 가려면 阻害하고 있는 物理的, 經濟的, 社會的, 心理的 諸問題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註 16〉 : 障碍者의 職業再活, 安秉輯外 共著, 1984, 螢雪社. p.34.

고 보아야 할 것이다.

障碍者가 스스로 자기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주위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서 所得保障, 住宅空間의 障害物 除去와 같은 物理的 환경의 整備, 社會意識이나 偏見의 克服을 위한 社會文化的 환경정비, 재원배분망의 확충, 法令整備, 社會治療, 生活教育 캠페잉, 레크레이션활동등을 社會事業家, 再活擔當指導員, 各 再活團體의 전문지도원에 依하여 個別的 또는 集團的 相談을 통하여 統合을 이루는 過程이다.〈註 17〉

第 3 節 再活事業의 展望

§ 1. 展望의 概要

전통적인 農業社會에서 都市產業社會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急速한 交通手段의 發達은 各種 產業災害와 交通事故 等으로 因하여 心身障碍者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은 世界的인 추세이기도 하다.

따라서 醫術의 發達은 各種 疾病을 豫防하고 治療하여 障碍發生을 줄이는 것같으나 한편으로는 先天的으로 心身의 缺陷을 지닌 新生兒의 出產을 可能케 하고 있으며 老人人口의 增大를 가져오고 있어 人口의 自然增加와 더불어 障碍者의 發生數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障碍者問題는 이제 어떤 個人이나 團體의 問題가 아니라 汎國家的인 社會問題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障碍者人口가 우리 社會에 미치는 社會 經濟的 影響은 至大하다고 볼수 있다. 人道的인 次元에서 이들의 生存은 保障되어야 함

〈註 17〉 : Ibid. p.35.

으로 이들에 대한 社會的 負擔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나라에서 이러한 社會的 負擔은 줄이는 方法으로 再活事業이 活潑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再活事業은 障碍者의 遊休勞動力에 대한 社會的 活用이라는 經濟的 價値와 障碍者家庭의 安定을 가져와 社會的 不安要因을 除去한다는 社會的 意義가 있어 보다 積極的으로 이루어져야 할 분야로 모든 나라에서 인정되고 있다. 〈註 18〉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世界的 추세에 따라 心身障碍者福祉法을 制定하여 心身障碍者들이 醫療再活과 障碍豫防 및 早期發見 等 그리고 障碍者保護를 위한 社會福祉施設 等을 現代化하고 障碍者雇傭對策等을 保障하기 위한 心身障碍者 雇傭促進法 等을 制定審議中에 있다. 그러므로 1980年代 後半期에 가서는 우리나라에서도 心身障碍者들의 再活事業과 雇傭促進事業등이 活潑하게 進行될 것이 展望되고 있다.

따라서 政府 各部處內에는 心身障碍者 福祉業務를 전담할 部署가 설치되어 障碍者福祉業務를 調整통제 할 것이 예상된다.

§2. 心身障碍者雇傭促進을 爲한 立法趣旨

1. 法制定의 意義와 必要性

사람이 일하려고 하는 것은 살려고 하는 人間의 證明이다. 사람은 일을 함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社會와 連帶하며 自己實現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心身에 障碍가 있을지라도 能力에 따른 일에

〈註 18〉: 心身障碍者의 福祉세미나資料 p.115, 1980, 사협.

대하여 社會的 役割을 분담하고 그 보수에 의하여 生計를 유지하고 일상사회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은 人間으로서 당연하다.

따라서 産業中心의 社會는 産業災害를 위시한 각종 災害를 發生시켜 많은 後天的 障碍者를 만들어 냈음에도 불구하고 産業發達의 저해인자로서 障碍者를 産業社會로 부터 排除해 왔다. 이 때문에 1975年12月에 유엔總會에서는 「障碍者의 權利宣言」이 채택되고 障碍者의 人權이나 生存權 勤勞權에 대한 社會의 인식이 高揚되기까지 障碍者는 오랫동안 社會에서 排除되고 或은 慈善이나 救貧의 대상으로 되어왔다. 또 職業的 自立이나 雇傭에 대한 施策은 主로 障碍者의 個人的 努力을 기초로 하여 健康者 本位의 社會에의 適合이라는 관점에서 취급되어 왔다.

이 오랜 歷史的 경과의 와중에서 障碍者의 就業에 대한 인식은 誤解나 偏見, 差別에 의하여 歪曲시키고 職業的 能力을 갖춘 障碍者에대하여도 올바른 이해에 기하여 公平한 就業機會가 주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事業體의 社會的 責任에 입각하여 障碍者의 雇傭義務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는 틀을 구축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많은 障碍者는 適職開發이나 就業條件 整備의 체제가 형성되어 있지 못하여 職業選擇의 自由등 勤勞權에 대폭적인 제약을 받고 있으며, 社會保障의 밑받침이 없는 低賃金으로 고통받고 있다. 그들의 職業再活의 施設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技術職에의 進出機會는 주어지지 않은 채, 그나마도 就業을 한 障碍者는 주로 單純勞動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重症障碍者에 대해서는 政策不在의 실정

에 있다. 重症障碍者도 일할 權利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다만 그 勞力함에 의해서 생기는 價値가 個人에 따라 差異가 있을 뿐이다. 사람이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을 經濟的 價値尺度만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고 일하는 것에 의해 생기는 個人的, 家庭的, 그리고 社會的 價値야 말로 重視해야 할 것이다.

經濟的 有用性이 모자란다는 것 만으로 일할 機會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은 經濟的 有用性이 높기 때문에 勞動을 强制하는 것과 똑같이 일종의 죄악이라고 할 수 있다.

障碍者가 社會人으로서 무엇인가 역할을 갖고 社會에 전면적으로 參加하고 獨立된 生活을 영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就業問題를 폭넓게 다루고 雇傭이니 自營業에서 社會的 活動에 이르기까지의 綜合的 對策을 도모하는 것이 必要하다.

모든 障碍者에 대하여 個人的 尊嚴을 유지하는데 충분할 만큼의 所得과 住居를 보장한 위에 生活勤勞環境의 障碍를 제거하는 등의 條件整備를 행해야 한다.

各各의 障碍者 固有의 能力에 맞는 就業機會를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人權을 尊重하고 生存權과 勤勞權의 保障을 둘러싼 現代社會의 崇高한 使命이며 理念이다.

이러한 基本的 理念에 입각하여 社會保障部門이 약한 現實에서 心身障碍者 雇傭促進法을 制定하여 우리나라가 나아가는 福祉社會, 福祉國家指向의 意志를 밝히고 國民經濟的 効率을 提高하는데 (나아가서 '88年 障碍者올림픽(paralympic)을 통하여 先進祖國의 면모를 國際社會에 알

리는데) 本 法이 갖는 時代的 意義와 必要性이 있다고 할 수 있다.

2. 法案의 主要骨子

o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와 事業主의 障碍者雇傭의 責務

o 保社部長官은 障碍者의 職業再活에 必要한 專門人力의 養成을 위해 專門大學 또는 大學에 委託教育을 할 수 있다.

o 保社部 長官의 主管下에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산하에 障碍分類審査 委員會를 두고 障碍判定을 행한다.

o 保社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는 求職障碍者에 대하여 職場適應訓練을 실시한다.

o 障碍者의 職業再活相談員制度 : 직업재활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직업안정소, 사업소에 직업재활 상담원을 배치하여 직업소개, 생활상담 지도등의 職業輔導를 행한다.

o 適職의 研究開發 : 노동부 장관은 장애자에 必要한 적직을 연구, 개발하여야 한다.

o 保護雇傭施設

• 장애자 수산시설, 중증장애자 복지공장, 重症障碍者 作業活動센터, 居宅雇傭프로그램등의 保護雇傭施設의 設置運營.

• 保護雇傭施設을 運營하는 機關에 대해서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稅額減免의 惠澤을 준다.

o 義務雇傭率 :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을 雇傭하고 있는 事業場에 대하여 전체근로자의 100분의 3에서 100분의 8의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이 정하

는 雇傭率을 義務的으로 雇傭하여야 한다.

• 특종직종에 대하여 제외율을 적용할 수 있다.

o 留保雇傭

• 障碍者의 雇傭促進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직종을 지정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의 피용자를 장애자로 충당하도록 留保할 수 있다.

o 採用試驗의 特典

• 國家地方自治團體, 國公營企業體 및 상시 20인이상의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체와 민법상의 법인은 장애자가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각 과목별 시험득점에 시험만점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o 雇傭納付金 制度

• 國家 및 公營業體를 제외한 일반사업주의 공동거출에 의한 障碍者雇傭納付金 徵收의 義務化.

• 納付金制度의 운영은 勤勞福祉會社가 이를 행한다.

• 納付金은 調整金, 助成金, 奬勵金, 自營業貸付金 등으로 活用한다.

o 障碍者雇傭調整金 制度

• 納付金을 財源으로 하여 義務雇傭率을 초과하여 障碍者를 고용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障碍者雇傭 調整金을 지급하여 經濟的 負擔을 경감케 한다.

o 奬勵金 制度

•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障碍者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주에 奬勵金을 支給한다.

ㅇ 助成金 制度

• 장애자를 새로 고용하는데 대한 시설, 설비에 要하는 일시적 費用負擔을 경감케 하기 위하여 支給하는 제도이다.

ㅇ 自營業 資金貸付制度

• 勤勞福祉會社는 納付金을 財源으로 하여 障碍者의 自營業經營에 必要한 附屬施設 및 運營資金을 貸付할 수 있다.

ㅇ 障碍者의 事業內 援護制度

• 公正人事와 差別撤廢

• 代表選出과 會議參加

• 勞使協議會 協議事項

• 事業內 雇傭促進協議會

ㅇ 障碍者 雇傭促進 協會

• 障碍者 雇傭促進을 위한 事業主들에 의한 法人의 設立

• 公課의 免除

• 勞動部 長官의 監督

• 任員 : 會長 1人, 副會長 2人, 理事 7人以上(正·副會長包含), 監査 2人以內

• 業務 : 障碍者 職業訓練院 運營, 雇傭環境整備, 雇傭技術事項指導, 雇傭管理硏修, 障碍者技能競演大會, 障碍者雇傭에 관한 調査硏究 및 弘報.

○ 本法 違反에 대한 罰則規定을 둠. 〈註 19〉

§ 3. 各國의 雇傭促進制度

1. 義務雇傭(割當雇傭)制定

1) 英 國

官公署를 除外하고 常時 20人이상 고용하고 있는 자는 登錄身體障碍者를 全從業員의 3%이상 雇傭 但, 現在 般員 船舶乘務員에 대해서만 예외로서 0.1%의 雇用率이 適用됨.

2) 프랑스

官公署, 民間을 불문하고 모든 事業所는 登錄身體障碍者를 一定比率이상 優先雇傭, 현재 일률 3% 退役傷痍軍人의 强制雇傭法(1924)은 10%이상 雇傭(이 경우 3%의 雇傭義務는 吸收된다)

3) 이탈리아

(1) 50人이상의 從業員을 雇傭하는 民間雇傭主는 일률적으로 50人에 대하여 1人씩(2%)의 產災障碍者를 雇傭하지 않으면 안된다. 但, 海空航行 企業에 대해서는 塔乘員 및 船員에 한해 이 의무를 免除한다.

(2) 50人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雇用主는 缺員이 생긴때에는 當該事業所에 있어서 健康勤勞者 50인에 1인의 비율(2%)로 身體障碍者가 雇傭되기 까지는 健康勤勞者 10인에 1인의 비율(6개월마다 調査)로 一般身體障碍者를 雇傭하지 않으면 안된다.

〈註 19〉: 大邱大學校, 禹在賢教授, 1984.9.27. 懇談會 資料.

但, 船舶 및 航空産業除外.

(3) 傷痍軍人 6%, 非軍人戰傷者 2.5%, 計 8.5%(이중 1%는 戰爭未亡人, 戰爭遺兒 等으로 充當)를 雇傭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 盲人에 대해서는 電話交換台, 操作員으로서 일정직장에 1人의 盲人을 優先雇傭, 聾啞者에 대해서는 公共機關의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직장에 1~3% 義務雇傭할 것이 규정되어 있다.

4) 벨기에

(1) 20인 이상의 從業員을 고용하고 있는 雇用主(民間企業, 官公署 및 公的認可團體)는 일정율이상의 登錄障碍者를 雇傭해야 한다. 이 경우 民間企業은 業種分野마다 정해지며 또 이것을 정할 때에는 企業의 性質과 規模 및 障碍者의 損傷程度를 考慮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네델란드

雇傭勤勞者의 數가 20인 이상 50인 이하의 企業은 1人의 登錄障碍者를 雇傭할 必要가 있다. 나아가 雇傭勤勞者가 50인 증대할때마다 1人의 登錄障碍者를 雇傭하여야 한다. 特定産業에 대해서는 雇傭率을 낮추거나 20인 이하의 雇傭主에게도 適用하는 규정이 있다.

6) 오스트리아

聯邦內에서 2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民間 및 官公署의 雇傭主는 企業全體로서 25인마다 身體障碍者 1人을 雇傭 해야 한다.

聯邦社會行政長官은 諮問委員會의 의견을 들은 후 法令에 의하여 民間의 雇傭率을 特定한 地域, 業體에 대해서 5%로 引上, 또는 2%로

引下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勞動條件의 엄격한 업종 즉 철강, 광산, 기계공업등 40 업종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율이 적용된다.)

雇傭義務의 計算上 盲人, 55세이상인 障碍者 및 車椅子를 사용하는 障碍者에 대해서는 그 1인을 障碍者 2人으로 看做한다.

7) 日 本

일반민간기업	1.5%	特殊法人	1.8%
非現業機關	1.9%	現業機關	1.8%

2. 義務雇傭率에 의한 可用人力推定

1) 100인 이상을 雇傭하고 있는 事業體의 障碍者 可用人力

(1) 1983년 현재 100명 이상의 事業體 5,889개

이중 製造業體가 3,712개(63%)

運輸, 倉庫, 通信業이	840	(14.3 %)
建設業이	337	(5.7 %)
社會 및 個人서어비스業	441	(7.5 %)
金融保險, 不動產 및 用役	269	(4.6 %)
都小賣 및 飮食宿泊業	183	(3.1 %)
電氣, 가스 및 水道事業	64	(1.1 %)
鑛 業	126	(2.1 %)
農業, 狩獵業, 林業 및 漁業	17	(0.3 %)

〈勞動部, 產業別, 規模別 事業體數〉

(2) 勤勞者數 推定

100 ~ 199 인	150 인	× 3,153 개	= 472,950 명
200 ~ 299 〃	250	× 1,143	= 285,750
300 ~ 499 〃	400	× 757	= 302,800
500 ~ 999 〃	750	× 506	= 379,500
1000 인이상	1,500	× 330	= 495,000
		계	193 만 5,000 명

(3) 障碍者 可用人力

雇傭率 3 %適用時 1,936,000 × 0.03 = 58,080 명

〃 8 % 〃 1,936,000 × 0.08 = 154,880 명

2) 50 人 以上의 事業體 障碍者 可用人力

50 ~ 99 안 75 명 × 6,732 개 = 504,900 명

1,936,000 명 + 504,900 명 = 2,440,900 명

雇傭率 3 %適用時 2,440,900 × 0.03 = 73,227 명

〃 8 % 〃 2,440,900 × 0.08 = 195,272 명

3) 30 人以上 事業體의 障碍者 可用人力

30 ~ 49 인 40 인 × 8,209 개 = 328,360 명

2,440,900 + 328,360 = 2,769,260 명

雇傭率 3 %適用時 2,769,260 × 0.03 = 83,077 명

〃 8 % 〃 2,769,260 × 0.08 = 221,540 명

4) 一般競爭勞動市場 就業可能者數 推定 (再活協會)

總障碍者數 90 만 1,800 명 (保健開發院 統計)

이중 20 ~ 39 才 27 만 8,856 명 (30.9 % 保健開發院統計)

20 ~ 39 歲중 未就業障碍者 17 만 4,160 명 (62.5 % 〃)

未就業者中 重症障碍者 1 % (1,741 명) 除外 : 17 만 2,419 명

職業意欲 (意識) 不足者 20 % (34,484 명) 除外 : 13 만 7,935 명

(職業意識不足者 20 %의 根據는 再活協會가 總 34 만 4,830 명의 障碍者 相談分析 結果의 統計値를 適用한 것임)

※ 現在水準으로는 20 ~ 49 才 程度이어야 一般勞動市場就業이 가능하므로 13 만 7,935 명 정도로 推定하고 있음.

5) 雇傭率 設定의 背景

(1) 上限雇傭率 8 %의 設定背景 (1983 년 12 월 현재기준)

$$\text{基本算式} = \frac{\text{總障碍者數}}{\text{總就業者數} - \text{除外率相當勤勞者數} + \text{失業者數}}$$

$$= \frac{90.18\text{ 만}}{1{,}319.6\text{ 만} - 197.94\text{ 만} + 59.1\text{ 만}} \fallingdotseq 7.6\,\%$$

※ 除外率 相當勤勞者數는 總就業者의 15 % 적용

◎ 總就業者의 總障碍者에 대한 責任率

(2) 下限雇傭率 3 %의 設定背景

$$\frac{\text{常用雇傭障碍者數} + \text{失業障碍者數}}{\text{常用雇傭勤勞者數} - \text{除外率相當勤勞者數} + \text{失業者數}}$$

常用勤勞者數 (1982 년 財務部 推計)	840 만
除外率相當勤勞者數 (15 % 적용)	105.84 만
失業者數 (1982 년 經濟企劃院統計)	65.6 만

20 ~ 39 才　　27 만 8,856 명 중

32.1 %가　常用雇傭障碍者數　8 만 9,512 명

失業障碍者數　　17 만 4,160 명

$$\therefore \frac{89,512 + 174,160}{840\text{만} - 105.84\text{만} + 65.6\text{만}} = 0.03.4 = 3.4\,\%$$

3. 除外率制度

모든 事業主가 平等한 비율로 障碍者를 雇傭한다는 社會連帶의 理念을 貫徹한다고 하면 개개의 事業主가 雇傭해야 할 障碍者의 數는 그 事業主가 雇傭하는 모든 勤勞者의 數에 雇傭率을 곱하여 算定해야 한다. 그런데 職務中에는 障碍者가 就業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률적으로 雇傭率을 적용하는 것이 不適當한 것이 있으므로 除外率制度를 適用하게 한다 함으로 일본의 除外率設定業種 및 除外率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除外率　10 %－타이어, 튜브製造業, 窯業, 土石製品製造業, 金屬製品製造業, 一般機械器具　製造業, 가스業, 其他修理業.

(2) 除外率　15 %－有機化學工業製品製造業, 石油製品, 石炭製品製造業, 輸送用機械器具製造業 (船舶製造, 修理業, 船用機關製造業을 除外)

(3) 除外率　20 %－其他運輸에 附帶하는 서어비스業, 電氣業

(4) 除外率　25 %－非鐵金屬製造業 (非鐵金屬 第 1 次製鍊精製業을 除外) 船舶製造修理業, 船舶機關製造業, 航空運輸業, 倉庫業.

(5) 除外率 30 %－非金屬鑛業，水運業

(6) 除外率 35 %－非鐵金屬 第 1 次製錬，精製業，貨物運送取扱業

(7) 除外率 40 %－建設業，鐵鋼業，道路貨物運送業

(8) 除外率 45 %－港灣運送業

(9) 除外率 50 %－鐵道業，醫療業，高等教育機關

(10) 除外率 55 %－林業

(11) 除外率 60 %－金屬鑛業，兒童福祉事業

(12) 除外率 65 %－特殊教育諸學校（盲學校를 除外）

(13) 除外率 70 %－石炭，亞炭鑛業

(14) 除外率 75 %－道路旅客 運送業，國民學校

(15) 除外率 80 %－幼稚園

(16) 除外率 100 %－船員등에 의한 船舶運航 等의 事業

4．特定重症障碍者 雇傭率

障碍의 程度가 甚한 경우에는 勞動能力은 있어도 일반 職業에 취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떤 特定한 職種에 대해서는 그 같은 障碍者의 能力에 適合한 경우도 있다. 거기에서 이같은 特定한 職種과 特定한 障碍者와의 밀접한 관계를 고려하여 特別한 雇傭率을 설정하여 그같은 重症障碍者의 雇傭을 確保하도록 한 것이다.

日本의 경우에는 視覺障碍者인 경우 兩眼의 視力의 合이 0.08 이하인 視覺障碍者를 特定重症障碍者로 하고 안마, 맛사지, 指壓師에 대하여 100분의 70의 比率로 特定重症障碍者雇傭率이 定해져 있다.

(日本 身體障碍者雇傭促進法 施行令 第31條) 여기에서 말하는「안마, 맛사지, 指壓師」라 함은 안마, 맛사지 指壓師, 鍼師, 灸師, 柔道接骨師등에 관한 法律에 規定하는 안마, 맛사지 指壓師이다. 따라서 一般事業主는 特定職種의 勤勞者의 雇傭에 대해서는 特定 重症障碍者雇傭率(70%)을 達成하도록 努力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여 이른바 努力義務가 賦課되어 있다.

또 特定職種의 勤勞者가 5인이상 在職하고 있는 事業主에 있어서는 每年 6月1日現在의 特定重症障碍者의 雇傭狀況을 管轄公共職業安定所의 長에게 報告할 必要가 있으며 特定重症障碍者의 雇傭에 관한 計劃의 作成을 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5. 留保雇傭制度

1) 英國의 留保雇傭

雇傭, 生產長官은 勞動團體의 意見을 들어 身體障碍者의 雇傭으로서 특히 適當한 機會를 提供한다고 생각되는 職種을 指定할 수가 있다. 이 指定職種의 雇傭에 대해서는 누구도 登錄身體障碍者 이외의 者를 雇傭해서는 안된다. 1946年9月에는 乘客用 엘리베이타出發信號係 或은 操作係와 野外駐車場의 整理係의 두 직종이 지정되었다.

2) 프랑스의 留保雇傭

特殊身障勤勞者의 範疇에 속하는 자에 대하여 特定한 職種 또는 職種群의 중에 풀타임(full time) 或은 파트타임(part time)의 雇傭이 留保되어야 한다.

勞動課는 통상의 生產性인 職業 또는 풀타임의 職業에 취로할 수 없

는 身障勤務者에 대하여 輕作業인 일 또는 파트타임의 일의 리스트를 保存하며 그 일을 割當한다. 이 일은 義務雇傭(割當雇傭)에 대해서도 고려된다.

3) 오스트리아의 留保雇傭

聯邦社會行政長官은 諮問委員會의 意見을 들은 후 作業의 單純性이나 安全性에서 보아 특히 身障者에게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職場을 身障者를 위해 留保하도록 使用者에게 指示할 수가 있다.

6. 雇傭納付金制度의 國際比較

1) 오스트리아의 調整稅制度

(1) 雇傭主는 雇傭義務(4%)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雇傭義務에 代替하여 調整稅(Ausgleichstaxe)를 納付하지 않으면 안된다. 調整稅의 納付는 州의 身障局에 의하여 命令되며, 그 額은 未充足의 雇傭義務포스트 1人에 대해 月 350쉴링이다.

(2) 調整稅의 納付는 明細書를 複寫하여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2년이내에만 명할 수가 있다.

(3) 調整稅는 州身障局에 의해 1950년의 行政執行法의 규정에 입각하여 징수된다.

(4) 調整稅의 收入에 의해 法人格이 부여된 調整稅 基金이 설립된다. 納付金의 徵收額은 1974年 4000만쉴링(實績), 1976年 6000만쉴링(豫定)으로 되어 있다.

(5) 納付金은 다음 5항에 대한 援助에 사용된다.

① 身障者의 醫學的 治療, 訓練

② 職業訓練施設

③ 休養施設

④ 工場의 保護施設

⑤ 身障者用의 機械設備

2) 西獨의 調整金制度

(1) 雇傭主는 企業全體에서 그 雇傭義務(6%)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未充足한 雇傭義務포스트 1人마다 매월 100DM의 調整金을 支拂해야 한다. 調整金의 支拂로서도 重症障碍者 雇傭의 義務는 소멸하지 않는다. 雇傭主는 매년 事業所의 매포스트數, 雇傭해야할 重症障碍者數, 支拂해야 할 調整金의 總額을 管轄勞動局에 屆出하고 동시에 管轄中央援護事務所에 報告, 納付해야 한다.

調整金을 2개월이상 納付하지 않을 때에는 中央援護事務所는 滯納額을 확인하고 徵收한다. 民間雇傭主에 대해서는 行政强制節次現實에 의해 强制執行을 행한다.

公共의 雇傭主인 경우 中央援護事務所는 監督官廳에 의뢰하여 그 決定에 대해서는 中央援護事務所는 聯邦 或은 州의 最上級官廳의 결정을 구할 수가 있다. 이 調整金은 雇傭主에게 重症障碍者의 雇傭義務의 履行을 奬勵함과 더불어 雇傭義務를 履行한 雇傭主와 履行하지 않은 雇傭主와의 經濟的 負擔의 均衡을 圖謀하려고 하는 것이다.

(2) 從業員이 30人 이하인 雇傭主에 대해서는 聯邦政府는 聯邦參議院의 同意를 얻어 法規命令에 의해 調整金을 일정기간 전면적으로 또는 개개의 州勞動管區에 대하여 減額하며 또는 免除할 수가 있다.

但, 이것은 빈채로 있는 雇傭義務포스트의 數가 就職해야 할 重症障碍者의 數를 현저히 上廻하거나 雇傭義務포스트를 이들 雇傭主에게 割當할 必要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1974년의 改正前의 法律에서는 州勞動局은 雇傭主로서 苛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히 雇傭主가 努力함에도 불구하고 雇傭義務를 履行하지 못하고 한편 州勞動局이 소개할 수가 없는 경우에는 이 調整金을 減額하며, 연간 1億8千萬 마르크 정도가 徵收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1,200萬 마르크밖에 徵收하지 못했다. 그런데 改正後의 法律에서는 이 규정은 삭제되고 그 결과 1976년에는 약1億2,000萬 마르크 정도가 徵收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3) 調整金은 重症障碍者의 雇傭促進 및 勤勞生活에 있어서 援護給付를 위해서 밖에 쓰여질 수가 없다. 그 구체적인 使用途는 다음과 같다.

① 職場의 受容態勢의 整備를 위한 財政援助

② 障碍者用 機械 設備의 購入에 대한 援助

③ 障碍者勤勞者에 대한 住宅援助(融資)

④ 障碍者訓練院의 建設

⑤ 障碍者工場의 建設(資金援助)

이 調整金의 40%는 聯邦政府가 所管하는 基金에 納入되어 重症障碍者의 就職에 관한 州間의 均衡을 도모하기 위한 財政援助, 둘 이상의 주에 걸친 訓練등의 施設에의 補助金 등에 사용된다.

또 이 基金은 聯邦勞動, 社會秩序長官이 障碍者再活助言協議會의 協力下

에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4) 調整金의 性格은 身體障碍者의 雇傭에 따른 經濟的 負擔의 調整을 도모하는데 있으며 罰金이나 稅金이 아니다. 雇傭의 代替物 (Alternative der Beschaftigung)이며, 公法上의 槪念으로서는 身體障碍者의 雇傭에 관한 社會連帶責任에 기초하여 「公共的 負擔」(Öffentlich — Last)이다. 調整金과 罰金을 併課하는 것이 있는 것은 調整金이 패널티로서가 아니기 때문이다.

(5) 調整金이 雇傭義務의 免罪符로 된다는 議論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第1의 義務는 雇傭義務에 있으며 調整金은 雇傭할 수 없는 경우 第2次的인 義務이다. 따라서 第1次的인 雇傭義務를 故意로 履行하지 않는 자에게는 調整金은 納付할지라도 罰金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예를들면 建設業과 같이 職務의 事情에 따라 障碍者를 雇傭할수 없는 경우에는 調整金의 支拂에 의하여 責任을 賦課할 수가 있는 것이다.

(6) 이 調整金은 沿革的으로는 자아르란드, 니—더작센, 노르드라인 베스트파렌州의 州法에서 鑛山勤勞者 扶助手帖法의 중에 본래의 鑛山勤勞者를 地上勤務勤勞者의 1%이상 雇傭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으로 하고, 雇傭하지 않는 경우는 그 扶助를 위해 調整金을 納付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가 있다.

3) 日本의 雇傭納付金 및 調整金制度

〈15〉 雇傭納付金制度의 運營機關

① 오스트리아—調整稅金이므로 州의 身障局이 管掌

② 西獨一中央援護事務所

③ 日本一雇傭促進事業團

④ 勤勞福祉公社 運營의 妥當性

(1) 勤勞福祉公社法(1976.12.12 法律 第 2913 號) 第 1 條에 의하면 「이 法은 勤勞福祉公社를 設立하여 產業災害補償保險法 第 18 條의 規定에 의한 保險施設의 設置·運營과 產業安全 및 保健에 관한 事業을 效率的으로 遂行하게 함으로써 勤勞者의 福祉增進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또 同法 第 16 條는 「公社는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행한다.

① 療養, 休養, 醫療再活, 職業再活에 관한 保險施設의 設置 및 運營

② 產業安全 및 健康에 관한 事業

③ 第 1 號 및 第 2 號의 附帶事業

④ 政府로부터 勤勞者의 福祉增進을 위하여 委囑된 事業으로 되어 있다.

(2) 勤勞福祉의 槪念에 簿合福祉制度의 分散보다 統合

(3) 別途 雇傭促進事業團 設置보다 效率的이고 經費節減(日本에서의 分散은 오늘날 統合問題로 고민)

(4) 雇傭保險法 등에 따른 附帶事業도 勤勞福祉公社에 統合하여 實質的이고 名目에 符合하는 「勤勞福祉」의 中樞的 機關化

(5) 勞動部와의 連繫性, 旣存制度의 有效活用

7. 障碍者雇傭納付金制度의 概要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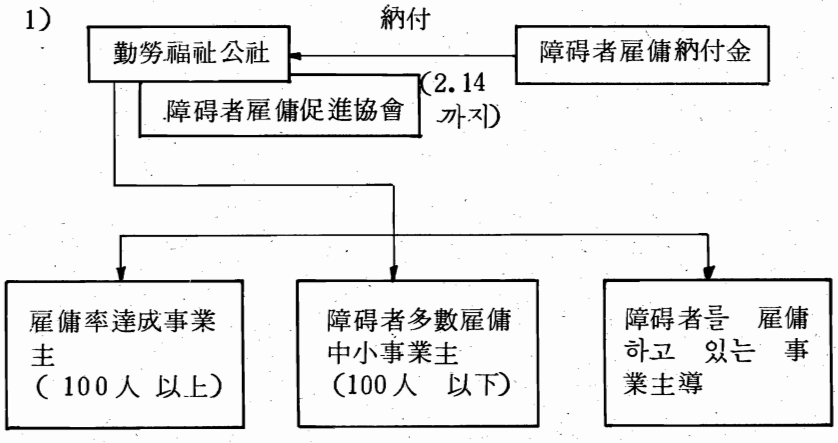

障碍者雇傭調整金의 支給
Ex.60,000원

奬勵金의 支給
Ex. 3% 또는 5人을 초과하는 事業主에 대하여 1人當 月 3萬원支給

助成金의 支給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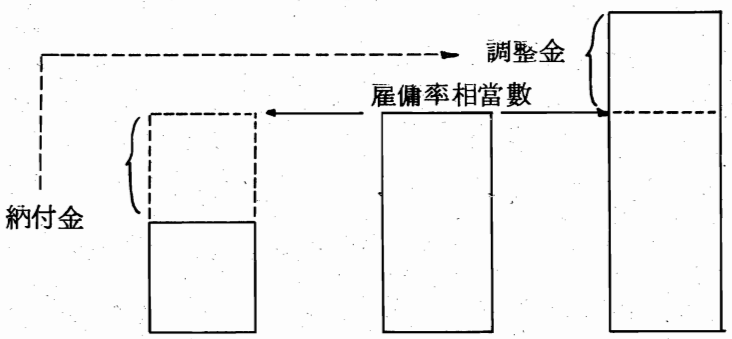

雇傭率未達成事業主 (常時 100人超過事業主)

雇傭率達成事業主

雇傭率超過事業主

3) 障碍者雇傭納付金의 使用
- ① 調整金支給
- ② 奬勵金支給
- ③ 助成金支給
- ④ 自營業資金貸付

※ 障碍者雇傭調整基金을 設置하여 殘餘額을 基金에 넣는 制度도 考慮할 수 있다.

4) 基準雇傭率과 調整基礎額

(1) 基準雇傭率—이는 障碍者雇傭率과는 별도의 것으로 除外率에 상당하는 勤勞者數를 除外하지 않고 全事業主가 그 雇傭하는 전체 常用勤勞者數에 따라서 平等하게 障碍者를 雇傭해야 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있어서 雇傭해야 할 障碍者比率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 率이어서 劃一的 義務雇傭率과 一致하는 개념이며 障碍者雇傭率과는 除外率을 고려하지 않는 점에서 다른 것이다. 除外率 制度를 당분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除外率制度를 없애면 결국에 가서는 障碍者雇傭率과 일치하게 될 것이다.

(2) 調整基礎額—納付金을 計算하는 경우 單價인 調整基礎額에 대해서는 納付金制度가 모든 障碍者의 雇傭에 따른 經濟的 負擔을 平等한 比率(즉 雇傭率)로 부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事業主가 雇傭率에 달할 때까지의 障碍者를 雇傭하도록 한 경우에 그 障碍者를 雇傭하기 위해 健康人의 雇傭에 비하여 特別히 必要로 되는 費用 즉 施設設備의 設置改善이나 適正한 雇傭管理에 통상 必要로 되는 費用등을 1人

1개월당 平均額을 基準으로 하여 정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 4만엥이다. 〈註 20〉

〈註 20〉: 韓國障碍者再活協會 資料, 1984.9.27. pp.25 ~ 38.

§ 4 . 國際障碍者憲章

1 . 宣　言

오늘날 全世界에는 5億以上의 障碍者들이 있다. 各 나라에는 적어도 10名中 1名은 身體的 障碍와 精神的 障碍, 或은 감각결손을 갖고 있다. 이러한 障碍者들은 成長하고 學習할 수 있으며 일을 하고 創造도 하며 사랑하고 사랑을 받을수 있는 全 人間的 權利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그들의 이러한 權利를 아직까지 充分히 保護해주는 것을 알지 못하는 社會에서 살고 있다. 障碍者들에게는 自己 自身들의 것이 되어야 할 기회와 責任性들이 너무 자주 부인되어져 왔다.

3億5千萬以上의 障碍者들이 전인적 삶을 營爲하는데 必要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다. 障碍者들은 各 나라에 또한 世界 各處에 살고 있지만 經濟的 或은 社會的 低開發 地域에 가장 많은 數의 障碍者들이 살고 있다. 貧困은 兒童, 成人 및 家庭의 希望과 生活을 低下시키는 결손을 유발시키고 있다.

어떠한 社會에서도 그 社會 成員의 25%程度는 障碍로 因하여 그들의 能力을 充分히 發揮하는데 支障을 받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中에는 障碍者뿐만 아니라 障碍者들의 家庭 또는 障碍者들을 돕고 支援해 주는 사람들까지도 包含되어 있다. 이러한 問題들에 對해 效率的으로 對處해 나가지 못하는 社會는 人間資源의 巨大한 損失뿐 아니라 人間의 潛在力에 對한 殘忍한 낭비를 스스로 받아드리는 것이다.

歷史를 通해서 身體的 或은 精神的 理想때문에 다르게 評價된 사람들이

그 社會에 充分히 參與할 수 없도록 세워진 物理的, 社會的 障壁이 있다. 建物들과 交通手段은 거의 많은 障碍者들이 利用할 수 없게 되어있다. 정보나 아름다움 等은 시력이나 청력 或은 理解力에 缺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傳達되지 못하고 있다. 身體的이나 精神的 能力이 大多數의 사람들과는 다른 兒童들과 成人들에게는 人間聯合의 따스함이 제쳐 놓여져 있다.

教育, 生產的 雇傭, 공중 서비스, 레크레이숀 및 其他 活動들이 大多數의 障碍者들에게는 拒否되어지거나 단지 部分的으로만 許容되고 있다. 거의 獨立的인 活動을 할 수 없는 重症障碍者들에게는 흔히 全的으로 無關心하거나 그들의 個人的 發展을 돕고 그들의 生活의 質을 改善하는데, 努力이 不充分하다.

障碍者들이 그 社會에서 生活할 수 없도록 만드는 障壁들을 各 國家들이 除去시킬수 있는 知識과 技術이 있다.

모든 國民에게 모든 機關과 組織을 開放하는 것은 모든 國家에 있어서 可能한 것이다. 흔히 不足한 點은 이러한 것을 成就하는데 必要한 政策을 提唱하고 行動으로 옮기는 政治的 意志인 것이다. 이러한 問題를 對應해 나가는데 失敗하는 國家는 이것의 진실된 價値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貧困과 戰爭은 障碍의 原因이 될뿐아니라, 障碍의 豫防과 再活을 爲한 資源의 有用性에 對하여도 影響을 끼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本 憲章의 目的은 各 나라의 豫防과 再活事業이 實現될 것을 要求하며, 따라서 世界의 資源들이 보다 均等하게 分配되고 그리고 理性과 協同을 바탕으로 하는 國家間의 關係가 맺어질것을 要求하는데 있다.

새로운 80年代에서는 障碍의 發生을 줄이고, 障碍者의 權利를 尊重하며 그들의 充分한 參與를 歡迎하는 社會를 이룩해 나가는 것에 모든 國家의 目標가 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目的을 爲해, 80年代를 爲한 本 憲章은 宣布되어지는 것이다.

各己 모두 重要하며 于先的으로 다루어야 할 本 憲章의 目標들은 障碍에 對한 各 社會의 態度가 基本的으로 變化되어지고, 또한 障碍者들의 問題에 對하는 社會의 態度가 根本的으로 變化될 때만이 成就되어질 수 있는 것이다.

目標들은 다음과 같다.

一. 모든 國家에서는 可能한한 많은 缺損들을 豫防하기 爲한 計劃을 만들고, 必要한 豫防을 爲한 奉仕가 各 家庭과 各 個人들에게 미칠수 있도록 한다.

一. 모든 障碍者와 障碍者를 갖고 있는 모든 家庭이 障碍로 因한 불리한 影響을 줄일수 있는 再活奉仕나 其他 支援과 援助를 무엇이든지 받을 수 있도록 하고, 各 障碍者들이 全人的 生活과 社會에서 建設的 役割을 可能한 한 할 수 있게 한다.

一. 障碍者들이 살고 있는 社會에서의 모든 生活面에서 障碍者들이 充分히 參與하고 社會에 統合될 수 있는 必要한 措置를 취한다.

一. 모든 社會에서 障碍者의 重要性과 障碍問題들에 對해 一般人들의 知覺과 知識을 높히기 爲하여 障碍者들과 그들의 潛在力에 對해 또한 障碍와 障碍의 豫防 및 治療에 對한 情報를 普及한다.

모든 國家는 本 憲章에서 取한 基本 原理와 各 國家의 狀況에 따라 이러한 目的을 成就시키기 爲한 包括的인 國家 計劃을 樹立해야 된다.

이 計劃은 國民生活의 重要한 部分이 되어야 하며, 國家發展을 爲한 어떠한 計劃中에서도 높은 優先權이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目的을 爲해, 모든 國家는 必須的으로 政府內에 障碍 問題를 다루는 長官 或은 이에 同等한 序例의 사람이 있어야 하며, 이 사람은 國家計劃을 準備하고 그 計劃의 施行을 調整하는데 있어서 國家 원수나 政府에 對해 直接的으로 責任을 질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調整者는 모든 適合한 政府 부서의 代表者나 障碍에 關聯된 組織, 또는 民間機關이나 專門的인 機構들을 包含하는 國家 諮問機構로 부터 支援을 받아야 한다.

80年代의 本 憲章은 障碍者로 불리건 아니건간에 모든 사람의 權利와 責任性을 保護하고 奬勵시킬수 있는 人道主義의 實現에 對해 意見을 一致시킨 宣言이다.

本 憲章은, 1980年6月26日 카나다 위니펙에서 開催된 第14次 世界再活大會의 審議에 따라, 國際再活協會에서 承認된 것이며, UN障碍者 해에 對한 重要한 寄與로서 世界에 提示되는 바이다.

1) 이 憲章의 本文에서 使用한 容語 "impairment" "disability" & "handicap"은 國際保健機構(WHO)에서 정의내린 國際的인 分類를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다.

Impairment (損傷) — 心理的·身體的 或은 解剖學的 構造나 機能에 있어서의 어떠한 損失이나 非正常性을 意味한다.

Disability (不具) — 損傷을 받은 結果, 人間다운 生活을 하는데에 輕微한 或은 심한 程度로 遂行能力에 어떠한 制限이나 缺乏을 가져온 狀態를 意味한다.

Handicap (障碍) — 損傷이나 不具로 因해 不利해진 狀態로서, 나이, 性

(sex) 社會的·文化的 與件에 依存하는 個個人의 正常的인 役割을 完遂하는데에 制限이나 防害를 받는다.

2) 世界的으로 損傷을 입는 原因은 거의 同一하나, 不具나 障碍의 結果는 各 地域의 社會·經濟的 狀況 및 各 社會가 障碍者들을 爲해 支援해주는 程度에 따라 매우 多樣하게 나타나고 있다.

3) 各國은 損傷을 豫防하고, 不具를 減少시키며, 不具로 부터 障碍로 轉換되는 것을 막기 爲해 措置를 取할 수 있다. 서로 密接한 關係가 있는 이들 目標의 成就를 爲해서는 豫防策 및 再活·支援·保護體制에 있어서의 活性化가 이루어져야 하며, 社會와 損傷 및 不具를가진 사람들과의 相互交換關係가 要求되고 있다. 80年代를 爲한 이 憲章의 目的은 이들 要求事項의 提起에 있다.

4) 不具者 問題에 對한 不充分한 措置는 社會全體에 큰 損失을 惹起시킨다. 不具는 個人의 自己保護能力 및 獨立된 活動能力을 直接的으로 變化시킬수 있으며, 父母와 子女사이의 關係를 바꾸어 놓음으로써 또는 시간이나 힘, 經濟的인 能力에 있어서 家族 構成員에게 特別한 要求를 表明함으로써 家族의 機能에 妨害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또한 貧困을 招來하기도 하며, 家族의 社會·經濟的 地位에 破壞的인 變化를 일으킬 뿐만아니라, 共同社會속에서 構成員으로서의 能力을 減少시켜 다음과 같은 結果를 가져온다.

- 新規勞動者에 對한 再訓練과 勞動 移動으로 因해 產業上 甚한 經濟的 打擊을 받는다.
- 不具者나 도움을 必要로 하는 사람들의 參與로 因해 勞動力에 미치는

두번째의 影響力이 있다.

社會保險制度 및 그 利益을 維持시키는 財政的 寄與의 源泉으로서, 活動的인 勞動力을 構成하고 있는 많은 勞動者의 減少 現象이 나타난다. 以上과 같은 모든 結果들을 考慮해 볼때, 적어도 인구의 25%가 不具에 依해 不利하게 影響을 입게 될 것이다.

5) 再活 서비스의 充分한 供給은 社會全體에 對해 社會·經濟的으로 막대한 利益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障碍의 原因을 抑制하고 不具의 社會的 影響力을 減少시키기 爲한 對策과 더불어, 再活은 不具로 因한 損失을 最少限으로 줄일 수 있어야 한다. 再活서비스의 供給으로 因한 經濟的 利益은 健康 및 다른 社會施設費用의 貯蓄, 大衆支援計劃費의 減少, 不具를 가진 勞動者에 依해 生產된 商品과 서비스를 통해 社會에 利得을 줌으로써 證明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稅金 消費者로부터 稅金에 寄與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보다 중요한 利益이 있는데 첫째, 不具者의 社會에 對한 創造的인 寄與이며 둘째, 그들의 家族 構成員이 生產的인 能力을 發揮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國家는 不具者의 價値를 認識하게 되어 充分한 障碍豫防과 再活 對策을 通해 障碍者 減少를 위한 試圖를 할것이며, 社會의 잘못된 態度를 수정함으로써 보다 擴大된 社會·經濟的인 利益을 얻게 될 것이다.

6) 損傷 및 不具의 發生率은 先進國에서 보다 社會·經濟的으로 發達初期 段階에 있는 地域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正確한 資料는 不足하지만, 가난과 더불어 豫防 및 再活서비스의 缺乏은 確實히 더 많은 損傷과 不具에로의 轉換을 나타내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 이들 開發途上地域에서의 社會·經濟發達을 爲한 計劃들은 좀체로 不具豫防과 再活供給問題를 다

루고 있지 않으므로 이러한 事態를 改善하기 爲해서는 先進地域에서의 開發途上國에 對한 支援이 매우 時急하다.

7) 全世界的으로, 不具者들은 正常人에 比해 훨씬 더 不利한 生活條件에 處해 있다. 開發途上國에서는 勿論 先進國에서, 不具者들은 健康對策의 不足을 느껴야 하며 社會·經濟的 發達에의 參與에서 除外되고 있으므로, 이들의 充分한 社會參與와 平等에 對한 要求가, 開發途上國은 勿論 先進國에서도 똑같이 强調되어야만 할 것이다.

8) 國內 및 國際的인 將來 計劃을 세울때에는, 全體的인 發達과 世界의 많은 地域에서 두드러진 傾向들을 考慮하여야만 할 것이다.

大規模의 豫防策이 마련되지 않는限, 西紀 2000 年까지 世界人口는 6 兆, 不具者는 1 億으로 增加될 것이며, 그때까지 先進地域에서의 全體 어린이와 成人 人口數를 凌駕하며, 世界 人口의 約 $\frac{1}{3}$ 을 차지하는 15 歲以下의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後進國에서 살게될 것이다.

開發途上國에서는 營養失調가 풍토병이 될 것이며, 經濟 成長에 對한 環境 및 다른 抑制要因으로 因한 만성실직자가 생겨나고, 家庭의 機能 弱化와 老人들에 對한 社會·文化的 排斥이 甚해지며, 醫學 및 治療技術의 向上은 人間의 生命을 延長시키기도, 줄이기도 할 것이다.

9) 이 憲章에서 陳述하는 原則들은 모든 나라에 똑같이 適用될 수 있으나, 實行에 따른 細部的인 事項과 時間調節은 實行國의 地域的 狀況과 資源 活用度 및 發達段階에 따라 必然的으로 多樣해질 것이다.

10) 많은 人類를 爲한 損傷 및 不具의 豫防策은 매우 不充分하다.

11) 損傷의 根本原因을 막기 爲한 첫段階의 豫防은, 不具者의 數를 줄이려는데에 있는 것으로 그 原因을 살펴보면:

- 척수회백질염, 뇌막염, 풍진, 결핵, 나병, 트라코마와 같은 전염병
- 임신中이나 形成期때의 營養失調
- 분만時의 危險等이 있다.
- 家庭이나 職場에서의 事故 및 交通事故

12) 不具의 첫段階 豫防은 모든 나라들의 保健·教育·環境計劃에서 가장 重要한 部分으로 다루어져야 하는데 特히, 健康保護, 營養狀態, 産母와 胎兒, 出生前·後의 保護, 家族計劃 및 相談, 전염병豫防, 公衆衛生, 大氣汚染防止, 基礎教育 및 安全에 關한 것이다.

勞動者나 徒步利用者의 保護를 爲한 强力한 改善策이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危險한 運動競技나 놀이중의 事故로 因한 損傷等에 더욱 注意를 기울여야 하며 共同社會生活에서의 精神健康增進 對策에도 보다 큰 力點과 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13) 損傷의 初期 發見을 爲한 組織的인 節次가 매우 重要하며, 身體的, 精神的 損傷에 依한 機能의 限界를 줄이거나 豫防하기 爲한 措置는 問題가 發見되는 卽時 始作되어야 한다. 特別히, 危險한 職業 卽, 鑛山, 化學, 核工業等에 從事하는 사람들이나, 분만때의 病歷이 있는 女子, 近親結婚을 한 家系, 特定한 血液型 및 遺傳的인 病, 관절염이나 간질같은 만성적인 질병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다 注意를 기울여야 한다.

目 標 : 不具를 가진 사람과 不具者가 있는 家庭을 正確히 알고, 不具로 因해 不利해진 結果를 줄이기 爲해서는 어떤 再活서비스 및 支援이나 도움이 必要한지를 確實히 하기 위함과, 이들 個個人의 보람된 生活과 社會에서의 建設的인 役割遂行을 可能하게 하는 데에 있다.

14) 損傷이나 不具 或은 障碍豫防을 爲해서는 社會의 態度나 行動이

改善되어야 하며, 그들에게 주어지는 서비스나 社會속에서의 役割遂行을 爲한 機會가 滿足스러운 것이어야 한다.

15) 損傷을 입은 어린이와 成人에 對한 早期發見 및 治療는 複雜하고 多樣한 障碍 形態로 轉換되는 것을 막을수 있으며, 共同社會生活속에서 나타나는 不具의 特徵과 範圍를 보다 改善된 計劃 및 實際的인 必要性과 關聯된 서비스의 開發, 問題解決을 爲한 充分한 豫算編成으로 發展시킬 수 있다는데 더욱 注目해야 할 것이다.

16) 損傷 및 不具의 早期發見을 促進시키기 爲해서는 登錄이나 여러制度가 確立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制度는 信賴할 수 있어야 하며, 必要할 때에는 自發的인 參與와 利用을 할 수 있다는 前提아래 實施되어야 한다. 特別히 不具를 區分짓는 것을 막기 爲한 모든 活動에 있어서 社會로 부터 分離된 個個人의 特殊性을 立證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매우 重要한 일이다.

17) 再活이란 醫學的·社會的·教育的·職業的 方法을 모두 綜合하고 調整하여 不具者로 하여금 社會에 統合되도록 하며, 最大限으로 能力을 發揮할 수 있도록 돕는 過程으로서, 機能上의 進步를 꾀하고 生活의 質을 높이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醫學的 保護 및 治療:

物理治療士, 作業治療士, 言語治療士, 心理學者等에 依한 治療:

聽力損失, 視覺障碍, 精神지체等에 必要한 特殊施設과 함께 機動力, 意思傳達能力 및 日常生活能力을 包含하는 自己保護機能의 訓練:

보철과 정형수술같은 보조고안품 및 技術的인 도움의 提供:

教育:

職業的 評價, 訓練, 斡旋:

社會的 相談 및 支援.

18) 再活은 綜合的이며 相互協同的인 形態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때때로 不具의 結果가 매우 複合的이어서 그 減少를 爲해서는 複雜하고 統合的인 過程이 要求되기 때문이다. 政府 및 支援團體에 依한 再活서비스는 可能한한 健康, 教育, 社會의 勞動構造等을 統合시키는것이 重要하며 여기에는 病院 施設에서의 收容, 初等, 中等, 高等教育, 職業訓練과 就職에 따른 一般的인 計劃, 社會保障과 서비스等이 있다. 따라서, 영구적인 損傷을 입어 繼續的인 再活서비스가 必要한 사람들은 社會에서 隔離되기보다는, 社會속에서 그들이 必要로 하는 도움을 받을수 있을 것이다.

19) 再活努力의 焦點은 共同社會속에서 持續的으로 서비스를 提供하는데 있다. 이는 곧 不具者의 一般社會속에의 統合을 爲한 모든 方法의 强化를 包含하고 있으며, 또한 都市와 시골 두 地域 모두에서 不具者가 自身의 生을 共同社會속에 適應시킬수 있도록 돕기 爲한 서비스供給에 對한 適切한 形態의 評價를 土臺로 하여 共同社會水準의 再活서비스의 擴張을 隨伴하는 것이다.

20) 再活서비스 供給의 重要한 目標는 家族들이 서로 돕는 가운데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不具者와 그 家族의 實際的인 必要性 卽, 家族의 經濟的·社會的 狀況 및 文化的 背景에 따른 節次의 適合性을 바탕으로 提供되어야 한다. 따라서, 不具者나 그 家族 構成員들은 再活프로그램의 計劃·實踐 및 評價에 積極的인 參與를 할 수 있어야 하며 家族은 再活過程에서의 그들의 機能的인 役割을 把握할 수 있도록 支援받아야만 한다. 必要한 모든 支援이 그 家族에게 提供되어야 한다는 것은 可能한한 不具로 因한

問題를 家庭이나 共同社會속에서 對處할 수 있도록 돕기 爲함이다. 이러한 支援은 餘暇善用과 文化的 活動은 勿論 經濟的·法的·心理的·成績指導 等에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때 보다 重要한 것은 不具者와 그 家族에게 影響을 끼치는 모든 서비스들이 서로 統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1) 再活事業에 從事하는 機關들은 不具者를 받아들이는 節次와 不具者와 그 家族이 必要로 하는 서비스의 計劃 및 準備에 따른 支援 節次를 發展시켜야 한다. 不具者의 參與를 爲한 이러한 節次는 一般的인 支援體制는 勿論 病院, 醫療센터, 訓練機關, 共同住宅考案, 教育프로그램, 雇傭施設等의 政策 決定도 包含하고 있다.

22) 再活서비스는 年齡, 性別, 經濟的인 能力, 人種, 損傷의 種類 및 原因·程度·豫後·狀態·一時的 및 慢性的 障碍等에 區別없이 必要로하는 모든 사람에게 供給되어야 한다. 障碍 結果에 따른 特別한 施設 및 援助의 追加費用을 補償하기 爲한 充分한 財政的 支援이 社會安全과 保障制度 或은 各 나라에서의 適切한 여러가지 制度 안에서 保障되어야만 한다.

23) 現存하는 社會安全 및 社會保障制度가 不具者나 그 家族들을 除外시키거나 差別待遇하는가에 對한 檢討가 必要한데, 이러한 制度가 發展되어야 비로소 不具者들의 獨立的인 機能과 再活에 對한 可能性이 確實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는 經濟的으로 生存 可能한 水準에서의 生產的인 作業이 不可能한 境遇 不具者에 對한 財政的인 補償과 所得의 代置(補充)을 通한 經濟的인 自給自足을 强化시키기 爲한 方案이 模索되고 있다.

24) 再活서비스 惠澤을 받는 人員이 수적으로나 質的으로 모두 增加되어야 하며, 特히 關聯分野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提供者들의 知識·能力·

義務感이 强化되어야만 必要에 따라 不具者에게 適切한 施設과 서비스支援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不具의 本質과 再活槪念에 對한 根本的인 訓練은 教師·社會事業家·補助健康서비스要員·行政官·政府監督官·聖職者·家政相談家를 包含하여 共同社會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爲하여 包括的인 訓練과 教育프로그램을 包含시켜야만 한다.

25) 再活過程과 直接的인 關聯이 있는 訓練에 參與하는 專門家들은 大學院課程에서 訓練에 對한 廣範圍한 知識을 배워야 하는데, 再活過程에 있어서 多角的인 訓練 및 不具者와의 協力이 特히 强調되어야 한다. 모든 專門要員들은 再活過程에 있어서 왜 不具者 스스로의 參與가 重要한 要因이며, 또한 이것이 어떻게 成就되어야 하는가를 理解할 수 있어야 한다.

26) 國際的인 協力과 經驗의 交流를 通해 訓練의 機會가 强化됨에 따라 現在 訓練을 받고 있는 사람이 活動하게될 나라의 生活樣相과 與件에 適合한 訓練이 提供될 것이며, 이는 그 나라나 地域的으로 같은 나라에서 더 잘될 것이다.

27) 一般社會와의 統合이 어려운 많은 不具者들을 爲해서는 身體的인 自立 水準에서의 技術的인 援助 및 考案이 提供되어야 하므로, 政府 및 民營事業體들은 財政的인 支援을 받아야 하는 한편 보다 나은 生産을 가져올 再活工學프로그램에 對한 後援을 받아야 한다. 各 나라에서 行해지고 있는 不具者의 保障對策은 그들의 效果的인 再活과 社會統合을 爲해서 身體的인 面은 勿論 財政的인 面도 考慮해야 한다.

28) 再活技術은 可能한한 單純하고 보다 經濟的이어야만 하며, 再活서비스의 發達을 爲한 努力은 너무 값비싼 것에 의지해서는 안되며 종종 裝備, 原料 및 技術을 받아들여야 한다. 國家사이에서의 技術의 전이는 그

方法이 機能的이며 效果的인가 技術이나 考案品이 單純하고 값싼 것인가 等의 評價를 土臺로 한 것이어야 한다.

29) 不具者를 爲해 使用될 機械, 裝備 및 다른 材料에 對한 關稅의 免除, 輸入許可, 外國換 配當의 惠澤이 있어야 하며, 이와 關聯하여 各國에서 公認한 教育, 科學, 文化的 輸入에 對한 UNESCO "Florence Agreement"와 障碍者에게 必要한 輸入品에 對한 免稅措置를 言及한 條約案을 促進시키기 爲한 努力이 强化되어야 할 것이다.

30) 技術援助와 考案品에 對한 相互協調的인 國際市場의 擴張은 곧 低廉한 價格에서의 再活의 效率性을 意味하는 것이다.

目標: 障碍者들이 社會에서의 모든 生活領域에서 同等하게 參與하고 調和를 이룰수 있도록 모든 必要한 過程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31) 障碍者들은 社會에서의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인 參與와 分擔을 비롯하여 모든면에서 다른 사람과 同等한 權利를 가진다. 어느 누구든지 自己社會의 一員을 排除하는 社會는 衰弱한 社會이므로 社會의 모든 構造는 障碍者에게도 充分한 參與의 機會를 주도록 만들어져야 된다.

32) 再活이란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한 活動의 一部일 뿐이다. 모든 社會組織은 障碍者에게 開放되어 있어야 하며, 社會가 障碍者들에게 充分한 參與의 機會를 주기에는 많은 妨害要因들이 있는데 이러한 要因들의 除去란 곧 우리社會의 構造的 變化를 要求하게 될 것이다.

33) 社會는 스포츠와 娛樂施設을 비롯하여 身體的 環境, 住宅 및 交通機關, 健康서비스, 教育 및 職業의 機會, 文化生活에 있어서 障碍者들이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들이 政治와 貿易活動을 할 때에 妨害를 받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雇傭主 協會와 組織을 비롯한 社會

內의 團體들은 障碍者들의 生活과 權利保障에 關한 問題에 責任意識을 가져야 할 것이다.

34) 障碍者들이 自身의 일이 關係된 일을 決定하는데에 같이 參與한다는 것은 매우 重要하며, 아래와 같은 일들이 保障되어야 한다:

그들 自身의 再活計劃을 세우는데에 參與:

政府 責任者 및 다른 機關에 依한 再活政策 決定에의 廣範圍한 參與:

社會全般에 걸친 政策決定 過程에의 參與:

35) 再活活動에 있어서 障碍者의 參與가 매우 重要한 일로 認識되고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a. 障碍者들은 그들의 權利와 再活의 意味에 對해 알아야 하는데, 이는 곧 그들과 그 家族에게 가장 適切한 再活서비스를 決定하는 일에 參與하도록 許容하게 될 것이다.

b. 障碍者들은 再活政策 決定 및 活動에 直接 或은 代理人을 通해서라도 積極的인 參與를 해야 한다. 政策決定에 代表로 參與한 障碍者들은 모든 障碍者와 그 家族들에게 責任을 질 수 있어야만 한다.

c. 再活의 實踐과 政策決定에 對한 障碍者의 參與는 法律이나 規程으로 保障되어야 하며, 그들의 參與가 보다 適切하고 效果的인 法律制定 및 規程의 手段으로 認識되어져야만 한다.

d. 障碍者로 構成된 團體들이 促進되고 發達되어야 한다.

36) 많은 나라에 있어서 障碍者들은 그들의 生活與件改善과 權利保障을 爲해 鬪爭할때 障碍者로 構成된 團體를 通해서 活動하고 있는데, 이들 團體를 通해서 全般的인 生活領域에서의 그들의 見解와 要求事項을 傳達하고, 問題에 對한 解決方案을 提示할 수 있다. 이와같은 일은 再活의 發達에

있어서 매우 重要한 것이다.

37) 障碍者로 構成된 團體는 可能한한 國家 및 地域的 發達, 與件等과 關聯하여 모든 나라에 存在해야 하는데 이들 團體는 效果的인 役割遂行을 爲해 財政的 支援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知識과 經驗을 社會活動에 利用하기 爲해 組織을 考案하여야 한다. 障碍者 團體는 그들 社會에서의 重大한 過程에 參與하고 刺戟을 줄 수 있는 가장 重要한 手段中의 하나이다.

2. 生活環境에의 統合과 參與

38) 社會는 모든 構成員에게 있어서 접근하기 쉬워야만 한다. 障碍者는 一般 市民을 爲해 計劃된 모든 建物을 利用할 權利가 있으며 便利한 交通手段을 必要로 하고 있다. 建物 및 社會의 設計는 都市는 勿論 시골에 있어서 生活, 學習, 作業, 娛樂 및 交通與件上 便利해야 하므로 모든 새로운 建物에는 建築上의 障碍要因이 없어야 하며 公衆 交通機關을 비롯한 現存하는 建物과 施設에의 調整을 爲해 財政的인 刺戟이 있어야 한다. 모든 環境的 妨害物을 除去하는 가장 重要한 理由는 障碍者에 對한 隔離와 社會에서의 劣等한 役割을 豫防하기 爲함이다.

39) 建物, 生活環境, 交通體制는 障碍者들에게 複雜하지 않고 便利하도록 計劃되어야 하며, 計劃할때 처음부터 便利한 形態로 考案하면 追加費用 없이 적은 費用으로도 可能할 것이다.

40) 모든 關係者들은 便利한 디자인에 對한 情報를 널리 알려야 하는데, 障碍者를 爲한 計劃에 對한 情報는 各 나라에 가장 有用한 것이 된다. 國家 標準團體는 基本原則을 現在의 基準과 規程에 合併시켜야 하는 한편, 建築學 및 設計를 工夫하는 學生들도 그들의 訓練課程에 基本原則을

包含시켜야 하며, 公共施設의 建設과 設計基準 및 規程에 責任이 있는 사람들 卽 政府의 計劃者, 建築業者, 商業開發者들에게도 알려야 한다. 또한, 身體的·精神的 障碍는 勿論 機動力 및 感覺障碍를 가진 모든 類型의 障碍者들의 必要性을 考慮해서 計劃해야 한다.

41) 여기에 덧붙여, 甚한 障碍를 가진 사람을 爲해서는 特別한 計劃이 必要한데 住宅의 改造를 비롯하여 生活環境에의 支援 特히 交通手段의 發達等이 有用한 것들이다. 이러한 施設들은 사람들의 充分한 參與가 있을때에 비로소 쓸모있게 될 것이다.

42) 平生 집안에만 틀여박혀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定期的으로 집을 떠나 社會生活에 參與할 수 있도록 돕기 爲한 모든 努力이 行해져야 하며, 障碍로 因해 집안에만 있는 사람들도 家庭에서 生産的인 活動에 參與할수 있도록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들의 生活向上과 改善을 가져올 수 있는 活動의 發展을 爲한 支援을 받아야 할 것이다.

43) 障碍者들도 社會的 關係 및 娛樂의 機會를 갖는데 있어서 다른사람들과 똑같은 必要性을 느끼며, 大部分의 障碍者들은 社會의 娛樂施設을 利用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施設들은 障碍者를 社會에서 排除(除外)시키기 보다는 包含시키는 原則아래 發達되어야 한다.

44) 障碍者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親密한 人間關係 및 性關係를 維持하려고 하며, 이러한 關係를 許容해주는 社會 및 自然環境속에서 살 必要를 느낀다. 따라서, 障碍者들의 人間關係 및 性問題 그리고 障碍者와 그들에게 서비스를 提供해주는 사람들과 討議를 爲한 風土가 向上되어야만 한다.

3. 教育環境에의 統合과 參與

45) 모든 나라의 教育政策은 障碍를 가진 어린이와 成人을 爲한 教育을 提供해주어야 하며, 障碍者를 냉대하는 現在의 政策은 再檢討 되어야 한다.

46) 障碍兒童도 그들 나라와 社會의 다른 어린이들과 똑같이 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으므로, 標準教育制度안에서 適切하고 可能한 教育이 實施되어야 하는데 어떤 一部의 어린이를 爲해서는 教育 프로그램의 變更 및 必要한 서비스 支援의 發達이 要求된다.

47) 各 나라에서는 다른 一般어린이들과 마찬가지로 障碍兒에게도 完全한 教育制度를 保障해줄 義務가 있다. 育兒室, 幼稚園 및 學齡前 施設들이 必要하며 障碍兒들은 이러한 經驗을 함께 나눌수 있어야 하며, 可能한한 社會는 障碍兒들에게 限定된 教育環境속에서도 社會에 寄與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데, 만일 어린이의 能力이 一般教育에서 制限을 받는다면 그에 따른 特別한 必要性을 考慮한 施設이 計劃되어야 한다. 地方學校 및 教育機關과 關聯하여 完全한 統合이 不可能한 곳에서는 社會施設이 되도록 實用的이어야 한다. 아직 學校에 다니지 못하는 어린이들은 그들 나름의 最大限의 教育水準에 이르기 爲해 巡廻教師의 도움을 받아야만 한다.

48) 成人 障碍者들도 그 나라의 實現 可能性에 따라 높은 水準의 教育을 받아야 할 것이다. 一般學校, 大學校, 技術 및 特殊訓練 機關에서는 個個人에게 適切한 學習 프로그램의 調整을 爲한 努力이 있어야 하며, 特別히 障碍와 關聯된 費用支出에 對한 財源이 有用하게 쓰여져야 할 것이다.

4 . 作業環境에의 統合과 參與

49) 職業評價, 指導, 訓練, 選擇的 配置를 包含한 職業再活서비스는 障碍의 根源 및 特性, 그들의 年齡 및 性別에 상관없이 모든 障碍者들에게 有用한 것이 되어 그들이 生産的인 活動에 參與함으로써 展望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50) 職業指導는 障碍者 個個人의 資質, 才能, 身體機能, 適性, 經驗과 關聯하여 職業의 發展과 機會, 就業條件, 職業의 展望等에 對한 現在의 情報를 알려주는 것인데, 이는 一般大衆을 위한 서비스 가운데 한 特別한 部分일 수도 있으며 障碍者만을 爲한 獨立된 서비스로 確立될 수도 있다. 또한, 職業 指導는 個人의 能力, 才能, 作業環境에 對한 適應度의 適切한 評價를 通해 就業의 機會를 줄 수 있도록 組織되어야 한다.

51) 障碍者에 對한 職業訓練은 可能하다면 어디서나 一般大衆을 爲한 職業訓練 서비스의 範圍 안에서 實行되어야 하는데, 甚한 障碍로 因해 一般的인 서비스로는 訓練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爲해서는 特別한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하는 한편, 雇傭主들은 障碍者들에 對한 職業訓練의 機會를 助長해야만 한다.

52) 選擇的 配置는 障碍者의 安全과 雇傭을 支援할 수 있어야 하는것으로, 이러한 配置過程에는 다음과 같은 必要性들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 作業에 必要한 條件과 사람의 能力을 調和시킨다.
- 裝備, 연장, 機械, 作業場所에 對한 適應 및 障碍者에게 便宜를 줄 수 있도록 支援을 해야 하며, 特히 適應期間동안 特別한 도움을 준다.
- 安全한 定着을 돕기 위한 사후서비스가 必要하다.

53) 可能한한 어디서나 障碍者들은 開放된 雇傭을 通해 職業을 구할수 있어야 하는데, 競爭的 作業에 對處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Shel-- tered workshop, 家內工業, 一般企業體속에서의 集團作業, 農業, 園藝, 林業等을 通해 保護 或은 半保護의 狀態로 作業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어야 한다.

54) 시골 및 都市의 모든 地域에서 障碍者의 就業機會를 넓히기 위한 特別한 方法이 採擇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割當額奬勵計劃, 指定된 職業, 小企業體의 活性을 위한 貸付, 獨點契約, 優先生産權 稅金의 特典, 또다른 財政支援等이 있다.

55) 障碍者들은 그들의 障碍로 因해 다른사람들과 똑같이 일을 하면서도 賃金에서는 差別待遇를 받는다. 불경기때나 就業機會가 制限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障碍者의 就業 保障을 爲한 對策 마련이 매우 重要하다.

56) 障碍者들은 다른 勤勞者들과 마찬가지로 職場을 옮기거나 그만둘때에 選擇의 自由가 있어야 하며, 知識과 技術을 向上시키고 發展한만큼 승진할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야 한다.

57) 勞動組合이나 雇傭主 協會의 代表者는 障碍者 再活과 支援에 直接的인 責任이 있는 關係者들과 서로 協力해야 한다.

- 作業環境과 要求條件에 맞춘 職業再活서비스의 計劃을 保障해 주는 諮問團과 政策決定機關에 對한 이바지
- 障碍者들이 直面한 問題와 活潑한 就業 可能性에 對해 構成員들에게 알리고 啓蒙해야 한다.
- 作業으로 因한 疾病이나 傷害를 입은 勤勞者의 回復을 爲한 支援

프로그램의 조장

- 疾病이나 負傷을 當한 結果, 作業 能力에 變化를 가져온 勤勞者들의 職場 轉換
- 障碍者 收容을 위한 연장, 機械, 作業場所에의 適應을 目標로 하는 對策에 對한 忠告
- 障碍者를 위한 訓練과 雇傭의 機會를 平等하게 하는 政策의 採擇
- 勤勞者 會議에 障碍者 代表가 參席한다.
- 團體 協定에 障碍者를 爲한 特別 規程을 마련한다.
- 再活 및 Sheltered workshop (保護作業場)이 大規模 企業으로서 確立되도록 助長한다.

목표 : 障碍者와 그들의 潛在能力과 障碍, 그 豫防과 治療에 對한 情報를 널리 알리고, 問題에 對한 一般大衆의 知識과 認識을 높이며 社會에서의 障碍者의 重要性을 認識하는데에 있다.

58) 障碍者가 一般社會로 統合되는데 妨害가 되는 態度나 行動은 반드시 除去되어야만 한다. 數世紀동안 障碍者들은 無智와 迷信으로 因해 恐怖와 悲難의 對象이 되어 왔다.

59) 障碍의 根本 原因 및 그 影響力, 豫防, 再活可能性, 社會속에서의 有用한 서비스等에 對해 地方이나 國家는 勿論 世界水準에서 一般大衆을 爲한 情報를 提供할 必要性이 있다.

모든 障碍者 및 그들의 家族, 社會構成員, 健康·教育·社會·職業서비스를 提供하는 사람 立法者, 計劃者 및 一般大衆들은 모두들 根本的인 情報에 對한 必要性을 充分히 느끼고 있다.

60) 公共 情報 프로그램은 반드시 信仰이나 風習價値觀의 多樣性을 考慮

해야 하며, 서로 다른 障碍의 類型을 다루기 爲해서는 여러가지 側面에 對해 알 必要가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障碍者들은 同質의 集團을 構成할 수 없다는 事實도 알아야 한다. 서로 다른 原因으로 因한 障碍는 서로 다른 여러가지의 結果와 解決策을 나타내는데 이는 곧, 聽覺障碍 및 言語障碍, 視覺障碍, 精神遲滯, 運動障碍, 심장이나 호흡 또는 慢性障碍, 複合障碍等에 따라 社會속에서 그들이 必要로 하는 서비스가 서로 달라진다.

61) 教科書, 教育資料, 册等 어린아이에게 提供되는 教材에 있어서 障碍나 障碍者에 對한 편파적인 態度에 特別히 留意를 해야 하며, 어린이들은 障碍나 그 影響力에 對해 學校를 通해서 올바른 知識을 얻을수 있어야 한다.

62) "大衆의 認識 啓蒙"은 社會環境과 障碍者에 對한 正常人들의 態度를 變化시켜, 正常人들의 否定的인 態度와 社會規範이 障碍者가 直面하게 되는 가장 큰 障碍物임을 認識하게 한다. 이러한 教育的 努力은 障碍者들이 經濟的, 政治的, 社會生活을 通해 寄與할 수 있는 潛在力을 社會가 認識하도록 하여 障碍 및 그 解決策의 問題點에 對해 社會教育의 直接的, 間接的 方法이 模索되고 活用되도록 해야 한다.

63) 公共情報프로그램은 障碍者에 對한 固定觀念의 否定的 態度를 排除하고, 資金마련 캠페인이나 障碍者를 爲한 慈善活動을 展開해야 한다. 障碍者들도 教師나 訓練者로서 大衆教育에 熱中해야 한다.

64) 社會에서의 障碍者의 權利保障과 必要한 서비스를 爲한 特定한 教育이나 情報提供의 努力이 障碍者와 그 家族들을 爲해 指向되고 發展되어야 한다. 特別한 施設은 聽覺障碍, 言語障碍, 視覺障碍, 精神遲滯, 學習지진을 包含하여 傳達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情報에 接近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 必要한 것이다.

各 나라들은 이 憲章의 目標와 原則들을 實行하기 爲한 措置를 取해야 한다.

65) 모든 나라는 障碍豫防과 再活을 爲한 包括的인 計劃을 發展시켜야 한다.

66) 모든 나라는 國家 計劃의 發展과 그 達成을 爲한 密接하고도 끊임없는 協力을 가져올 것이다. 그러므로, 障碍者 福祉 擔當部署의 長官이나 政府의 高位 責任者들은 이러한 計劃의 發展과 協力을 爲해 責任을 져야 하는데, 이를 爲해서는 政府의 關聯部署나 慈善團體, 專門團體, 障碍者 團體의 代表者로 構成된 諮問委員會의 支援을 받아야 하며, 障碍豫防과 活潑한 再活事業, 社會에서의 障碍者의 同等한 參與를 爲한 與件造成을 促進시켜야 한다.

67) 障碍豫防과 再活은 어떠한 社會的, 經濟的, 政策이나 發展計劃에 앞서 꼭 必要하며 優先的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活動들은 發達支援을 爲한 合理的인 目標로서 認識되어야 한다.

68) 모든 나라들은 障碍者들이 自身의 能力을 可能한한 最大限으로 發展시키고 生活을 向上시키며, 社會에의 貢獻과 參與를 增進시키는데 必要한 再活對策을 現在의 教育, 醫療, 社會, 職業制度안에서 發展시키려면 充分한 財源을 分配하여야 한다.

69) 모든 法律은 障碍者의 權利를 無視하는 어떠한 規程도 없애기 爲해 檢討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法律 規程을 包含시켜야 한다.

- 障碍豫防과 再活을 爲해 政府와 慈善團體 사이의 協力을 保障한다.
- 建築上의 障碍物을 禁止한다.

- 모든 社會서비스를 障碍者들이 손쉽게 利用하도록 한다.
- 障碍者와 그 家族들이 그들에게 提供되는 서비스와 生活에 影響을 미치는 決定을 할때에 充分한 參與가 可能하도록 保障해 준다.

70) 各 나라들은 障碍豫防과 再活 對策의 計劃, 採擇, 評價에 必要한 硏究를 爲한 資金의 支援을 해야 하는데 特別히 높은 效用性에 對한 硏究에 重點을 두도록 한다.

5. 國際的인 協力의 强化

71) 障碍豫防과 再活에 對한 情報 및 技術, 硏究革新의 國際的 交換이 增加되어야 하며, 이러한 協力을 위한 必要條件은 言語의 障壁을 克服할 수 있는 協力體制를 發達시키는 것이다.

72) 國際聯合에 所屬되어 있는 國際團體의 活動은 特別히 地域單位別 事業에 重點을 두고 增進되어야 하며, 國際團體와 政府사이의 活動에 協力을 가지고 해야 한다.

資料: 月刊 再活 82年 6月號 再活協會 PP.10～18

第五章　結　　論

以上으로 心身障碍者福祉施設과 職業再活施設 및 雇傭促進制度 等의 現況을 文獻 및 實際調査에 의하여 대체적인 內容을 살펴 보았다.

그러므로 本章에서는 心身障碍者福祉政策에 關한 綜合的인 諸問題를 要約列擧하고 列擧된 問題點에 대한 改善方案을 提示하였다. 그리고 提示된 改善方案에 대하여 綜合的인 建議 및 要望事項을 수록하고 附錄에서는 心身障碍者福祉法 및 同法施行令과 施行規則, 心身障碍者의 障碍等級表와 心身障碍者 福祉施設基準 等을 參考資料로 添附하여 1984年度의 硏究課題을 모두 끝마치고저 한다.

第1節　豫相되는 問題點

§1. 收容保護施設의 不足問題

우리나라 心身障碍者의 總數는 1,086,823名으로서 全國民의 2.9%에 해당하고 있으나 精神 및 肢體障碍者만을 保護할수 있는 有認可社會福祉施設이 50個施設로서 9,885名 정도의 收容能力 만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비율은 總障碍者數에 比하면 0.9%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약 99%의 障碍者들이 家庭이나 無認可施設에 방치되고 있는 문제

§2. 職業再活施設의 不足問題

障碍類型別 職業再活施設로서 現代化된 職業教育과 物理治療等을 兼한 施設은 仁川의 產業再活院과 서울의 三育再活院 등에 불과하다.

過去 障碍類型別 職業教育을 하든 國立釜山再活院과 水原國立再活院等이 廢止되었으므로 現在 國家有功者 또는 援護對象者 等을 爲한 職業再活施設이 없을 뿐만 아니라 大部分의 社會福祉法人들이 設置運營하고 있는 職業再活院들은 財政自立도가 미약함으로 그 名稱만 再活院으로 되어 있을 뿐 再活施設이 不足하여 오직 國費 또는 地方費의 지원에만 依存하고 있는 問題.

§ 3. 雇傭促進對策에 關한 問題

우리나라의 心身障碍者들은 大部分 心身의 障碍로 인한 열등의식 때문에 健康人과 競爭할 수 있는 自身感을 形成하지 못하고 社會的으로 參與意識이 不足한 實情이다. 또한 大部分의 企業主들은 健康한 人力도 就業을 못하고 있는데 障碍者가 어떻게 就業하겠다는 건가 하는 인식 때문에 障碍者들의 雇傭促進이 더욱 어려워지는 問題.

§ 4. 無認可施設과 患者에 關한 問題

精神障碍者들은 心身障碍者福祉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일단 한 家庭에 精神疾患者가 發生하면 家產이 탕진될때까지 精神病院에 入院시켰다가 要保護對象 가정이 된 後라야 社會福祉施設에 入院할 수 있는 資格이 부여되고 있으므로 高所得層은 精神病院, 低所得層은 無認可施設을 찾게 되니 無認可 施設만 늘어나는 問題.

§ 5. 精神患者와 障碍者에 關한 問題

精神患者와 精神障碍者를 嚴格히 區分하지 못하여 精神病院에 入

院된 患者가 數年이 경과하여도 入院室만 찾이하고 있으므로 入院室의 新陳代謝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恒常病室이 不足할 뿐만 아니라 투약이 必要없는 精神障碍者와 계속치료를 요하는 精神患者를 區分하지 못하여 질병분류가 불확실한 問題.

§ 6. 制度改善에 關한 問題

心身障碍者福祉法 第2條 規定에 의하면 精神薄弱등 精神的 缺陷(以下 心身障碍라 한다)으로 인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制約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나 大統領令 또는 保健社會部令에는 心身障碍者中 精神障碍者에 대한 定義가 規定되지 않았으므로 精神障碍者와 患者를 區別 收容할 수 없는 問題.

§ 7. 障碍者福祉行政에 關한 問題

社會福祉事業法 第5條 規定에 의하면 社會福祉에 관한 專門知識과 技術을 가진 者에게 社會福祉士의 資格을 부여하고 이 福祉士로 하여금 社會福祉事業에 從事토록 하였는바 이러한 處事와 社會福祉法人 및 施設등을 指導監督하는 行政部署에 土木建築職 또는 保健醫務職等實務者들의 專門性이 결여되어 福祉行政上 施行 착오가 반복되는 問題.

第2節 要 是正·改善方案

§ 1. 心身障碍者 登錄制度를 實施하여 障碍者들을 保護하고 있는 家庭 또는 團體가 빠짐없이 등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등록된 障碍

者들은 障碍類型別로 分類하여 적성에 맞는 教育訓練計劃을 수립하고 全國에 방치상태에 있는 遊休兒童 福祉施設을 活用하여 障碍類型別 職業教育을 실시하여 雇傭促進事業에 기여한다.

§2. 既存 社會福祉法人의 基本財産中

收益性이 없는 遊休不動産을 收益性이 있는 財産으로 代替許可하여 未備한 再活施設을 補完할 수 있는 여건을 造成할 것이며, 再活장비등은 現金補助制度를 지양하고 自體收益財政으로 施設이 完成된 순서에 따라 必要한 장비는 現物로 補助한다.

§3. 心身障碍者들의 雇傭促進 問題

各種 弘報活動을 通하여 心身障碍者에 대한 先入觀的 偏見意識을 除去할 것이며 障碍者에 대하여는 障碍要因의 診斷과 治療 및 教育을 通하여 生活의 自身感을 形成하고 社會的 參與意識과 障碍者로서 役割의 訓練을 實施하고 心身障碍者와 健康人과의 社會的 相互作用의 機會를 부여하여 共同體 속의 一體感을 造成하여 社會的 統合을 한다.

§4. 날로 늘어나는 無認可施設의 예방책으로 기존시설을 양성화하여 精神障碍者들의 經濟的 能力에 따라 低所得層 精神障碍者들도 合法的으로 社會福祉施設에서 實費로 保護될 수 있는 法的 조치를 취할 것이며 無認可施設을 양성화 하는데 까다로운 節次를 간소화하여 收容能力에 따라 要式行爲만 充足되면 반드시 認可措置한다.

§5. 國際疾病分類(ICD)에 不拘하고 精神障碍者와 精神患者를 嚴格

히 區分하여 精神病院의 長期的으로 入院中인 病床을 많은 精神患者들을 위하여 고루 쓰여질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精神病院에서 最下 3年에서 最高 5年以上 入院中인 者들은 治療를 要하지 않으므로 精神障碍者로 認定하여 社會福祉施設에서 요양보호 조치한다.

§ 6. 心身障碍者 福祉法施行令 또는 施行規則을 改正하여 母法上 精神的 缺陷으로 因한 者에 대한 定義를 확정하여 精神病患者는 醫療法의 적용을 받고 精神障碍者는 心身障碍者福祉法의 적용을 받도록 할 것이며 精神的으로 만성적 障碍者들은 收容保護만 할 것이 아니라 精神再活教育을 實施하여 단순 勞務職에 종사시킨다.

§ 7. 中央 또는 地方官署의 社會福祉行政業務를 맡은 實務者들에게 社會福祉法人 行政實務 또는 社會福祉施設管理 等의 實務教育을 集中的으로 實施하여 最少한 法人行政 實務만은 正統에 의한 劃一性있는 行政을 하여 社會福祉法人 및 施設의 財產上 손실을 방지하고 반복되는 行政上의 施行錯誤를 豫防한다.

第3節 建議 및 要望事項

§ 1. 建議事項

心身障碍者雇傭促進法을 制定하여 勤勞者 100人 以上을 雇傭하고 있는 事業場에 대하여 全體 勤勞者의 100分의 3에서 100分의8의 範圍內에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雇傭率을 義務化하고 特殊職種에 대하여는 적용을 除外하도록 할 것이며 職能과 職種이 障碍者에게 적합한

職場은 全部 또는 一部의 被傭者를 障碍者로 충당하도록 留保할 수 있도록 할 것을 建議함.

§ 2. 要望事項

지진아등 精神薄弱者들을 獨立된 特殊學校에서만 教育하는 것을 지양하고 教育期間이 長期化되어 반복 教育을 하는 한이 있어도 一般學校에서 教育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며 世界疾病分類(ICD)를 不拘하고 精神障碍者와 精神病患者를 區分하여 精神障碍者는 社會福祉 요양시설에서 精神再活訓練을 받고 精神病患者는 病院에서 治療받을 수 있도록 함. 다시말하면 精神障碍者는 心身障碍者 福祉法 및 社會福祉事業法의 적용을 받고 精神病患者는 醫療法의 적용을 받도록 할것을 要望함.

參 考 文 獻

1. 保社部, 障碍者 職業再活對策, 1984.

2. 三育再活院,再活研究 第9號, 1983.

3. U.S.News and World Report 誌 醫協, 第1784號, 1984.

4. 心身障碍者의 福祉세미나資料, 社協, 1980.

5. 黃源泳, 心身障碍者福祉를 爲한 社會制度, 1980.

6. 金泳謨, 福祉國家의 理念的 背景, 社協, 1980.

7. 崔日燮, 80年代의 國家發展課題, 現代社會, 1983.

8. KHDI. 心身障碍者 實態調査, 1980.

9. 社會保障審議委員會 研究論文, 1979.

10. 安秉輯외共著 障碍者의 職業再活, 1984.

11. 禹在賢, 心身障碍者福祉法案, 再活協, 1984.

12. 金國道, 老人福祉政策論, 1980.

13. 社會保障審議委員會. 法人基本財産에 關한 研究, 1981.

14. 韓國成人福祉施設協會세미나資料, 1983.

15. 韓國法人問題研究所, 研究報告書, 1982.

16. 岡村重夫, 社會福祉學, 1981.

17. 金國道, 社會福祉施設調査研究, 1981.

18. 社會福祉協議會, 社會福祉誌 가을號, 1983.

19. 金國道, 社會福祉施設租稅感免에 關한 研究, 1984.

20. 障碍者再活協會, 月刊再活, 1982. 6月號

附　　錄

心身障碍者福祉法
（1981年 6月 5日 法律第3452號）

1. 法　　律

2. 施　行　令

3. 施 行 規 則

4. 別　　表 (1)

5. 別　　表 (2)

6. 別　　表

心 身 障 碍 者 福 祉 法

(制定 1981.6.5 法律第 3452號)

第 1 章 總 則

第 1 條(目的) 이 法은 心身障碍의 發生의 豫防과 心身障碍者의 再活 및 保護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함으로써 心身障碍者의 福祉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心身障碍者"라 함은 지체부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精神薄弱등 精神的 缺陷(以下"心身障碍"라 한다)으로 因하여 長期間에 걸쳐 日常生活 또는 社會生活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者로서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第 3 條(尊嚴과 價値) 心身障碍者는 個人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이에 상당하는 처우를 保障받는다.

第 4 條(自立에의 努力) ①心身障碍者는 그가 가지고 있는 能力을 최대한으로 活用하여 社會·經濟活動에 參與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②心身障碍者의 家族은 心身障碍者의 自立促進을 위하여 努力하여야 한다.

第 5 條(國家등의 責任) ①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心身障碍의 發生을 豫防하고 心身障碍者의 福祉를 增進할 責任을 진다.

②모든 國民은 心身障碍의 發生의 豫防과 心身障碍者의 福祉增進에

協力하여야 한다.

第 6 條(心身障碍者福祉 指導員) ①心身障碍者의 福祉를 위한 相談 및 指導業務를 擔當하게 하기 위하여 區(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限한다)와 市·郡에 心身障碍者福祉指導員을 둔다.

②心身障碍者福祉指導員의 活用·職務 및 報酬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2 章 福 祉 措 置

第 7 條(指導開發) 國家와 地方自治團體는 疾病이나 事故 其他 原因에 의한 心身障碍의 發生의 豫防 및 心身障碍者의 早期發見에 대한 國民의 關心을 높이고 心身障碍者에 대한 수호사상을 보급하기 위하여 國民을 指導開發하여야 한다.

第 8 條(調査) 保健社會部長官은 心身障碍가 있는자의 狀況에 關하여 調査를 실시하거나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其他 關係行政機關으로 부터 調査報告를 받아 그 結果에 따라 心身障碍者에 대하여 최대한 福祉措置를 하여야 한다.

第 9 條(再活相談 및 入所등의 措置) ①保健社會部長官·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道知事 또는 市長·郡守(이하"福祉實施機關"이라 한다)는 心身障碍者에 대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實施하고, 必要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의 措置를 하여야 한다.

1. 國·公立病院, 保健所, 保健支所 기타 醫療機關(이하"醫療機關"이라 한다)에 依賴하여 醫療 또는 保健指導를 받게 하는 것.

2.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設置한 心身障碍者福祉施設에 入所·通院하게 하거나 그 施設을 利用하게 하는 것.

3. 社會福祉法人 其他 非營利法人이 設置한 心身障碍者福祉施設에 위탁하여 그 施設에 入所·通院하게 하거나 그 施設을 利用하게 하는 것.

②福祉實施機關은 第1項의 再活相談을 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心身障碍者福祉指導員으로 하여금 당해 心身障碍者의 家庭, 그가 入所·通院, 利用하고 있는 施設이나 醫療機關을 방문하여 相談에 應하게 하거나 必要한 指導를 하게할 수 있다.

③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하여 醫療 또는 保健指導를 依賴받은 醫療機關은 그 醫療 또는 保健指導에 積極 協力하여야 한다.

第10條(補裝具의 交付등) ①福祉實施機關은 生活이 困難한 心身障碍者로부터 申請이 있을 때에는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기타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하는 補裝具를 교부 또는 수리하거나 補裝具의 購入 또는 修理에 必要한 費用을 지급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費用의 支給은 補裝具의 교부 또는 수리가 困難하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限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할 수 있는 者의 範圍 및 費用의 支給基準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11條(雇傭의 促進)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心身障碍者의 雇傭을 促進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實施하여야 한다.

1. 心身障碍者에게 適合한 職種의 開發 및 普及

2. 心身障碍者에 대한 適性檢査 및 職業指導

3. 作業環境 또는 技能에 適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 訓練

②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스스로 經營하는 事業에 心身障碍者의 能力과 適性에 따라 이들을 雇傭하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③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心身障碍者에게 適合한 職種의 事業을 經營하는 者에 대하여 心身障碍者의 能力과 適性에 따라 이들을 雇傭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第12條(施設의 優先利用) 國家·地方自治團體 其他 公共團體는 心身障碍者의 生活支援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施設의 일부를 心身障碍者로 하여금 우선하여 利用하게 할 수 있다.

第13條(편이시설) 道路·公園, 公共建物·交通施設·通信施設 其他 공중이 이용하는 施設을 設置하는 者는 心身障碍者가 이를 편리하게 利用할수 있는 施設이나 設備를 갖추도록 努力하여야 한다.

第14條(扶養手當)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心身障碍의 程度가 重하여 自立하기가 甚히 困難한 心身障碍者를 扶養 또는 保護하는 者에 대하여 扶養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扶養手當의 支給의 시기·기준 및 方法等에 관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3章 心身障碍者福祉施設

第15條(心身障碍者福祉施設)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은 다음 各號의 施設로 한다.

1. 肢體不自由者再活施設 : 肢體不自由者를 入所 또는 通院하게 하여 그 再活에 必要한 相談, 治療 또는 訓練을 行하는 施設.

2. 視覺障碍者再活協會 : 視覺障碍者를 入所 또는 通院하게 하여 그再活에 必要한 知識, 機能을 習得하게 하거나 상담 또는 訓練을 行하는 施設.

3. 聽覺·言語技能障碍者再活施設 : 聽覺障碍者 또는 音聲·言語機能障碍者를 入所 또는 通院하게 하여 그 再活에 必要한 相談·治療 또는 訓練을 行하는 施設

4. 精神薄弱者再活施設 : 精神薄弱등의 精神的 缺陷이 있는 者를 入所 또는 通院하게 하여 이를 保護함과 同時에 그 再活에 必要한 相談·指導 또는 訓練을 行하는 施設.

5. 心身障碍者療養施設 : 心身障碍者로서 항상 돌보아 주어야 할 者를 入所하게 하여 相談·治療 또는 療養을 行하는 施設

6. 心身障碍者勤勞施設 : 心身障碍者로서 就業이 困難하거나 生活이 困難한 者를 入所 또는 通院하게 하여 必要한 訓練을 行하고 職業을 주어 자활시키는 施設

7. 點字圖書館 : 무료로 또는 低廉한 料金으로 視覺障碍者가 점자간행물을 열람하는 施設

8. 점자출판시설 : 無料로 또는 低廉한 料金으로 視覺障碍者에게 점자간행물을 시공하기 위하여 이를 출판하는 시설

第16條(心身障碍者福祉施設의 設置) ①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②社會福祉法人 其他 非營利法人은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을 設置할 수 있다.

③心身障碍者福祉施設의 施設基準과 設置許可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17條(廢止 또는 休止) 社會福祉法人 其他 非營利法人이 第16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한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을 廢止 또는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8條(受託義務)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는 第9條 第1項第3號의 規定에 의하여 心身障碍者의 入所·通院 또는 利用을 委託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第19條(監督) ①保健社會部長官 또는 道知事는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을 設置·運營하는 者로 하여금 당해 施設에 關하여 必要한 報告를 하게 하거나,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施設의 運營狀況을 調査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關係公務員이 그 職務를 行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表示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第20條(許可取消등) 도지사는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事業의 정지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第16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1. 第16條第3項의 施設基準에 未達하게 된때.
2.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때.

3. 正當한 이유없이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報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調査·檢査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第2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때.

第4章 費 用

第21條(費用의 負擔) 第9條第1項·第10條第1項 및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福祉措置와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의 設置에 所要되는 費用은 豫算의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福祉實施機關 또는 社會福祉事業基金法에 의한 社會福祉事業基金이 負擔한다.

第22條(費用의 受納) ①第9條第1項 第1號의 規定에 의한 措置에 必要한 費用을 負擔한 福祉實施機關은 당해 心身障碍者 또는 그 扶養義務者로부터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그 負擔한 費用의 전부 또는 일부를 受納할 수 있다.

②第16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을 設置한 法人은 그 施設에 入所·通院하거나 그 施設을 利用하는 者로부터 그에 所要되는 費用을 受納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만, 保健社會部長官이 定한 費用受納限度額의 範圍안에서 受納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第23條(費用의 補助)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의 設置 또는 運營에 必要한 費用을 補助할 수 있다.

第 5 章　補　　則

第 24 條（補裝具製造·修理業의 許可） ①補裝具의 製造 또는 修理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도지사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第 1 項의 許可를 받아야할 補裝具의 種類, 許可基準 其他許可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保健社會部令으로 定한다.

第 25 條（補裝具製造·修理業의 許可取消등） 도지사는 第 24 條의 規定에 의하여 補裝具의 製造·修理業의 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基準을 위반한 때에는 그 事業의 정지 또는 廢止를 命하거나 그 許可를 取消할 수 있다.

第 26 條（압류금지） 이 法에 의하여 心身障碍者에게 支給 되는 金品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第 27 條（審査請求） ①心身障碍者, 그 法定代理人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保護者는 이 法에 의한 福祉措置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福祉實施機關에 審査를 請求할수 있다.

②福祉實施機關은 第 1 項의 請求를 받은 때에는 1 월이내에 이를 審査·決定하여 請求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③第 2 項의 審査·決定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通報를 받은 날로부터 1 月以內에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第 28 條（罰則）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者는 1 年以下의 징역 또는 100 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 16 條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心身障碍者福祉施設을 設置·運營한 者.

2. 第2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 보장구의 製造·修理를 業으로 한 者.

第2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2. 第18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第30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個人의 代表人·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關하여 第28條 또는 第29條의 위반행위를 한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各 本條의 罰金刑을 要한다.

第31條(權限의 委任) 도지사는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區廳長(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 또는 시장·군수에게 委任할 수 있다.

第32條(施行令) 이 法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附 則

① (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 (心身障碍者福祉施設에 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社會福祉事業法에 의하여 設置된 社會福祉施設로서 心身障碍者를 入所하게 하여 이들을 保護하고 있는 施設은 이 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설치된 心身障碍者福祉施設로 본다. 다만, 이법 施行後 1年 以內에

이法에 의한 施設을 갖추어야 한다.

③ (補裝具 製造·修理業에 대한 境過措置) 이 法 施行當時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야 하는 補裝具의 製造·修理를 業으로 하고 있는 者는 이法 施行後 1年以內에 이法에 의한 許可를 받아야 한다.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

제정 1982.2.17 대통령령제 10730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심신장애자 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신장애자의 기준) ①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체부자유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한팔, 한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나. 한손의 무지를 지골간관절이상 상실한 자 또는 제2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 이상을 각각 제1지골간 관절이상 상실한 자

다. 한다리를 리스후랑관절이상 상실한 자

라.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 자

마. 한손의 무지의 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거나 제2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세손가락 이상에 영속적인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 자

바. 지체에 위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시각장애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두눈의 시력(만국식 시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에 대하여 측정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각각 0.1이하인 자.

나.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 자.

다. 두눈의 시야가 각각 10도 이내인 자.

라. 두눈의 시야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자

3. 청각장애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 이상인 자

나.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자.

다. 두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자

4. 음성, 언어기능장애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 자

나.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영속적인 현저한 장애가 있는 자

5. 정신박약자는 정신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한 자로 한다.

②심신장애자는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 3 조(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임용자격과 겸직)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에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자격증을 가진 자

2.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공회당등에 두는 특수학급을 포함한다)의 교사로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행정에 5년이상 근무한경력이 있는 자

②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상담원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직무)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은 다음의 직무를 담당한다.

1. 심신장애자와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지도

2. 심신장애자에 대한 검진, 진료, 보건지도등의 관계전문 기관에 대한 의뢰

3. 심신장애자복지시설에 대한 심신장애자의 입소, 통원 또는 그 이용의 알선

4. 심신장애자에 대한 보장구의 교부와 사용·수리등에 관한 지도

5. 심신장애자의 직업적성평가·훈련 또는 취업알선과 이에 관한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

6. 심신장애자를 위한 지역사회자원의 활용 알선

7. 심신장애자복지시설 또는 심신장애자에 관한 조사 및 지도

8. 기타 심신장애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 5 조(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의 보수)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공무원인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과 보수없이 봉사할 것을 자원한 심신장애자복지지도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공무원중 일반직 8급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기말수당, 정근수당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를 지급한다.

제 6 조(재활의료) ①법 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받게하는 의료(이하 "재활의료"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진 찰

2. 약제 또는 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의료시설에의 수용

5. 간 호

6. 이 송

②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의료의 기간은 6월이내로 한다.

제 7 조(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 보건사회부장관은 재활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료기관의 동의를 얻어 심신장애자의 재활의료를 담당할 기관(이하 "재활의료취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국·공립병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사

회복지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은 이 영에 의한 재활의료취급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 8 조(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취소)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활의료취급기관이 이 영에 위반하거나, 심신장애자의 재활의료를 담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기관에 대하여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재활의료취급기관은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면하고자 할때에는 60 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정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미리 통보하고 이를 면할 수 있다.

제 9 조(재활의료 대상자) ①재활의료의 대상이 되는 심신장애자는 복지실시기관이 법제 9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검진 및 재활상담을 실시하고, 당해 장애상태의 개선을 위하여 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법 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의 착용을 위하여 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한다. 다만, 그 의료가 의료보호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군사원호보상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한 급여에 해당하는 것인 경우에는 재활의료의 대상자로 하지 아니한다.

②재활의료를 받고자 하는 심신장애자, 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은 복지실시기관에 대하여 재활의료의 대상자로 인정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재활의료의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산상 부득

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를 제안할 수 있다.

제 10 조(재활의료와 의료비용 산정의 기준) 재활의료취급기관의 재활의료와 그 의료비용은 의료보험법 제 29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기준 및 동법 제 35 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산정기준에 의하되, 동 기준을 적용할수 없거나, 동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재활의료와 그 의료비용산정의 기준에 의한다.

제 11 조(진료비의 청구등) ①재활의료취급기관은 재활의료를 마친 때에는 재활의료비청구서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의료를 의뢰한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복지실시기관은 제 1 항의 청구서를 받을 때에는 1 월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재활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복지실시기관은 제 2 항의 심사,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심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 12 조(보장구의 교부등을 신청할수 있는 자의 범위) 법 제 10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등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의료보호법 제 4 조제 1 항제 1 호 내지 제 5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의료보호법시행령 제 2 조제 2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군사원호보상법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

제 13 조(보장구구입, 수리비용의 지급기준) 법 제 10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의 구입, 수리비용의 지급기준은 보장구의 제작비, 판매가

격 또는 수리비 등의 싯가를 고려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 14 조(부양수당지급대상자) ①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지체에 마비등으로 인한 장애가 심할뿐만 아니라 정도가 심한 정신지능장애도 수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상의 단순한 행동을 하기 곤란한 자를 부양 또는 보호하고 있는 자로 한다.

②복지시설기관은 제 1 항의 부양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심신장애자에 대한 재활의료취급기관의 검진소견서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실태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 15 조(부양수당의 지급시기) 부양수당은 부양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달의 다음 달로부터 부양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매월 이를 지급한다.

제 16 조(부양수당의 지급기준등) ①부양수당의 지급기준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보호시설에 수용된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하여 지급되는 생계보호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되,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다.

제 17 조(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의 신고)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그가 설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를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3월전에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폐지 또는 휴지후의 수용자 또는 이용대상 심신장애자에 대한 조치계획서

2. 폐지 또는 휴지후의 시설,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

제 18 조 (보고) 도지사는 법 제 1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허가를 하거나 법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폐지 또는 휴지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9 조 (비용의 부담) ①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 9 조 제 1 항제 1 호, 제 3 호, 법 제 10 조제 1 항 및 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사회복지사업기금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그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 38 조제 1 항제 4 호의 규정에 의한다.

②법 제 9 조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와 법 제 16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복지조치 또는 시설설치를 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 20 조 (비용의 수납) 법 제 22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이 당해 심신장애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 부터 수납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당해 심신장애자가 의료보호법 시행령 제 3 조제 1 항제 1 호, 제 2 호 또는는 제 4 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총액의 100 분의 50 .

2. 복지실시기관이 제1호에 해당하는 지와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총액의 100분의 70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 비용전액.

제21조(비용의 보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조한다.

1.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매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보조하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의 부담 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2조(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보호자)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실시기관에 대하여 복지조치에 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보호자는 다음의 자로 한다.

1. 당해 심신장애자를 보호하고 있는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장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부양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외에 심신장애자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규칙

제정 1982.5.22보건사회부령 제 704 호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심신장애자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과 심신장애자복지법시행령(이학"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 영 제 2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은 별표 1 과 같다.

제 3 조(재활의료취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 7 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의료취급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지정신청서를 당해 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개설자의 성명 및 주소
3. 표방진료과목명
4. 담당하고자 하는 재활의료의 종류
5. 재활의료를 주로 담당할 의사의 성명 및 경력
6. 재활의료에 필요한 설비의 개요
7. 수용시설 유무 및 그 정원(의원인 경우에 한한다)

제 4 조(재활의료취급기관의 표지) 재활의료취급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

관은 "재활의료취급기관"이란 문자를 표기한 가로 40 cm, 세로 20 cm의 표지판을 그 시설의 입구에 붙여야 한다.

제 5 조 (재활의료 대상자 인정신청) 영 제 9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 그 가족 또는 법정대리인이 복지실시기관에 대하여 재활의료대상자로 인정하여 줄것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심신장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장애명등을 기재한 재활의료 대상자 인정신청서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6 조 (재활의료 대상자의 검진) ①복지실시기관은 제 5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재활의료취급기관에 당해 심신장애자의 검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재활의료취급기관은 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행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검진소견서를 작성하여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상병명
2. 현재의 증상
3. 재활의료가 필요한 경우 그 의료의 방법
4. 예상진료기간
5. 진료비 계산액
6. 치료효과에 대한 소견
7. 보장구가 필요한 경우 그 종류
8. 보장구의 처방 및 제작상의 소견

제 7 조 (재활의료의뢰) 복지실시기관은 제 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검

진소견서를 검토한 결과 재활의료 대상자로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활의료의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재활의료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5. 재활의료의 종류

6. 진료기간

7. 유효기간

8. 소요비용추산액 및 진료비중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율

제 8 조(재활의료의 절차)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의료 대상자로 인정받은 자가 재활의료를 받고자 할때에는 재활의료의뢰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재활의료취급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제 9 조(재활의료비의 청구) 영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의료취급기관이 진료비를 청구하고자 할때에는 재활의료비 청구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진료비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활의료취급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진료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3. 원상병명 및 진료부위

4. 진료개시일 및 진료일수

5. 진료비용의 내용

6. 본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및 비용청구액

제 10 조(보장구의 교부, 수리신청) 법 제 10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 수리를 신청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장 애 명
5. 교부 또는 수리를 요하는 보장구의 종류
6. 수리를 요하는 부위
7. 교부 또는 수리상 특별히 희망하는 사항

제 11 조(보장구의 교부, 수리대상자의 결정) ①제 10 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복지실시기관은 재활의료취급기관에 당해 심신장애자의 검진을 의뢰하고, 그 검진결과에 따라 보장구의 교부,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진을 받은 자와 보장구의 수리가 그 보장구의 주요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경미한 것인 경우에는 따로 검진을 받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②제 1 항의 검진을 의뢰받은 재활의료취급기관은 제 6 조제 2 항에 준하는 검진소견서를 작성하여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12 조(보장구의 교부, 수리의뢰)복지실시기관은 제 11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수리의 복지조치를 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직

접 보장구를 구입하여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심신장애자의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장구 교부, 수리의뢰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보장구의 종류 및 처방

5. 보장구의 제조 또는 수리에 특별히 주의를 요하는 사항

제 13 조 (보장구 교부, 수리절차) 보장구의 교부,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교부, 수리의뢰서와 주민등록증 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장구 제조, 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 14 조 (보장구 교부, 수리비용의 신청)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의 교부, 수리를 한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보장구 교부, 수리비용 신청서에 그가 교부, 수리한 보장구가 처방대로 제조, 수리되었는지에 관한 재활의료취급기관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장구의 종류 및 수리부위

2. 교부, 수리를 받은 자의 성명

3. 소요비용의 내역

제 15 조 (부양수당 지급신청) 법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수당의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복

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 명

2. 주민등록번호

3. 주 소

4. 심신장애자와의 관계

5. 심신장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6. 장애명 및 장애원인

7. 부양시기

제 16 조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허가) ①법 제 16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복지시설(이하 이 항에서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은 시설의 명칭, 소재지 및 종류,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 사업개시 예정일등을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설치를 결의한 법인의 회의록

2.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재산목록

3. 시설의 운영에 관한 모든 규정

4. 시설의 위치도, 평면도(설비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할것) 및 설비구조 내역서

5. 법인의 정관

6. 시설의 장의 이력서

②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이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및 서류외에 그 법인의 등기부등본과 제 1 항제 2 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이 그 법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 1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 1 항제 3 호, 제 5 호 및 제 6 호의 서류는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심신장애자 복지시설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 17 조(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설치기준) 법 제 16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허가 기준은 별표 2 와 같다.

제 18 조(심신장애자의 시설입소 등) 복지실시기관은 법 제 9 조 제 1 항 제 3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를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에 입소, 통원하게 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입소, 통원의뢰서에 의하여 그 시설의 장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입소, 통원기간
3. 위탁비용 지원내역

제 19 조(비용의 수납) 법 제 22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 복지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그 시설에 입소, 통원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비용수납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비용을 수납하고자 하는 심신장애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비용수납예정금액 및 그 산출근거

3. 비용을 납부할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당해 심신장애자와의 관계

제 20 조 (보장구 제조, 수리업의 허가) ①법 제 24 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장구 제조, 수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와 허가를 받고자 하는 보장구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장비내역서

2. 제조, 수리를 담당할 직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②보장구 제조, 수리업의 허가기준은 별표 3 과 같다.

③법 제 24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장구 제조, 수리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수리하여야 할 보장구는 의수족 및 보조기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심신장애자의 장애등급표(제2조)

장애자별 / 등급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 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팔	다리	몸통		청각	평형기능		
1 급	1. 두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2. 두팔을 손목관절이 상부위에서 상실한자	1. 두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2. 두다리를 대퇴의 ½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자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자	두눈의 시력(만국식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있는자에 대하여는 교정시력을 측정한것을 말한다. 이하같다)을 합한것이 0.01 이하인자				지능지수 34 이하의자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히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자
2 급	1. 두손의 모든 손가락을 상실한자	1. 두다리를 하퇴의 ½ 이상 상실한자	1.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앉은 자세또는 선자세	두눈의 시력을 합한것이 0.02이상 0.04이하인자	두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이상인자(두귀가완전히 들			지능지수 35 이상 49이하의 자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

	2. 한팔을 상완의 ½ 이상부위에서 상실한자 3. 한팔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4. 두팔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등이 있어 두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2. 두다리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등이 있어 두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로 10분이상있기가 곤란한자 2.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자력으로 일어서기가 곤란한자		리지 아니한자			을 훈련시킬수 있고 어느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수 있는자

장애자별 / 등급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 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팔	다리	몸통		청각	평형기능		
3 급	1. 두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를 상실한 자 2. 두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3. 한손의 모든 손가락을 상실한자 4. 한팔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히 상실한자 5. 한팔에 완전강직고도의 부분	1. 두다리를 쇼파관절이상 하퇴의 ½이하 부위까지 상실한자 2. 한다리를 대퇴의 ½ 이상부위에서 상실한자 3. 한다리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몸통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보행이 곤란한자(100미터보행이곤란한자	두눈의 시력을 합한것이 0.05이상 0.08이하인자	두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이상인자(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하여도 듣지못하는자)	평형기능에 극히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두눈을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두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걸을 수 없는 자)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상실한자	지능지수 50이상 70이하의자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직업적 재활이 가능한자

	강직 또는 마비등이 있어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4 급	1. 두손의 무지를 상실한자 2. 두손의 무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3. 한팔의 견관절, 주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관절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자 4. 한손의 무지와 제	1. 한다리를 하퇴의 ½ 이상 부위에서 상실한자 2.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슬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자 3. 한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센티미터 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10 이상		1. 두눈의 시력을 합한것이 0.09 이상 0.12 이하인자 2. 두눈의 시야가 각각 5도이내인자	1. 두귀의 청력손실이 70데시벨 이상인자 (귀에 대고 말을하여야 들을 수 있는자) 2. 두귀에 들리는 보통말소리의 최량의 명료도가 50 퍼센트이하인자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한 정도로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장애자별 / 등급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 언어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팔	다리	몸통		청각	평형기능		
4 급	2지(시지)를 상실한자 5. 한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6. 무지또는 제2지(시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세손가락을 상실한자 7. 무지또는 제2지(시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세손가락의 기	짧은자 4. 한다리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등이 있어 한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자						

	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8. 무지또는 제2지(시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네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어 그손으로 글씨를 못쓰거나 젓가락을 집을수 없는자							
5 급	1. 두손의 무지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 등이 있어 무지	1. 두발의 모든 발가락을 상실한자 2. 두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	몸통의 기능장애로 500미터이상 걸을수 없는자	1. 두눈의 시력을 합한것이0.13이상 0.2이하인자 2. 두눈의 시야가 각		두눈을 뜨고 멈춤없이 10미터이상을 걸을수 없는자		

장애자별 / 등급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 언어 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팔	다리	몸통		청각	평형기능		
5 급	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2. 한팔의 견관절, 주관절 또는 손목관절중 한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등이 있어 한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3. 한손의 무지를 상실한자	을 완전히 상실한자 3. 한다리의 고관절 또는 슬관절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또는 마비가 있어 그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각 10 도이내인자 3. 두눈에 의한 시야의 ½이상을 상실한자				

	4. 한손의 무지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5. 한손의 무지와 제2지(시지)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또는 마비등이 있어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자 6. 무지또는 제2지(시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세손가락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등이						

장애자별 / 등급	지체부자유자			시각장애자	청각장애자		음성, 언어 기능장애자	정신박약자
	팔	다리	몸통		청각	평형기능		
5 급	있어 세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6 급	1. 한손의 무지에 고도강직, 부분강직또는 마비 등이 있어 무지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자 2. 제2지(시지)를 포함하여 한손의 두 손가락을 완전히 상실한자	1. 한다리를 리스후랑관절이상상실한자 2. 한다리의 족관절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3. 한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 cm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길이의 1/15이상 짧은자		한눈의 시력이 0.02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인자로 두눈의 시력을 합한것이 0.2를 초과하는자	1. 두귀의 청력손실이 60데시벨이상인자(40센티미터이상 거리에서발성된 말소리를 듣지못하는자) 2. 한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이상, 다른귀의 청력손실이 40데벨이상인자			

	3. 제 2 지(시지)를 포함하여 한팔의 두손가락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자 4. 무지를포함하여 한손의 두손가락에 완전강직, 고도의 부분강직 또는 마비기능등이있어 현저한 기능장애가 있는자 5. 한손의제 3 지 (중지) 제 4 지(약지) 및제 5 지 (소지)를 상실한자							

주 : ① 같은 등급에 2개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1등급 위의 급으로 한다.
② 서로 다른 등급에 2이상의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3인이상의 의견을 들어 등급을 정한다.
③ "손가락을 상실한 자"라함은 무지는 지골간관절, 기타 손가락은 제 1 지골간 관절이상을 상실한 자를 말한다.
④ "손가락의 기능장애"라함은 중수지골관절 이하의 장애를 말하며, 무지의 경우에는 대항운동장애도 포함된다.
⑤ 팔 또는 다리의 결손이나 단단의 길이는 상완에 있어서는 액와로부터, 대퇴에 있어서는 좌골결절의 높이에서 계측한 것으로 한다.
⑥ 다리의 길이는 전장골극에서부터 하퇴의 경골내과 까지를 계측한 것으로 한다.

〔별 표 2〕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시설기준 기타 설치 허가기준(제 17 조)

1. 공통사항(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을 제외한다)

가. 시설의 입지조건

시설은 심신장애자의 분포상태를 고려하여 심신장애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보건, 위생, 급수, 안전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시설의 입소정원

시설의 입소정원은 30 인이상이어야 한다.

다. 구조 및 설비

1) 시설의 구조와 설비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심신장애자의 종류별,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3세미만의 심신장애자를 수용하는 시설은 이 기준에 의한 구조 및 설비외에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중 영아시설과 같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시설에는 다음의 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용을 하지 아니하는 시설에 있어서는 가), 사) 및 아)의 설비를 갖추지 아니할수 있다.

가) 거 실

① 겨울에도 상당시간의 일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출입구는 비상재해의 대피에 용이 하도록 공동복도 또는 넓은 공간에 직접 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③ 적당한 난방 및 통풍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④ 거실의 면적은 복도, 다락등을 제외하고 피수용자 1인당 5세미만의 경우에는 1.7평방미터 이상, 5세이상의 경우에는 2.5 평방미터 이상으로 하고 1실의 정원을 5세이상의 경우에는 8인 이하로 한다.

⑤ 7세이상의 심신장애자를 수용하는 거실은 남, 녀별로 설치하여야 하며, 남, 녀 수용시설간의 통로는 될수있는 대로 야간에 차단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사 무 실

사무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의 무 실

진찰, 건강상담 및 치료를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라) 재활상담실

거실 가까운 곳에 설치하되 실내에서의 말소리가 새어나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마) 조 리 실

① 채광 및 환기가 잘 되도록 하고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식기소독장, 찌꺼기처리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목 욕 실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야 하며 샤워설비 및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사) 세 탁 장

세탁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아) 건 조 장

담요, 이불 등을 걸수 있는 정도로 옥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 변 소

① 변소의 구조는 분뇨가 완전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세식변소가 아닌 변소의 경우에는 변조는 방수제로 되어 있고 소독수와 살충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남, 녀용으로 구분하여야 하며 변소의 수는 여자용은 10인당 1이상, 남자용은 15인당 대변소1, 소변소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차) 급배수시설

① 급수시설은 상수도에 의한다. 다만, 상수도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우물에 의하되 우물의 주의반경 6미터 범위안에는 변소, 하수저류장등이 없어야 한다.

② 우물의 경우에는 지표로부터 50센티미터 이상의 높이로 우물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오수는 토관등을 통하여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직 원

시설에는 다음의 직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수용을 하지 아

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 및 6)의 직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장 : 1인

2) 총 무 : 1인

3) 의 사 : 1인이상(시간제계약에 의한 의사를 포함한다)

다만, 시설장이 의사인 경우에는 의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

4) 간호원 : 1인이상,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인 심신장애자를 입소, 통원 또는 이용하게 하기 위한 시설(이하"아동시설"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피수용자 50인당 1인이상.

5) 보조원 : 피수용자 20인당 1인이상, 다만, 아동시설의 경우에는 피수용자 7인당 1인이상,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및 3세미만인 심신장애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의 경우에는 피수용자 5인당 1인이상.

6) 영양사 : 1인 다만, 피수용자 50인 이상의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7) 사무원 : 1인이상, 다만, 피수용자 100인이상의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8) 생활지도원 : 1인이상, 다만, 시각장애자 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점차 해득이 가능한 자이어야 하며, 여자를 수용하는 시설에는 적어도 1인의 여자인 생활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마) 직원의 자격기준

직 종 별	자 격 기 준
시 설 장	1. 의 사(한의사, 치과의사를 포함한다)로서 관련장애 분야에 3년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2. 특수학교 교장이었던 자 또는 교육법에 의한 특수학교 교사로서 당해시설 입소대상 심신장애자의 교육에 3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위 각호에 준하는 학식과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총 무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종사자 자격증을 소지한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생활지도원	1.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심리학, 교육학 또는 사회사업학 등 심신장애자 복지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제1호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바) 다른 심신장애자 재활시설을 병설하는 경우에는 주된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의 일부로 하여금 병설하는 시설의 설비 및 직원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용하고 있는 심신장애자의 재활지도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설별 기준

가. 입소기간

무의무탁한 생활보호 대상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시 설 별	입 소 기 간
•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1년 6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
• 시각장애자재활시설	1년 6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
• 청각, 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1년 6월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할수 있다.
• 정신박약자재활시설	심신장애자의 개별적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 심신장애자요양시설	심신장애자의 개별적 상태에 따라 결정한다.
• 심신장애자근로시설	직업의 종류, 입소자의 경력등을 감안하여 당해시설에서 결정하되, 지나치게 장기간 입소하여 재활의욕이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설 비

공통사항에서 정한 기준외에 각 시설별로 아래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기 준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1. 시설에서 하고자 하는 재활사업별로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직업훈련실 및 보장구제작실 등 각각 필요한 설비와 지체부자유자의 치료 및 훈련에 필요한 기계기계류를 갖추어야 한다. 2. 기능회복훈련에 필요한 운동장, 모래밭, 경사지등 옥외기능회복훈련장을 각추어야 한다. 3. 출입구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복도, 목욕실 및 변소에는 손잡이를 달아야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시각장애자재활시설	1. 재활사업별로 그 사업목적달성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옥외운동장을 갖추어야 한다. 3. 계단등 위험한 곳에는 손잡이를 선출하고 승강구, 출입구 및 비상구에는 촉감으로 할수있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2층이상 건물의 피난설비는 활강식으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기 준
청각, 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1. 직업훈련사업을 하는 경우 직업훈련실 및 직업훈련용 기계기구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2. 가능한한 청능훈련실, 언어치료실과 필요한 기계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3. 위험등을 알리기 위한 유색표지등 필요한 설비 및 기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1. 작업치료실을 설치하되 작업치료의 종류, 기계기구의 종류 및 작업인원에 따라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중증의 정신박약자를 수용하는 거실은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3. 필요에 따라 1인용거실 및 2인용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심신장애자요양시설	1. 필요에 따라 1인용 또는 2인용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 2. 특별지도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 중증인 심신장애자의 요양에 필요한 보건위생상의 특별배려를 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자근로시설	1. 작업실은 작업인원, 기계기구의 종류에 따라 알맞는 넓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시 설 기 준
	2.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류, 조명장치, 안전설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자재 및 제품의 운반에 필요한 용구를 갖추어야 한다.. 4. 작업실은 기계설비장소를 제외하고 1인당 1.5평방미터이상이어야 한다. 5. 남, 여용 탈의실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50인이상의 인원을 입소시킬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점자도서관	특수교육진흥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점자출판시설	1. 소장실, 사무실, 숙직실, 제판실, 교정실, 인쇄실, 제본실. 창고등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제판기, 교정대, 인쇄기, 원판호책, 제본가공용기구, 제본작업대, 서가, 점자용지재단기, 지절기등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 직 원

1)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 시각장애자 재활시설, 청각, 언어기능장애자 재활시설, 정신박약자 재활시설, 심신장애자 요양시설, 심신장애자 근로시설에 두어야 할 직원

구분 / 시설종별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훈련교사	상담평가요원	언어치료사	청능훈련사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1인이상. 다만, 의료재활시설의 경우에는 입소자 30인당 1인이상	1인이상. 다만, 다른 전문요원이 이를 겸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훈련과목에 따라 필요한 인원	1인. 다만, 의사 또는 총무가 이를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시각장애자재활시설	———	———	위와 같음	위와같음	———	———
청각, 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	———	위와 같음	위와 같음	1인이상	1인이상
정신박약자재활시설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심신장애자요양시설	위와 같음	위와 같음	———	———	———	———
심신장애자근로시설	———	위와 같음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의 경우와 같음.	———	———

2) 점자도서관, 점자출판시설에 두어야 할 직원 및 자격기준

가) 점자도서관에 두어야 할 직원

① 관 장

② 사 서

③ 점자지도원

④ 대출열람원

⑤ 교정원(점자지도원을 겸할 수 있다)

나) 점자도서관에 두어야 할 직원의 자격기준

① 관장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사서로 3년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위 ㉮,㉯에 게기한 자 외에 관장으로서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② 사서는 도서관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서직원의 자격이 있는자이어야 한다.

③ 점자지도원, 대출열람원 및 교정원은 각각 전문적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이어야 한다.

다) 점자출판시설에 두어야 할 직원

① 소 장

② 편집원

③ 제판원

④ 교정원

⑤ 인쇄원

⑥ 제본원

라) 점자출판시설에 두어야 할 직원의 자격기준

① 소장은 사회복지사업에 5년이상 종사한자 또는 소장으로서 필요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자이어야 한다.

② 편집원, 제판원, 교정원, 인쇄원 및 제본원은 각각 전문적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이어야 한다.

3. 시설운영의 기준

가. 입소자의 요건

1) 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자이어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다른 심신장애자에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2) 정신질환자 또는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지 아니한 자이어야 한다.

나. 건강관리

1) 시설에는 입소자 건강관리의 책임자를 정하고 의사, 간호원 기타 자격있는 자가 항시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전담의사를 두지 아니한 시설은 시간제로 계약한 의사를 두어야 한다.

3) 입소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년1회 이상의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4) 입소자에 대하여는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과 휴식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기타 입소자의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하고 위생관리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 급 식

1) 입소자에 대한 급식은 해당시설이 직접 이를 행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식사는 변화있게 하고 필요한 열량 및 단백질을 함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식단은 영양사가 작성하되 영양사가 없는 시설은 보건소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전염성질환, 화농성창상 등을 가진 자는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여서는 아니된다.

5) 입소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자는 항상 몸을 깨끗이 하여야 한다.

라. 생활지도

1) 입소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 있도록 신문, 잡지, 라디오, 도서(특히 시각장애자 재활시설에 있어서는 점자도서)를 비치하여 사회적 응성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정서함양을 위하여 스포츠, 영화, 연극, 음악회 등을 적당히 실시하여야 하며 적절한 오락용품을 갖추어야 한다.

마. 관리규정

다음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설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방침

2) 직제정원 및 직원의 업무분장

3) 입소자의 취급요령

4) 입소자 생활수칙

5) 훈련의 종류, 방법 및 시간

6) 기타 시설의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바. 장 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관리에 관한 장부

가) 직원관계철

나) 회의록철

다) 사업일지

라) 문 서 철

마) 문서발송부

2) 사업에 관한 장부

가) 수용자관계철(신상조사서, 명부, 건강기록부, 기타, 입소관계철)

나) 재활계획대장

다) 훈련관계서류(훈련일지 및 훈련계획표)

라) 급식관계철

3) 경리에 관한 장부

가) 예산서 및 결산서

나) 금전출납부

다) 수지계산서

라) 물품수불부

마) 비품대장

바) 재산대장

사) 입소자 비용부담 관계철

아) 증빙서류관계철

심신장애자 근로시설은 위의 장부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가) 임금대장

나)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다) 자재수발부

라) 제품수불부

마) 자재매입대장

바) 제품매출대장

사. 사 업

1) 시설은 입소자가 스스로 장애를 극복하고 지장없이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심리적 및 직능적 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2) 재활훈련은 심신장애자의 종류별, 연령별 특성에 따라 계획을 세우고 필요에 따라 18세 미만의 아동인 심신장애자와 18세 이상의 심신장애자에 대한 훈련과정을 달리할 수 있다.

3) 재활훈련은 시설내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훈련효과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 기타 시설외의 훈련기관에 의뢰하여 행할 수 있다.

4) 시설종별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재활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지체부자유자재활시설	1. 의료재활 의료재활은 다음의 치료와 훈련을 혼합하여 행한다. 다만, 그 세부적 방법은 보편화된 치료방법과 훈련방법에 의한다. 가. 의학적 진단 의학적 진단은 재활치료를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현증상과 치료에 의한 기능적 효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재활치료 정형외과적치료, 물리치료, 작업치료등 재활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심리, 사회적 재활 심리, 사회적 재활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소자의 심리적 특성을 정확히 진단하여 각 개인에 알맞는 적절한 조치와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가. 심리, 사회적 진단 ① 심리, 사회적 진단은 각종 검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고 생활력에 대한 관찰 및 연구도 병행한다. ② 재활치료가 인격형성에 미칠영향을 고려하여 지도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심리, 사회적 재활조치 ① 집단지도로서 연극, 레크레이션 각종 클럽활동 및 토론등을 실시한다. ② 개별지도로서 심리요법적 상담지도를 행할때에는 그 심리적 재활효과를 크게하기 위하여 의학적처치, 기능회복훈련등 재활지도와 관련하여 적절한 시기에 유의하여야 한다. 3.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지체부자유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입소자의 적성에 따라 준비훈련, 기본훈련 및 응용훈련을 나누어 실시한다. 나. 손 또는 용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애를 극복하여 정상인 못지 아니하는 활동을 하도록 지도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다. 훈련과목은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무직과목(주산, 부기, 타자등) 특수기술과목 및 농원예등을 선택하되, 각자의 적성과 희망에 응할수 있도록 과목을 배려하여야 한다.
시각장애자재활시설	1. 심리, 사회적 재활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에서의 심리, 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업재활 직업재활에 관하여는 시각장애자에게 적합한 과목의 직업훈련을 하도록 노력하고 다음의 준비훈련 및 기본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생활훈련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각 및 동작에 숙달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나. 보행훈련 시각장애자의 안전보행에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의사소통훈련 점자, 타자등 의사소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시 설
청각, 언어기능장애자재활시설	1. 의학적 진단 및 치료 의학적 진단에 있어서는 임상진단과 동시에 청각의 기능적 상태를 파악하여야 하며, 치료에 있어서는 입소자의 장애의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치료의 방침을 세워야 한다. 2. 청력검사 및 어음명료도검사 청력의 검사는 주로 순음청력검사에 의하여 행하되, 난청의 종류, 청력손실, 연령등에 의하여 타각적 청력검사, 어음명료도 검사 등도 함께 할수 있다. 또한 청력검사는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중에도 정기적으로 행하도록 한다. 3. 청각훈련 가. 보청기 사용훈련 보청기 사용훈련은 보청기의 일일사용시간수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청기의 검사 및 선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① 보청기의 검사는 그 출력, 감도, 주파수의 특성, 음량압축, 내구력등 그 성능에 관하여 상세히 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② 보청기의 선정은 청력측정 및 어음명료도등의 검사등에 의하여 청력장애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보청기의 착용에 의하여 어음명료도 및 어음쾌적도의 검사를 행한 후 장애자에게 가장 적합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나. 청능훈련 청능훈련은 잔존청력을 훈련하여 일반사회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거나 용이하게 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청능훈련기재 등을 이용하여 음성 및 언어에 따라 판별능력을 훈련함과 동시에 도로 집회장 등 소음이 많은 장소에서의 훈련도 실시하여야 한다. 다. 독화훈련 독화훈련은 청각을 대신하여 회화의 이해를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청능훈련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라. 운동기능훈련 평행기능장애자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장애의 원인 및 종류에 따라 운동기능훈련을 행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4. 음성, 언어기능 재활훈련 시각적 방법, 촉각적 방법등과 특수한 기계장치 활용에 의한 언어기능 재활훈련을 실시하되, 청능훈련 및 독화훈련과 관련시켜 실시하여야 한다. 5. 심리적 재활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에 있어서의 심리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6. 직업재활 직업훈련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가. 보청기등의 활용에 의하여 직업적응이 용이하도록 지도한다. 나. 입소자가 재활자립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킴과 아울러 정상인과의 의사소통방법등 사회적 재활에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다. 직업훈련 과목은 그지역의 실정과 입소자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직종을 광범위하게 선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신박약자재활시설	1. 생활지도 입소자가 일상생활에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을 쉽게 하도록 모든

시 설 별	재 활 사 업
	기회를 통하여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2. 작업지도 필요한 경우 입소자가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작업지도를 하되, 1일8시간, 1주당44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심리, 사회적 생활 및 의료재활 정신박약자의 정신적, 신체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심리, 사회적, 의료적 재활사업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자요양시설	1. 보호조치 입소중의 장애자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귀 전 단계로서 다른 시설에 입소시켜 보호지도를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에 이르렀을 때에는 당해 심신장애자의 복지조치를 행한 복지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전원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생활지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훈련, 감각훈련을 기초로 하여 정서의 안정, 신변의 자립을 도모하고 가능한 한 사회생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3. 심리, 사회적 재활 및 의료재활장애정도가 심한 자임을 감안하여 심리, 사회적 또는 의료재활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심신장애자근로시설	1. 심리, 사회적 재활 지체부자유자 재활시설에서의 심리, 사회적 재활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2. 직업재활 가. 작업내용과 특질 및 이에 필요한 신체적 요건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심신장애자의 잔존능력의 활용을 쉽게 함과 아울러 작업설비, 작업공구의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작업과목은 제품의 수급상황 및 업계의 동향을 파악하여 가능한한 많은 종목을 선정함으로써 작업자의 취미와 능력에 따라 직업선택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작업수입으로부터 얻은 잉여금은 시설보강 또는 입소중인 장애자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라. 작업원에 대한 잉여금은 원칙적으로 실적불로하고 사정에 따라 고정급을 병용할수 있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마. 작업공정상 심신장애자가 아닌자를 고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수는 입소중인 전체심신장애자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점자도서관	1. 점자간행물의 대출 및 열람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점자번역 점자도서의 보급 및 상담사업을 하여야 한다. 2. 도서의 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출납에 정확을 기하여야 한다. 3. 도서관자료의 이용을 위한 상담에 응하고 독서의 지도 및 장려, 도서목록 배부등 도서관 이용의 효율성 재고를 위한 활동을 하여야 한다. 4. 청각교육 및 오락, 기타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여 이용자가 참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점자출판시설	1. 점자출판시설은 점자간행물의 출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연간 적어도 30종 이상의 점자도서를 출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무단번역등으로 저작권, 출판권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발행소 및 발행책임자는 당해 점자출판 시설의 장으로 한다.

시 설 별	재 활 사 업
	4. 항상 신간도서를 발간하도록 하고 교양, 오락, 학술등 여러 부문의 도서를 발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발간을 예정하고 있는 도서목록을 점자도서관, 맹학교 및 맹인복지단체등에 배부하여 점자도서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6. 맹학교 점자도서관 및 맹인복지단체등과 긴밀한 연락을 하여 수시관계자 좌담회, 강연회등을 개최하여 출판계획 및 출판도서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출판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 표3〕

보장구제조, 수리업의 허가기준

1. 시 설

가. 상담 및 취형실

나. 작업실

2. 설비 및 기계기구

가. 상담 및 취형실

길이조정용받침대, 신장계, 각도계, 줄자, 평행봉, 큰거울, 석고붕대, 저장상자, 석고취형틀, 취형측정용침대 및 수도시설등을 갖추어야 한다.

나. 작업실

작업내용에 따라 금속공작실, 피혁공작실, 목공작실, 프라스틱가공실(세루로이드가공)등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다른 작업실과 겸용할 수도 있다.

다만, 금속공작용으로서의 작업대, 금속용바이스, 금속연마기, 금속가공받침대, 각종 망치, 탁상천공기, 용접기, 각종 금속작업용공구 일체등과 피혁가공용작업대, 재봉기, 피혁가공용구일체, 목공용(목제의지제작을 포함한다)작업대, 목공용바이스, 전동천공기, 각종목공용구 일체를 갖추고 프라스틱(세루로이드를 포함한다)을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작업대, 바이스컵, 고무망치, 저울, 건조기, 기타 소공구 등을 갖추어야 한다.

3. 직 원

가. 보장구의 제조, 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자는 그 사업장에 보장구 제조기술자를 두어야 한다.

나. 보장구 제조기술자는 그가 제조하는 보장구에 관한 지식이 풍부하고, 그 보장구를 7년이상 제조한 경험이 있는자이어야 한다.

4. 재 료

보장구 사용의 용이성, 견고성,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좋은 질의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5. 보장구제조, 수리의 원칙

가. 보장구의 제조, 수리는 특히 자재의 선정, 처방, 적합판정 및 조정등에 관하여 유의하여야 한다.

나. 심신장애자의 신체적 조건 및 직업등의 상황을 숙지하여 최적의 보장구를 선정하고 각 개인의 특성에 따라 의사의 처방에 의하여 제조, 수리하여야 한다.

다. 보장구의 제작에 있어서는 정확한 측정설계 및 취형에 따라 가봉을 하여야 한다.

라. 보장구의 수리가 그 보장구의 주된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것인 경우에는 보장구 제조기술자만의 판정에 따라 수리를 할 수 있다.

마. 보장구의 착용법과 손질법을 지도하여야 한다.

(별지서식)

제 호 심신장애자복지시설허가증			
명 칭			
종 별			
시 설 장	한글	한자	주민등록 번 호
사 업 목 적			
입 소 정 원			
법 인 명 칭			
허 가 조 건			

심신장애자복지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신장애자복지시설의 설치를 허가함.

19 . . .

시장, 도지사 ㊞